

연구보고서 2009-04

# 법학적성시험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2009. 9.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연구 협력진

가 정 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재 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 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재 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우 용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 석 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연구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의 출제 방식, 입학 전형에서의 활용 형태, 기출문제의 분석 및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법학적성시험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각 보고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학적성시험(LEET) 출제와 시행의 바람직한 방향**에서는 법학적성시험의 개선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학적성시험은 그 결과에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업수행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예언적 타당성(predictive validity)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및 변호사시험법과의 연관성이라는 큰 틀에서 그 제도 운용을 논하여야 한다. 또한 법학적성시험이 평가하고자 하는 ‘법학적성’은 우리나라에서 요구되는 법률가의 자질이라는 관점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 및 장래에 요구되는 법률가의 상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2008년 8월 23일 처음으로 시행된 법학적성시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시자는 총 9,690명이 응시하였으며, 이 중 법학계열 출신은 1/3에 미치지 못한 반면 공학, 상경, 인문, 사회계열 출신이 각각 1,000명 이상 응시하여 이들의 합이 55%에 달하고, 연령대는 26세~28세인 경우가 전체의 28.8%를 차지하였다. 점수분포는 언어이해영역에 비하여 추리논증영역이 더 넓게 퍼져 있고 고득점자 분포가 열게 나타나 실질적 변별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제의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언어이해의 경우 다양한 비판적, 분석적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들을 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미국 LSAT와 같이 언어이해영역의 성격을 추리논증영역과 혼합하여도 좋을 것이고, 난이도는 가급적 쉽게 출제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할 것으

로 보인다. 출제방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국의 LSAC와 같이 문제은행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때 이는 장기적인 목표로 놓고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시험시행빈도도 늘리는 것이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시행경험을 축적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응시회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현재 대학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로 한정하고 있는 응시자격 제한 역시 불필요하다고 보인다. 시험의 시행주체는 현재는 다년간의 시험 시행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LSAC와 같은 독립적 시행주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LSAT로부터의 교훈**에서는 한국의 법학적성시험이 이미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LSAT를 그 모범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LSAT 제도운용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미국의 LSAT는 1945년 Columbia 법학전문대학원 입학담당관 Frank Bowles가 대학수학능력시험(SAT)과 유사한 수학능력시험을 만들어 대학원입학사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이 그 탄생의 계기가 되었다. 현행 LSAT는 일정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 법학 학습능력을 주된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높은 신뢰성이 보장될 것, 1시간 30분 이하의 시험일 것, 법학 학습을 위한 분별력 및 식별성과의 관련성을 갖출 것, 시험 결과를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것, 비용이 적게 들 것 등의 성격을 갖춘 시험을 만들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다.

LSAT의 문제은행식 출제방법과 문제 축적은 LSAT를 과학적이고 예측가능성 높은 시험문제로 만들어주고 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LSAT는 5지선다의 객관식 시험 부분과 논술로 구성되어 있는 바, 객관식 시험 부분은 논리적 추론 2개 부분, 독해 1개 부분, 문헌적 추론 1개 부분, 차후 시험에 참고하기 위한 채점되지 않는 1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논술 샘플은 채점되지 않는다.

LSAT를 주관하는 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위원회(LSAC)인바, LSAC에서는 시험 문제 개발팀, 심리측정 및 연구 담당 개발팀, 연구보조 및 분석팀, 데이터 분석 전문가 등을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로 구성하고 있다. 시험개발 과정은 문항작성, 감도를 위한 외부평가, 일괄식(Batch) 문항 평가, 사전 시험에 맞춰 조립된 문항과 평가, 사전 시험 실시, 시험 실시 전 형식에 맞춰 조립된 문항과 평가, 시험 실시 전 관리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이 종결된 이후 한 번의 LSAT 시험이 실시되는 바, 전 과정은 약 30-4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미국 LSAT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개별 학생들의 LEET 점수와 1학년 이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성적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도록 LEET가 구성·출제되어야 한다는 점, LSAT를 전문적으로 출제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구 및 이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법학적성시험**에서는 미국 LSAT를 모델로 일본의 독자적인 법학적성시험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법학적성시험제도를 검토하였다.

일본은 문부과학성 산하 대학입시센터와 일본변호사연합회 산하 법무연구재단의 두 곳에서 법학적성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법무연구재단의 출제방식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일본의 법과대학원통일적성시험은 논리적 판단력, 분석적 판단력, 장문독해력을 각 측정하는 문제(제1부~제3부) 및 표현력을 측정하는 문제(제4부)로 이루어진다. 이 4가지는 각 40분씩으로서, 제1부~제3부는 객관식 시험이고 각 분야 100점에 합계 300점으로 환산되어 수험생에게 통지되며, 제4부는 채점 및 그 결과의 이용이 각 로스쿨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통일적성시험의 총점 점수분포는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 성별은 득점의 차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나, 한편 연령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득점이 낮게 나타나고, 법학사가 비법학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과대학원통일적성시험(법무연구재단 주관)과 법과대학원적성시험(대학입시센터 주관)의 상관계수는 0.716으로 아주 높은 편으로서, 양자를 서로 대응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적성시험의 예언적 타당성을 검증함에는 적성시험이 입학전형의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고 입학자 선발 전형이 개별 로스쿨마다 다르다는 점, 입학시험의 득점에 관하여는 지원자 전원의 성적이 포함되지만 1년차 성적은 입학자의 데이터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시험의 질은 예언적 타당성만으로는 검증되지 않으며, 적성시험에서 측정되는 능력과의 대응관계 등 내용적 타당성의 관점에서도 질적 개선의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의 법학적성시험이 주는 시사점은, 주체의 통일이 필요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시행 주체의 복수화 또는 관리감독체제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 줄어드는 응시생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점, 일본의 경우 다년간의 출제경험으로 적성시험 문제가 일본의 독자적인 스타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는 점 등이 있다.

한편 본 연구와 더불어 柏木 昇(카시와기 노보루) 일본 추오대(中央大)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본의 적성시험이 실시되기까지의 경위 및 적성시험의 문제점에 관하여 쓴 ‘일본 법과대학원입학자 선발 적성시험에 대해서’ 및 법무연구재단에서 발간한 자료집에서 일부 발췌한 법과대학원통일적성시험의 문제와 해설을 함께 번역, 게재하였다.

**법학적성시험의 기출문제 분석과 개선방안**에서는, 지난 2008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법학적성시험이 법학적성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게 출제되었는지 여부를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의 경우에는 문제의 유형을 적절한 문제유형과 부적절한 문제유형으로 나눈 후, 각 문제를 위 유형에 따라 분류한 뒤 적절/부적절 평가를 내린 이유를 간략히 부기하였다. 논술영역은 1번, 2번, 3번 각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얻은 개선방안으로는, 법학적성시험이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인 것과는 별개로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적성을 측정하는 시험인 만큼, 법과 관련된 텍스트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성문법 텍스트의 해석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을 고려할 때 LSAT가 LEET의 절대적인 모델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법학전공자와 비법학전공자의 법학적성 판단방식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의 법학적성시험의 활용**에서는, 법학적성시험제도가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점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2009학년도 입학 전형 시 적성시험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각 대학교별 입학전형 요소는 LEET, 심층면접, 서류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언어·추리의 평균 반영비율은 26.2%, 논술의 평균 반영비율은 11.9%였고, 논술의 경우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심층면접의 평균 반영비율은 19.3%였고, 서류평가의 평균 반영비율은 9.6%였다. 그 외에 학부성과 영어성적도 반영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평균 반영비율은 33%이다.

검토 결과, 논술은 심층면접과 상호보완적이거나 대체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학부성과 영어성적은 실질 반영도가 매우 낮았다. 한편 각 대학별 중점 반영 분야를 분석한 결과, 언어·추리성적을 상대적으로 중시한 대학교, 논술·심층면접을 상대적으로 중시한 대학교, 서류평가를 상대적으로 중시한 대학교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다만 이는 공표된 기준을 토대로 한 분석이어서 실질 반영도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의 현행 법제 및 교육환경, 각 대학교의 입시정책 등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전망이 가능하다: 언어·추리 성적에의 의존도가 현저하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이다. 논술은 심층면접이나 서류평가와 비교할 때 비중이 적으며 앞으로도 그 반영정도는 낮아질 것이다. 학부성적 및 외국어성적은 법률상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반영정도는 매우 낮은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법학적성시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 동안 각 대학원은 응시생의 법학방법론 터득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독자적으로 강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LEET 시행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방향**에서는, 현행 법학적성시험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합숙 출제 방식에 관하여는, 미국의 Item Pool 방식이 수시 시행 가능성, 균질성, 출제자 비의존성, 비용 면에서 합숙 출제 방식보다 유리하지만,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현재의 틀 내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그 방법으로는, 추리논증 영역의 경우 LSAT 문제를 번역해서 활용하는 방법, 언어이해 영역의 경우 출제범위를 제한하고 출제위원을 감축하는 방법, 논술을 제외하는 방법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협의회가 출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시행에 관하여는, 우선 현행 응시자격은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처럼 시험을 1회 시행하면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두는 것은 응시자의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유효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타당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간 2회 이상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시험 실시 지구는 줄일 필요가 있으며, 시험 감독 역시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산에 관하여는,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자가 향후에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우선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외부의 지원(교과부 지원, 각 로스쿨 추가 분담), 응시자격 완화로 응시생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 응시료 인상, LEET 성적 반영 영역의 확대(공무원, 타대학원)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응시자격을 완화하여 응시생 수를 늘리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현실성이 낮다. 한편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서, 합숙 출제 방식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전환하고 참여인원 및 합숙 기간을 줄이는 방

법, 인건비, 연구비 등의 삭감 방법, 평가원의 예산 수립·진행에 좀 더 긴밀하게 관여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법학적성시험은 새로운 시대상에 맞는 올바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는 만큼 변호사협회와의 공조가 절실하다. 법학적성시험의 안정적 정착 및 로스쿨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변협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평가원 보고서 분석 및 출제방식 개선에 대한 제언**에서는, 법학적성의 개념 정립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 출제방식을 문제은행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출제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 매년 치러지는 시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 간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현행 법학적성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입학전형에서의 활용부분(특히 논술 관련)**에서는, 논술문제의 변별력, 평가의 신뢰성, 법학적성 측정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있어 각 대학원에서의 반영비율이 낮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논술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문제의 내용 측면에서 법적인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지문이 출제될 것, 문제 문항을 두 개 정도로 축소할 것, 문항을 세부화하고 평가지침은 세부문항마다 간략히 작성할 것의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5년 내지 10년 내에 시험 주관 기관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 이전할 것, 이를 위해 우선 예산 절감을 통한 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응시생들의 진입장벽을 낮출 것, 다음으로 문제은행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풀을 구성·축적할 것, 변호사협회 및 각 대학원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형성할 것을 제안한다.

# 목 차

■ 법학적성시험(LEET) 출제와 시행의 바람직한 방향 .....	3
I. 서 론 .....	3
II. 법학적성시험의 의의 .....	5
1. 법학적성과 법학전문대학원 수학능력 .....	5
2. 법학적성과 법률가의 소양 .....	7
III. 법학적성시험의 고찰 .....	9
1. 응시자 현황 .....	9
2. 문제유형 .....	13
3. 출제방식 .....	16
4. 시행빈도 .....	17
5. 점수의 반영 .....	18
6. 시행주체 .....	20
7. 향후 연구과제 .....	21
IV. 결 론 .....	22
■ 미국 LSAT로부터의 교훈 .....	27
I. 서 론 .....	27

II. Pre-LSAT 시대 .....	30
III. LSAT 시대 .....	32
1. LSAT의 의미 .....	32
2. LSAT의 내용과 출제 과정 .....	33
IV. 결론 .....	36
■ 일본의 법학적성시험 .....	41
I. 시험의 개요 .....	41
1. 시험 개요 .....	41
2. 주관기관별 시험 개요 .....	41
II. 일본 적성시험 분석-법무연구재단주최 적성시험을 소재로 하여 ....	43
1. 시험의 구성 .....	43
2. 통일적성시험의 결과 .....	45
3. 두 적성시험의 상관표에 대해서 .....	47
4. 적성시험의 예언적 타당성의 검증에 대해서 .....	50
5. 통일적성시험의 질적 보증을 위해서 .....	51
III. 일본 법과대학원입학자 선발 적성시험에 대해서 .....	52
1. 적성시험이 실시되기까지의 경위 .....	52
2. 일본 법과대학원입학적성시험의 문제 .....	57

<b>IV. 일본의 기출 적성시험의 문제의 예와 해설</b> .....	59
1. 논리적 판단력을 측정하는 문제 .....	59
2. 분석적 판단력을 측정하는 문제 .....	64
3. 표현력을 측정하는 문제 .....	76
4. 장문독해력을 측정하는 문제 .....	85
<b>V. 일본의 법학적성시험이 주는 시사점</b> .....	95
<b>■ 법학적성시험의 기출문제 분석과 개선방안</b> .....	99
I. 머리말 .....	99
II. 법학적성시험에서 측정해야 할 능력 .....	99
III. 2009학년도 시험의 문제분석 .....	101
1. 언어이해 영역 .....	101
2. 추리논증 영역 .....	120
3. 논술 영역 .....	135
IV. 개선방안 .....	136
<b>■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의 법학적성시험의 활용</b> ...	141
I. 서론 .....	141
II. 법학적성시험 .....	142
1. 시험의 구성 .....	142

2. 2009학년 시험 .....	143
3. 성적표 양식 .....	146
<b>III. 2009학년 입학전형</b> .....	147
1. 대학별 기준 .....	148
2. 분석 .....	152
<b>IV. 외국의 사례</b> .....	157
1. 미 국 .....	157
2. 일 본 .....	157
<b>V. 결론-전망 및 제언</b> .....	159
<b>■ LEET 시행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방향</b> .....	165
<b>I. 출제 방법의 개선</b> .....	166
1. 합숙 출제 방식과 Item Pool 방식의 비교 .....	166
2. 기존 방식 하에서의 개선 여지 .....	169
3. 독자적 출제의 모색 .....	173
4. 소 결 .....	175
<b>II. 시행 관련 문제의 개선</b> .....	175
1. 응시자격 .....	176
2. LEET 시행 횟수 및 성적 유효기간 .....	176
3. 시험 실시 지구 .....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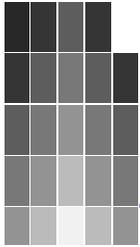
4. 시험 감독 .....	178
<b>III. 예산 확보 및 절감 방안 .....</b>	<b>178</b>
1. 예산 확보 방안 .....	180
2. 예산 절감 방안 .....	181
<b>IV. 변협과의 공조 방안 모색 .....</b>	<b>183</b>
<b>V. 결 론 .....</b>	<b>184</b>
<b>■ 평가원 보고서 분석 및 출제방식 개선에 대한 제언 .....</b>	<b>186</b>
<b>■ 입학전형에서의 활용부분(특히 논술관련) .....</b>	<b>190</b>

# 표 차 례

<표 1> 계열별 응시자 현황 .....	10
<표 2> 연령별 응시자 현황 .....	11
<표 3> 언어이해 점수분포 .....	12
<표 4> 추리논증 점수분포 .....	13
<표 5> 연도별 LSAT 응시자 현황 .....	18
<표 6> 미국 로스쿨 지원자, 입학허가, 등록자 현황 .....	18
<표 1> 사법시험 제2차합격자 법학/ 비법학 전공 구분 .....	27
<표 1> 입시센터 주최 적성시험 응시자 수의 추이, 단위 : 인 .....	42
<표 2> 일본의 응시 현황 (시험 응시원서제출자 수가 아닌, 응시유자격자 수) .....	43
<표 3> 영역특점간의 상관관계와 共分散比 .....	47
<표 4> 2003년 대응표의 일부 .....	49
<표 1> 언어이해 문항 분류표 .....	144
<표 2> 추리논증 문항 분류표 .....	145
<표 3> 법학적성시험 통지표 예시 .....	147
<표 4> 대학교별 입학전형 요소의 구성 (단위 : %) .....	149
<표 5> 각 대학교별 중점 반영 분야 .....	153
<표 6> 일본 주요 대학의 전형 요소 .....	159
<표1> 출제방식의 비교 .....	167
<표 2> 응시원서 접수 총인원 .....	179

## 그 립 차 례

[그림 1]	종합득점도수분포 .....	46
[그림 2]	2003년을 기준으로 본 수험자 수의 추이 .....	48
[그림 3]	적성시험지원자 수의 추이 .....	48
[그림 4]	2008년도 대응그래프 .....	49
[그림 5]	선발효과의 이미지 .....	51
[그림 6]	일본의 로스쿨입학자 선발의 흐름(典型例) .....	52



# 법학적성시험(LEET) 출제와 시행의 바람직한 방향

---

- I. 서론
- II. 법학적성시험의 의의
- III. 법학적성시험의 고찰
- IV. 결론

# 법학적성시험(LEET) 출제와 시행의 바람직한 방향\*

## I. 서 론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2008년 8월 24일에 첫 시험이 시행되었다.<sup>1)</sup>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 핵심적 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반영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법학적성시험은 그러한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여 학업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적성이란 특정한 분야의 활동을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현시점에서 높은 활동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 후에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예측하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sup>2)</sup> 따라서 법학적성시험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법학수학의 잠재력이지 법학지식에 대한 이해력이 아니다. 제대로 고안된

\* 이 글은 2008년 9월 18일 유기천교수 기념사업출판재단이 주최한 ‘한국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제와 전망’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8학년도 학술연구비의 보조를 받았다.

1)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결과를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법학적성시험 연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6, p.17.

법학적성시험이 수험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전문적 법학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소양과 건전한 가치관의 함양이다. 그러한 능력은 단기적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되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그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법학적성시험은 신중하게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그동안 사법시험제도가 야기해 왔던 왜곡된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체제를 극복하려는 선택인 만큼, 전문적 법학교육이라는 주된 목표 이외에도 정상적 학부교육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 법학적성시험은 결과적으로 전문 법학교육과 다양한 학부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sup>3)</sup>

법학적성시험의 기본적인 골격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과 일본의 법학적성시험을 참고로 하여 만들어졌다. 미국에서는 로스쿨입학위원회(Law School Admission Council: LSAC)<sup>4)</sup>가 로스쿨입문시험(Law School Admission Test: LSAT)을 주관하고 있고,<sup>5)</sup> 일본의 법학적성시험은 문부과학성 산하 대학입시센터 및 일본 변호사연합회 산하 법무연구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다.<sup>6)</sup>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가 법학적성시험과 유사한 시험이다.

3) 이러한 측면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것은 ① 다원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유능한 법조인 양성, ②법학교육의 정상화 도모, ③대학입시 경쟁 완화 및 학부 전공의 충실한 교육이다.

4) LSAC는 미국변호사협회(ABA)의 인증을 받은 200여개의 미국 로스쿨과 15개의 캐나다 로스쿨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http://www.lsac.org/LSAC.asp?url=lsac/about-lsac.asp>.

5) LSAT는 1948년 첫 번째 시험이 실시된 이래 그 형식과 내용상 몇 차례의 변화를 거듭하였고, 현행 LSAT의 형식은 1991년에 만들어졌다. 이재협, “미국 로스쿨의 학생선발방법”, 서울대학교 「법학」 제 47권 제2호, 2006, p.291.

6) 2003년 처음으로 시행한 일본의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이수에 필요한 판단력, 사고력, 분석력, 표현력 등의 기본 자질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미국의 LSAT를 모델로 변형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두 시행기관의 시험 중 어느 기관이 주관한 시험을 입학시험에 반영할지의 판단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시행 초기에는 대학입시센터 주관시험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았지만 점차 법무연구재단 주관시험을 반영하거나 양자를 모두 인정하는 대학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오쿠다 마사미치, “일본 법과대학원의 현상과 과제”,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제와 전망: 제4회 월송기념학술세미나 자료집」, 2008. 9. 18, p.20.

이 글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법학적성시험의 내용을 토대로 시행상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시험출제와 시행에 있어서 어떠한 개선책과 발전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히 모델로 삼고 있는,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LSAT를 주된 비교의 대상으로 우리의 법학적성시험을 평가해 보았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요소로서 법학적성시험이 입학생의 선발에 기여하는 수준과 범위 또한 적실성 등에 대한 보다 심도 깊고 세밀한 분석과 평가는 입학전형절차가 모두 완료되는(추가모집 포함) 2009년 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시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개괄적 검토에 논의를 한정하였다.

## II. 법학적성시험의 의의

### 1. 법학적성과 법학전문대학원 수학능력

법학적성시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법학적성시험의 고득점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업수행능력이 높아야 시험의 예언적 타당성(predictive validity)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이 이미 질적인 동질성을 확보하여 상관관계의 범주로서 모습을 갖추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이제부터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을 기존의 법학부 교육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게 변모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현재까지

7) 미국의 LSAT의 예언적 타당도는 +0.4로 학부성과 함께 다른 변수들보다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isa C. Anthony, Vincent F. Harris & Peter J. Pashley, *Law School Admission Council, Predictive Validity of the LSAT: A National Summary of the 1995-1996 Correlation Studies*, Law School Admission Council, 1999.

의 법학 교육이 인문학적 교양과 법에 관한 지식을 전수하는 데 그쳤다면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계발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법학 지식에 대한 암기력 측정이 아닌, 사례 해결식 문제 유형, 사실 분석과 법리적용 능력 위주로 전환될 것이 요구되며, 실제로 그와 같은 전환은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계획하고 있는 바이다.<sup>8)</sup>

이렇게 볼 때 법학적성시험의 신뢰도, 즉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업 수행능력과의 예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제도 뿐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내용, 교수방법 등 소프트웨어적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 아무리 법학적성시험이 분석력, 논리력, 추리력을 제대로 측정한다 할지라도 막상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이 단순암기력, 해석적 법학방법론에만 머문다면 양자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시험 따로 교육 따로’의 결과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 및 교수방법은 중국적으로 변호사 시험의 목표와 내용과 밀접히 연결된다. 새로 시행될 변호사 시험이 기존의 사법 시험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획기적 질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법학적성시험의 바람직한 출제와 시행에 대한 사항은 독립적으로 논의할 사항이라기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나아가서 변호사시험법 논의와 연관하여 큰 틀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sup>9)</sup>

법학적성시험은 또한 학부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대학교육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요즈음 대학진학을 목전에 둔 학부모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무슨 학부 전공이 유리한가”를 궁금해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앞의 책, p.30.

9) 미국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로스쿨 성적(LGPA)과 LSAT 성적은 변호사시험합격과 매우 큰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학부성적(UGPA)과 명문학부 졸업여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에 독립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inda F. Wightman, *LSAC National Longitudinal Bar Passage Study, LSAC Research Report Series*, Law School Admission Council, 1998.

하고, 동시에 인문·사회계열 학부소속 교수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시키기 위해 어떤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가”를 고민한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그동안 전공에 상관없이 사법시험 준비에 매달렸던 학생들을 소속 학과 수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진출에 유리하다고들 하는 학과’의 출현을 조기에 막아야 한다.<sup>10)</sup> 또한 법학적성시험의 점수는 문제유형의 암기와 반복학습을 통해 향상되어서는 안 된다.<sup>11)</sup> 이러한 노력 없이는 법학적성시험 입시학원의 성행 또한 막을 수 없을 것이다.<sup>12)</sup>

## 2. 법학적성과 법률가의 소양

법학적성시험 제도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지만 법학자들, 법실무자들 간에 논의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던 문제가 바로 ‘법학적성’의 개념과 그 핵심요소가 무엇인가이다. 법학적성이 과연 무엇인가는 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시대적·문화적 차이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법률가로서 필요한 소양과 자질이 무엇인가에 궁극적으로 귀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

10) 로스쿨에서의 학업성취도와 학부전공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미국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놀랍게도 전자공학(electrical engineering) 전공자가 가장 높았고, 가장 상관관계가 낮았던 전공은 법률학(legal studies)이었다. 이는 실제적 현상이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계열 전공이 유리할 것이라는(혹은 그러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선전되는) 일반의 상식과는 매우 다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관련연구로는 Mark Graham and Bryan Adamson, “Law Students’ Undergraduate Major: Implications for Law School Academic Support Programs (ASPs)”, *University of Missouri at Kansas City Law Review*, Vol. 69 (2000)을 참조할 것. 아울러 29개 학부전공과 LSAT 평균점수와의 단순통계자료로는 Michael Nieswiadomy, “LSAT Scores of Economics Majors: The 2003-2004 Class Updat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Vol. 37 (2006)을 참조할 것.

11) 과연 반복학습에 따라 법학적성 시험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될 수 있는냐에 대한 문제는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LSAT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LSAC의 공식적 연구결과와 여타의 독립적 연구결과는 서로 상반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LSAT 점수가 준비와 반복학습에 따라 향상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는 Andrea A. Curcio, Gregory Todd Jones, Tanya M. Washington, “Does Practice Make Perfect?: An Empirical Examination on the Impact of Practice Essays on Essay Exam Performance”, *Florida State University Law Review*, Vol. 35 (2008) 참조.

12) 현재 시중에 수십 권의 LEET 대비 참고서와 문제집이 발간되었고, 온라인·오프라인에 기반한 각종 법학전문대학원 진학학원들이 출현하였다. 미국에서도 LSAT 준비코스의 수업료는 평균 \$1,000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미국 변호사협회의 한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sup>13)</sup>

미국의 LSAT는 ‘로스쿨 수학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기술들, 즉 복잡한 구문을 정확히 읽고 이해하는 능력, 주어진 정보를 적절히 구성하고 관리하며 이로부터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논리와 주장을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sup>14)</sup> 우리나라의 법학적성시험에서는 독해 표현력,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기본지식을 법학적성과 관련이 깊은 능력이라고 보고 있다.<sup>15)</sup>

아울러 법학적성이란 가변적이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면이 있다. 30년 전의 법률가의 모습과 오늘의 법률가의 모습은 분명 다르고, 30년 후의 그것과도 아마 다를 것이다. 한국의 법률가에게 기대되는 능력은 미국이나 일본의 법률가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가상, 법률가 직역의 범위, 법학교육방법론에 따라 법학적성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법률가’ 직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방법론적으로는 다양한 법조직역의 직무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적성시험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도, 변호사시험 설계에도 역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법학 교육자 혹은 법률가들은 법학수학능력 및 법학적성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성시험에 담겨져야 하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 때문에 법학적성시험의 점수를 입학전형에서

13) 미국변호사협회가 발간한 맥크레이트 보고서(McCrate Report)에서 제시된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은 ①문제해결력, ②법적 분석 및 추론능력, ③법적 연구능력, ④사실 조사능력, ⑤의사소통능력, ⑥카운슬링 능력, ⑦협상능력, ⑧소송 및 분쟁해결절차, ⑨법실무의 조직 및 경영, ⑩윤리적 딜레마의 인식과 해결력 등 10개의 영역이고, 이 모든 것들을 모든 학생들이 로스쿨 졸업 시까지 배워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American Bar Association’s Section on Legal Education and Admissions to the Bar, *Legal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An Educational Continuum: Report of the Task Force on Law Schools and the Profession: Narrowing the Gap* (1992).

14) LSAT Information Book, p.1, at <http://lsac.org/pdfs/2006-2007/informationbk2006.pdf>.

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앞의 책, p.20.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본설계 단계 및 문제출제에 있어 법학교육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실제 출제에 있어서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겠지만 출제의 지침과 원형(prototype) 개발에 있어서는 법학교수들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Ⅲ. 법학적성시험의 고찰

#### 1. 응시자 현황

2008년 처음으로 시행된 법학적성시험에는 총 9,690명(접수자 10,960명)이 전국의 7개 지구 244개 고사장에서 응시하였다. 이 중 2009학년도 의치의학입문검사 중복 응시자는 270명이다. 응시자 수를 2008년도 사법시험 응시자(23,656명)와 비교할 때 40.96% 정도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 대비 단순 환산할 경우 입학 경쟁률은 4.85대 1이다. 대체적으로 올해 응시율이 낮은 이유는 2016년까지 사법시험 유지로 인한 기존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지원이 낮았으며,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시험 합격 후 2년간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한다는 변호사실무수습안의 발표와 이로 인해 사법시험 출신자들보다 경쟁력이 낮을 것이라는 일부 추측성 보도로 인해 응시자들이 동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계열별 응시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대로 나타난다(〈표 1〉 참조). 총 응시자 중 법학계열 출신은 ⅓에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공학, 상경, 인문, 사회계열 출신이 각각 1,000명 이상 응시하여 이들의 합이 55%에 달한다. 법률에서는 비법학계열 출신 지원자를 ⅓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sup>16)</sup> 사실상 2009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동 규정은 어렵지 않게 충족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된 대학의 경우 법학부가 폐지되어<sup>17)</sup> 법학부 학생의 총수가 점차 줄어들고, 아울러 이들 중 상당수가 2016년까지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학적성시험 응시자 중 법학계열 출신의 비중은 앞으로도 크게 증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계열별 응시자 현황<sup>18)</sup>

계열	응시자(명)	비율(%)
법학계열	3,137	32.4
공학계열	1,450	15.0
상경계열	1,377	14.2
인문계열	1,312	13.5
사회계열	1,178	11.5
자연계열	421	4.3
사범계열	295	3.0
의학계열	194	2.0
약학계열	112	1.2
농학계열	70	0.7
예체능계열	66	0.7
신학계열	23	0.2
기타	118	1.2
계	9,693	100.0

1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1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18)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체점결과, 2008.9.30. 보도자료, p.4.

응시자의 연령별 분포는 <표 2>와 같다. 대체적으로 보아 대학졸업 후 2년~4년이 경과한 자가 가장 많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30세 이상 지원자도 1/3이 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지원자들의 자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사회경험이 있는 유경력자들과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지원자들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연령별 응시자 현황<sup>19)</sup>

구분	응시자(명)	비율(%)
22세 이하	314	3.2
23세 ~25세	2,006	20.7
26세 ~28세	2,794	28.8
29세 ~31세	1,930	19.9
32세 ~34세	1,275	13.2
35세 이상	1,374	14.2
계	9,693	100.0

법학적성시험의 점수는 표준점수를 사용한다. 언어이해영역, 추리논증영역은 평균 50점, 표준편차 10인 표준점수(T-점수)를 사용하고, 점수범위는 0점에서 100점 사이이다. 표준점수를 사용하는 경우 난이도 차이 등을 최소화하고 응시영역을 같은 비중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언어이해영역과 추리논증영역을 독립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번 응시하고 그 점수를 여러 번 사용할 경우 표준점수는 난이도와 상관없이 평균 50점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응시자의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19) 위의 글, p.5.

양 영역별 응시자 점수분포는 <표 3>과 <표 4>에 나타나 있다. 언어이해영역의 경우 최종점수는 0점부터 75점까지 나타났으며, 55점과 60점 사이에 가장 많은 응시자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추리논증영역의 경우 0점부터 85점까지이며 50점과 55점 사이에 가장 많은 응시자들이 분포하고 있다. 점수 분포 상 추리논증영역이 더 넓게 퍼져 있으며 고득점자 분포가 열게 나타나 실질적으로 응시자간의 변별력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3> 언어이해 점수분포<sup>20)</sup>

표준점수	빈도	비율	누적비율
0.0 이상~5.0 미만	1	0.0	0.0
5.0 이상~10.0 미만	0	0.0	0.0
10.0 이상~15.0 미만	19	0.2	0.2
15.0 이상~20.0 미만	27	0.3	0.5
20.0 이상~25.0 미만	110	1.1	1.6
25.0 이상~30.0 미만	174	1.8	3.4
30.0 이상~35.0 미만	503	5.2	8.6
35.0 이상~40.0 미만	685	7.1	15.7
40.0 이상~45.0 미만	1,027	10.6	26.3
45.0 이상~50.0 미만	2,028	20.9	47.2
50.0 이상~55.0 미만	1,550	16.0	63.2
55.0 이상~60.0 미만	2,073	21.4	84.6
60.0 이상~65.0 미만	873	9.0	93.6
65.0 이상~70.0 미만	581	6.0	99.6
70.0 이상~75.0 미만	41	0.4	100.0
75.0 이상~100.0 이하	0	0	100.0
계	9,692	100.0	

20) 위의 글, p.6.

<표 4> 추리논증 점수분포<sup>21)</sup>

표준점수	빈도	비율	누적비율
0.0 이상~5.0 미만	0	0.0	0.0
5.0 이상~10.0 미만	1	0.0	0.0
10.0 이상~15.0 미만	2	0.0	0.0
15.0 이상~20.0 미만	5	0.1	0.1
20.0 이상~25.0 미만	38	0.4	0.5
25.0 이상~30.0 미만	229	2.4	2.8
30.0 이상~35.0 미만	308	3.2	6.0
35.0 이상~40.0 미만	1,033	10.7	16.7
40.0 이상~45.0 미만	1,697	17.5	34.2
45.0 이상~50.0 미만	1,380	14.3	48.5
50.0 이상~55.0 미만	2,062	21.3	69.8
55.0 이상~60.0 미만	1,126	11.6	81.4
60.0 이상~65.0 미만	1,168	12.1	93.5
65.0 이상~70.0 미만	481	5.0	98.4
70.0 이상~75.0 미만	114	1.2	99.6
75.0 이상~80.0 미만	38	0.4	100.0
80.0 이상~85.0 미만	1	0.0	100.0
85.0 이상~100.0 이하	0	0.0	100.0
계	9,692	100.0	

## 2. 문제유형

현재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40문항, 90분), 추리논증(40문항, 120분), 논술(3문항, 150분)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논술시험은 일괄채점 되지 않고 채점과 반영을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일임하기 때문에 두 영역만이 객관적으로 통일화된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항목이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법학 지식을 묻는 문항은 출제될 수 없다.

21) 위의 글, p.7.

법학 지식은 측정될 수 없다 해도 그것이 법학과 관련된 지문을 출제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실제로 이번에 실시된 시험문제에 법학과 관련된 지문이 여러 개 출제되었으나, 법학적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추리력과 논리력을 평가하려는 의도였다. 언어이해영역과 추리논증영역에서는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엄선된 지문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정 학문전공자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골고루 배분되고 있다. 여기에 법학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특정 학문영역에서 지문이 빈번히 출제된다면(출제자의 학문적 이해 관계 혹은 출제자 섭외의 어려움으로 인해 출제자 풀의 제한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로) 학생들에게 해당 학과에 가야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유리할 것이라는 오해를 주게 된다. 반면 문항 출처의 다양화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소학문분야의 참여'(혹은 '백과사전식의 출제자 구성')를 표방하여 문제의 일관성을 놓치고 시험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의 원래 목표는 법학'적성'을 측정하는 것이지 대학교육을 얼마나 충실히 받았는가의 평가는 부차적인 것이다. 물론 다양한 출처를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러 학문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춘 것이 평가되어 시험이 갖는 교육적 계도의 측면에서 타당성은 있을 수 있지만, 수험생들이 내용 파악에 시간을 지나치게 할애하게 되어 분석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발휘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학적성시험의 지문은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수준 높은 내용보다는 일상 언어나 보편적 내용의 지문들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특히 언어이해영역의 경우 지문의 내용이해 그 자체보다는 이해를 전제로 다양한 비판적, 분석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이해영역의 성격을 좀더 추리논증영역과 혼합하여도 좋을 것 같다. 미국의 LSAT는 '논리추론(Logical Reasoning: LR)'과 '분석추론(Analytical Reasoning: AR)'을 구분하여 출제하고 있고 사실상 양자의 예언적 타당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다.<sup>22)</sup> 현행 의치의학입문검사(MEET/DEET)

22) 한 연구에 따르면, LSAT와 로스쿨 1학년 학업성적과의 상관도는 '논리추론'(LR) 섹션의 경우 0.483이고 '분석추론'(AR) 섹션은 0.43이었다. 양자는 모두 '독해력'(RC) 섹션의 상관도(0.34)보다 현저히 높았다. <http://members.lsac.org/Public/MainPage.aspx?ReturnUrl=%2fPrivate%2fMainPage2.aspx>.

에서도 ‘언어추론’이라 하여 언어이해와 추리력을 함께 측정하고 있다.<sup>23)</sup> 법학적성시험의 경우 추리와 논증을 한 섹션에 묶어(추리논증영역) 출제하고 있으며, 언어이해영역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능력은 추리논증영역에서 검증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추리력과 논증분석력이 법학적성 중 핵심적 부분이라고 본다면 현재의 언어이해 영역의 지문을 활용하여 논증을 분석, 판단, 비판하는 문항을 구성하여 그 비중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LSAT에서도 독해력(Reading Comprehension: RC) 섹션은 실질적으로 주어진 지문의 내용적 이해도보다는 비판적 독해능력을 측정한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다음으로 난이도의 문제가 있는데, 일단 법학적성시험은 되도록 쉽게 출제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2016년까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의한 법률가 양성과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병행이 예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응시자들은 사법시험과 법학적성시험 중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난이도는 높지 않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논술시험의 경우 채점과 반영여부는 각 법학전문대학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입학전형에 있어서의 중요도에 대해 언급하기가 어렵다. 미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서류전형에 통과한 지원자에 대해 일괄적인 면접을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이 단계에서 법학적성시험의 논술시험 답안내용이 실질적인 평가요소의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LSAC에 의해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LSAT의 논술시험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교가 6.8%였고, 반면 항상 반영한다고 응답한 학교는 9.9%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학교들은 ‘종종’(25.3%), ‘가끔씩’(32.7%), 혹은 ‘거의 활용 없음’(25.3%)의 순이었다.<sup>24)</sup> 따라서 미국 로스쿨 입학전형에 있어 LSAT의 논술시험은 당락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3) 의치의학입문검사의 언어추론영역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문학, 예술 분야의 다양하고 간학문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언어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 고차적이고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한다. 동 검사에서는 이 영역 이외에 자연과학추론 영역이 평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앞의 책, p.35.

24) <http://www.freshershome.com/careers/abroad/lsat/lsat.php>.

### 3. 출제방식

이번에 시행된 법학적성시험은 집단 합숙출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마찬가지로 고비용, 저효율 방식이다. 표준화된 문제출제가 어려워 통일성을 유지하기 힘들고, 또한 출제자들이 장기간 외부와 격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섭외가 어려운 것도 시행상의 난점이다. 장기적으로 문제은행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다. 미국의 경우를 참고로 살펴보면, 시험문제는 기본적으로 LSAC의 전문출제위원들이 만들고 여기에 법학교수나 변호사들과 같은 외부전문가들이 만든 문제가 더해진다.<sup>25)</sup> 일단 문제은행이 만들어지면 개별 문제들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선별작업에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제들은 실제 LSAT 문항에 출제되어 난이도와 신뢰도를 테스트한다.<sup>26)</sup> 그러나 법학적성시험의 경우 문제은행 방식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조기구축, 전담기구·인력·재정 확보의 애로점 때문에 조만간 시행하기에는 매우 힘들 것 같다.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다만 절충안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사법시험과 같은 변형된 문제은행 방식이다. 수시로 문항을 출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합숙 출제 시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유형을 적절히 변형하여 출제한다면 인원과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합숙출제를 고수하면서도 출제위원의 수를 대폭 줄여 여러 전공의 출제자로 하여금 팀을 구성하여 공동출제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어떤 방법이든 완전한 문제은행 방식으로 전환하는 동안의 과도기에는 실효적일 것이다.

25) Policies and Procedures Governing Challenges to Law School Admission Test Questions, <http://www.lsat.org/pdfs/2005-2006/Policies-web.pdf>.

26) LSAT의 한 섹션은 실제 시험점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실험적 섹션(experimental section 혹은 'dummy section')으로, 새로이 문제은행에 추가된 문항들의 사전검증을 위해 만들어졌다. LSAT에 출제되어 점수에 반영되는 문제들은 이러한 검증절차를 2번 이상 거친 것들인데,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응시자들은 어느 섹션이 실험적 섹션인지를 모른 채 시험을 치른다는 것이다. 이재협, 앞의 글, p.292.

## 4. 시행빈도

법학적성시험을 일 년에 두 번 이상 시행하는 것은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시행경험을 축적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리 짚어봐야 할 문제들이 있다. 법학적성시험의 시행비용은 응시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그 중 대부분은 출제관련비용으로 소요된다.<sup>27)</sup> 장기 합숙출제방법에 의존할 경우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숫자의 응시생 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2,000명이라는 제한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총 정원과 사법시험의 병존으로 인해 법학적성시험 응시생의 저변은 그리 넓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수의 법학적성시험을 시행할 경우 불가피하게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응시수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복수시행의 정당성은 높지만 그만큼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것이 답답한 현실이다. 만약 가까운 장래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총 정원이 늘어나고 사법시험제도가 없어져 법률가 양성의 일원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렵지 않게 법학적성시험을 복수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최근 3개년 간 미국의 LSAT 응시생 추이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매년 14만 여명이 LSAT를 응시하고 있고 로스쿨 지원자들이 본격적으로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시기에 맞추어 10월과 12월의 응시자가 가장 많은 편이다. 2006년~2007년 시즌에는 84,021명이 로스쿨에 입학원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에서 46,744명이 최종 등록하였다(<표 6> 참조). 동일한 시기의 LSAT 응시자 총수는 140,048명이었다. 단순계산해 보면 중복 응시자를 포함하여 대략 로스쿨 총입학생수 대비 약 3배 정도가 LSAT에 응시했다는 결과가 된다.

27) 올해 실시된 첫 번째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23만원이었다.

<표 5> 연도별 LSAT 응시자 현황<sup>28)</sup>

연도	6월	10월	12월	2월	계
2005-06	25,984 (-9.1%)	49,197 (-2.4%)	40,023 (-4.7%)	22,240 (-8.4%)	137,444 (-5.4%)
2006-07	24,879 (-2.1%)	48,171 (-2.1%)	41,033 (2.5%)	25,965 (16.7%)	140,048 (1.9%)
2007-08	25,103 (0.9%)	49,785 (3.4%)	42,250 (3.0%)	25,193 (-3.0%)	142,331 (1.6%)

<표 6> 미국 로스쿨 지원자, 입학허가, 등록자 현황<sup>29)</sup>

2006-2007	지원자수	남성	여성
입학허가	55,547	29,266	22,185
등록	46,744	24,266	26,185
합계	84,021	42,484	40,957

## 5. 점수의 반영

법학적성시험의 점수는 표준점수로 산출하며, 각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통보하고 총점은 산출하지 않는다.<sup>30)</sup> 응시생들의 점수의 활용방법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현재 각 학교의 법학적성시험 점수의 반영 비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앞으로 시험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가 축적된다면 입학전형에 있어 반영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28) <http://members.lsat.org/Public/MainPage.aspx?ReturnUrl=%2fPrivate%2fMainPage2.aspx>.

29) [http://www.lsa.umich.edu/advising/advisor/prelaw/stats\\_genapp](http://www.lsa.umich.edu/advising/advisor/prelaw/stats_genapp).

30) 미국의 LSAT는 각 섹션별 점수를 제공하지 않고 전체 평균점수만을 제공하는 것이 법학적성시험과 다르다. 몇몇 연구들은 섹션별 점수제공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Kenneth M. Wilson & Donald E. Powers, Factors in Performance on the Law School Admission Test, Law School Admission Council Statistical Report 93-04, March 1994 참조.

있을 것이다.<sup>31)</sup> 미국에서는 한 유력주간지(U.S. News & World Report)가 1987년부터 매년 로스쿨 순위를 집계하고 있다.<sup>32)</sup> 최근 많은 로스쿨들이 그 순위의 주된 양적지표의 하나인 입학생 LSAT 점수를 높이기 위해 각 학교들이 입학전형에서 경쟁적으로 LSAT 고득점자를 유치하려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sup>33)</sup> 우리나라에서도 한 중앙일간지가 유사한 방법으로 매년 대학과 학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순위매김이 조만간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한 평가가 학생들의 지원시 중요한 판단의 척도로 작용하게 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우수교원의 확보나 교육의 질 개선보다 입학생들의 법학적성시험 점수에 더 우선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폐단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복수시행시 아울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법학적성시험 점수의 유효기간, 복수의 점수 반영여부(최고득점 점수만 반영 혹은 평균점수 반영), 응시자격, 응시회수 제한 등이다. 금년도 법학적성시험 점수는 당해 연도에 한해 유효했지만 시험의 동등화가 가능해진다면 한번 본 시험점수를 여러 해에 걸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 해에 여러 번 시험이 시행된다면 시험의 유효기간은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텐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학계, 실무계 법률가들은 2년~3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sup>34)</sup> 응시회수와 관련하여서 동 조사에서는 2회~3회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sup>35)</sup>

31) 참고로 LSAC는 입학전형에서 LSAT 점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Law School Admission Council, Cautionary Policies Concerning LSAT Scores and Related Services, <http://lsacnet.lsac.org/publications/CautionaryPolicies.pdf>.

32) U.S. News & World Report의 미국 로스쿨 랭킹은 학계의 평판, 법조계의 평판, 입학생의 학부성적과 LSAT 점수, 입학경쟁률, 교수/학생 비율, 취업률,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33) Richard A. Matasar, "The Rise and Fall of American Legal Education," New York Law School Law Review, Vol. 29 (2004), pp.465-504.

3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앞의 책, p.71.

35) 위의 책, p.70. 참고로 미국의 LSAT는 2년 동안 3회로 응시회수를 제한하고 있다. <http://www.lsac.org/pdfs/2005-2006/Policies-web.pdf>.

사건으로는 응시회수는 인위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보다는 법학적성시험 점수의 평균점을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점수가 보고되도록 한다면 자연히 법학적성시험 공부에만 매달려 여러 번 응시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응시한 모든 횟수의 개별 LSAT 점수와 그것의 평균점수가 함께 보고된다.<sup>36)</sup> 대부분의 응시생들은 대개 한번의 LSAT를 치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7)</sup> 만약 유효기간을 2년 정도로 한다면, 1년에 2번 시행할 경우 학생들이 재학 중에 최대 4번까지 응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학졸업자(혹은 졸업예정자)로 한정하고 있는 응시자격도 요건으로 굳이 못 박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점수분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없지 않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응시할 것 같지는 않다.<sup>38)</sup> 누구든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응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문호를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6. 시행주체

현재는 법학적성시험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담당하고, 출제·채점·인쇄·점수 통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sup>39)</sup>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그동안 표준화된 시험의 시행경험이 많기 때문

36) 2006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복수 응시생의 경우 각각의 개별점수보다는 이들의 단순평균점이 향후 로스쿨 학업성취도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members.lsat.org/Public/MainPage.aspx?ReturnUrl=%2fPrivate%2fMainPage2.aspx>.

37) LSAC의 통계에 따르면 2006-2007학년도 LSAT 응시생의 21.8%가 LSAT를 두 번 응시하였고, 세 번 이상 응시한 사람은 4.5%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응시생들은(73.7%) LSAT를 단 한번 응시하였다. <http://www.lsat.org/pdfs/2008-2009/InformationBook08web.pdf>.

38) 당분간은 높은 응시수수료(2008년 23만원)가 현실적인 진입장벽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응시자 풀이 확대된다면 당연히 응시수수료는 저렴해질 것이어서 결국 모든 응시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배분되고, 시험이 더욱 안정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39) 법률상 법학적성시험의 시행주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정기관으로 관련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앞으로도 많은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LSAC와 같은 독립적 시행주체를 협의회 내에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한 예산, 전문인력의 확보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7. 향후 연구과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LSAC를 벤치마킹하여 앞으로 법학적성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연구를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LSAC는 로스쿨 입학과 관련한 각종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입학선발방식을 보다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과제를 매년 공모하는데,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 ① 법학교육의 접근성
- ② 법률전문직에 진출한 사회계층과 진출요인
- ③ 로스쿨 진학동기
- ④ 특정 로스쿨 선택이유
- ⑤ 로스쿨의 입학전형요소, 특히 LSAT와 GPA 이외의 정성적 요소
- ⑥ LSAT와 GPA 이외의 요소와 로스쿨 수학능력간의 상관관계
- ⑦ 법학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학벌 및 사회적 요소와의 관련성
- ⑧ 법학교육의 경제적 분석
- ⑨ 상이한 법학교육방법의 영향
- ⑩ 새로운, 비전통적 교수방법(예컨대 사회과학방법론, 대체적 분쟁해결 등)에 대한 연구
- ⑪ 과목선택의 이유 및 진로와의 상관성
- ⑫ 법학교육이 학생들의 인지능력, 사회성, 행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등

## IV. 결 론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핵심적 요소이며, 전문교육 및 학부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새로운 법학교육체제의 기틀을 세우고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백년대계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법학적성시험은 그 어느 것보다 신중하게 설계, 고안되어야 한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구성원 뿐 아니라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다.

일차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한국형 법학적성시험으로서의 내용상 통일화를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시험의 신뢰도와 예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경험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출제방식, 시행빈도, 유효기간, 점수의 반영 등 여러 시행상의 쟁점들도 해결해 나아가야 숙제이다. 다만 사법시험제도가 존치하는 한 응시자 풀이 제한되어 많은 경우에 있어 개선해 나가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방법 및 교과과정과의 유기적 관련 속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변호사시험법과의 관련 하에서 법학적성시험의 큰 골격을 잡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

색인어: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법학적성시험, LSAT, 예언적 타당도, 입학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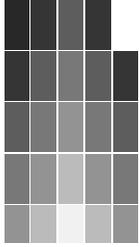
## Abstract

### **An Appraisal and Suggestions for Effective Administration of the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

The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to secur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in Korea.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general aspects of the LEET in comparison with the Law School Admission Test (LSAT) of the United States and to assess the first LEET administered in August 2008. Because the law school admission process is still in progress, it is premature to evaluate the test comprehensively. However, several observations can be made even with the limited experience at this stage.

First, the LEET must be designed in conjunction with the transformation of the legal education at the law school and the performance at the new bar exam, in order to enhance the predictive validity among them. Second, the legal community must come up with the concept of what it means to be 'the legal eligibility' itself. Third, more streamlined approach to writing exam questions, e.g., emphasizing more analytical and logical skills, operating the test bank, is needed. Fourth, the test can be administered more than once in a given year, in order to provide test-takers more flexibility. Finally,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should strengthen personnel resources and institutional capacity and to conduct continuous research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LEET.

Keywords: Law School, LEET, LSAT, predictive correlation, admission policy



# 미국 LSAT로부터의 교훈

---

- I. 서론
- II. Pre-LSAT 시대
- III. LSAT 시대
- IV. 결론

# 미국 LSAT로부터의 교훈

## I. 서 론

2009학년부터 한국에서도 미국과 같은 법학전문대학원 즉 Law School 시대가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국회, 정부, 및 학계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 2,000명을 정원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시대를 도래시킨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일반인들은 많은 사회적 비용과 논란이 수반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시작하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수들조차 이러한 의문에 대해 얼마나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매년 현재의 사법시험의 합격자는 1,000명 내외로 단순히 합격자 수를 2,000명으로 증원시키면 많은 사회적 논란과 불필요한 비용 지출 없이,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없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조인의 수요(만약 매년 2,000명이라는 숫자가 법조인에 대한 사회적 수요라면)에 맞출 수 있다. 이러한 손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즉 기존의 틀을 깨면서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법률서비스를 하나의 산업으로 여기고 그 속에서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이다. 현재의 법조인은 80% 이상 자신의 학부 전공이 법학이며<sup>1)</sup>, 나머지 20%도 실질적으로 자신의 학부

1) <표 1> 사법시험 제2차합격자 법학/ 비법학 전공 구분

구 분	전체		법학전공		법학비전공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8년 합격자 (제50회)	1,005	100.00	813	80.90	192	19.10
2007년 합격자 (제49회)	1,008	100.00	782	77.58	226	22.42
2006년 합격자 (제48회)	1,002	100.00	766	76.45	236	23.55

자료 : 법무부, 사법시험 제2차 시험 합격자 통계 <<http://www.moj.go.kr/barexam/>>

전공이 법학이라고 규정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대학원 과정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갖춘 자들이 법조인으로 육성되어 활동함으로써 기존의 문제와 새로운 문제에 좀 더 창의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이로써 대한민국 사회·경제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통해, 즉 좀 더 효율적으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이다. 통계적으로 평균 6년 이상 준비하여야 사법시험을 통과할 수 있으며<sup>2)</sup>, 사법연수생이라는 준법조인으로 2년간 연수기간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고비용 비효율적 기존 방식을 3년이라는 전문대학원 과정을 통해 개인·사회적 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법률서비스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과거와 달리 현대 법률서비스 시장은 소송실무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심지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잠재적 요소가 충분한 분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IMF시대를 지나 담보된 경제성장 동력에 한계를 맞이하면서 FTA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가 양적인 팽창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에서 유래하였다면, 이러한 한계는 현재의 산업구조를 질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질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법률서비스이다. 즉 법률서비스는 각 산업별 경제 성장에 있어 회피할 수 있는 제도 및 위험 비용을 절감시키고 기업의 가치를 제도권에서 재창출시킴으로써 산업의 생

2)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변호사시험법'이 시행하는 2012년부터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합격자 수를 점차 줄이고, '변호사시험법안' 부칙에 따르면 2017년에는 '사법시험'을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현재의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유지하려는 이유는 2008년에 대학에 입학한 법학전공 학생들에게 10년 동안 '사법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이는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만 28-29세로 대학 졸업 이후 평균 6년이 지나야 '사법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산성과 경쟁력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법률서비스는 기존의 법조인이 담당하기엔 숫자와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Paradigm에 적합한 법조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화와 개인의 권리의식 증가는 과거에 존재 하지도 예상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법치주의의 현실화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현재보다 더 낮은 법률서비스 비용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양적인 팽창은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며, 법학전문대학원체계가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유형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학 교육방법과 학과 커리큘럼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 3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집중적인 법학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시행착오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시행착오는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은 수준에서는 바로 실패로 간주된다. 교육기관의 시행착오는 과학교육부에 의해 평가와 Monitoring되어 향후 입학 인원 증원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며, 학생들의 시행착오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된다. 특히 학생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학적성시험을 통해 법률의 실무적 적용과 그 학습 과정이 개인적으로 적성에 맞을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학습과정에서 우열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학적성시험인 LEET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이미 6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LSAT를 고찰함으로써 LSAT의 교훈과 경험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LEET가 개발되길 바란다.

## II. Pre-LSAT 시대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실질적으로 Harvard 대학을 중심으로 19세기 후반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전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존재하였지만 현재의 모습과 골격의 유래는 랑델 교수가 1869년 하버드 로스쿨에 도입한 "Case Method"가 19세기 후반 법학전문대학원의 일반적인 교습 방법이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이 시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학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20세기 초반부터 학부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수험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자발적 욕구가 발생하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들을 상담하기 위한 도구로써 가능한 방법을 필요로 하였다. 1920년대 심리학자인 George Stoddard와 North Carolina 학장인 Merton Ferson이 협력하여 만든 표준시험(Standardized Test)과 1930년 Yale대학에서 개발한 시험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유형의 시험은 기본적으로 전공과 학교가 다른 각 지원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지원자들의 학부성과 학습능력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사용되는 그 이상의 역할은 아니었다. Stoddard-Ferson이 고안한 표준시험은 타고난 지능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측면이 강하였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법과 이를 학습하기 위한 의지력과 욕구를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Yale대학 자체에서 개발한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사정 2단계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객관적 지표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1단계를 통과한 응시자들의 능력과 의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다소 주관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인성 또는 적성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어 있었다.

3)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줄저, 법학교육에서 Leading Case의 의미, 민사법학, 제44호 (2009.03) 참조.

1945년 Columbia 법학전문대학원 입학담당관 Frank Bowles는 대학수학능력 시험(SAT)을 만드는 미국 대학입학시험위원회(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CEEB)) 회장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SAT)과 유사한 수학능력시험을 만들어 대학원입학사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마침내 1947년 Columbia 대학의 Professor Willis Reese가 주도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학생들의 수학능력과 상관관계(correlation)가 높은 시험을 만드는 계획을 Bowles가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Columbia, Yale, Harvard 대학의 대표자들 그리고 대학입학시험위원회(CEEB) 회장과 그 대표자들은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하게 되었다. 시험을 만드는데 있어서 전제조건으로 재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이에 Reese는 중요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학장들에게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고 마침내 1947년 11월10일 법학입학시험(Law School Admission Test (LSAT))을 만들기 위한 학장들 간의 모임이 이루어졌다. 이 모임에서 각 대학들은 일정 금액을 각출하여 LSAT를 만들기를 결의하였다.

LSAT의 내용은 1945년 Frank Bowles가 지적한 내용을 상당히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가 CEEB 회장과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 수준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시험이어야 할 것. 둘째, 법학 학습능력을 주된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셋째, 높은 신뢰성. 넷째, 1시간 30분 이하의 시험일 것. 다섯째, 법학 학습을 위한 분별력 및 식별성과의 관련성을 갖출 것. 여섯째, 시험결과를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것. 일곱째, 비용이 적게 들것.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LSAT를 만들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 교육시험기관(Educational Testing Service(ETS))과 법학전문대학원입학위원회(Law School Admission Committee(LSAC))의 전신인 LSAT 자문위원회와 재정적인 합의를 통해 LSAT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 Ⅲ. LSAT 시대

#### 1. LSAT의 의미

LSAT는 미국 교육의 표준 기준을 위한 시험으로써 대학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았는지를 평가하는 기능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려 사항들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LSAT는 자신들의 자녀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 방법으로 사용되었다.<sup>4)</sup>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와 의회는 전쟁에 참가한 군인과 그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재정적 원조를 시작하였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대학진학이 일상화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음과 대학원 이후 전문직업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시험의 수요와 공급은 이로써 자연스럽게 일치되게 되었다.

LSAT가 좀 더 객관화된 표준시험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성 앵글로 색슨 문화를 중심으로 한 시험 문제에서 좀 더 문화·인종 중립적인 내용으로, 남성 중심에서 양성 평등 내용으로, 종교편향에서 종교 중립적인 내용으로 LSAT의 문제 구성에 대한 변화가 필요했고, LSAC는 이를 적극 수용·반영하였다. LSAC 회원의 증가가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반영되

4) LSAT와 변호사시험과의 상관관계는 LSAT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성공여부와는 적다고 알려져 왔다. 그 이유는 미국 변호사시험은 일 년에 두 번 치루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응시하는 시기의 차이, 그리고 높은 합격률로 인해 그 상관관계를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이 전 학년 성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가 변호사시험과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순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보다 LSAT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성공여부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성공여부는 취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 요인이기 때문에 LSAT, 법학전문대학원의 성적, 변호사시험관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바,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 있다는 사실은 LSAT가 표준시험으로써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1948년부터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위원회(이하 LSAC)가 구성되어 LSAT를 주관하는 기관을 형성하였다. LSAT는 1951년에 미국 전역 22개의 주요 대학원을 중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자들의 평가요소로 자리 매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숫자는 점차 증가하여 1956년에는 36개 대학원이 LSAT를 입학 사정의 중요 지표로 사용하게 되었다. 1961년에는 89개 대학원이, 1966년에는 105개 대학원이, 1971년에는 117개 대학원이, 1976년에는 174개 대학원이, 1981년에는 187개 대학원이, 1986년에는 189개 대학원이, 2000년에는 198개 대학원이 그러하다. 2009년 현재는 미국,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212개 법학전문대학원이 LSAT를 중요 입학사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1975년부터 처음으로 미국 이외에 캐나다의 법학전문대학원도 LSAT를 입학 평가지표로 사용하게 되었다.

## 2. LSAT의 내용과 출제 과정

LSAT는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생들의 논리적 추론 능력과 독해기술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입학 심사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LSAT는 3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시험으로 5지선다의 객관식 시험 부분과 채점하지 않는 논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관식 시험 부분은 논리적 추론, 독해, 분석 추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LSAT는 미국 대학생들의 최상급 수학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사례분석력, 문제해결력, 추론력, 독해력, 논술실력을 평가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LSAT는 120-180점 점수 분포도를 이루고 평균 150점을 유지하고 있다. 합격 및 불합격 사정은 없으며 추측 답안

에 대한 감점 역시 없다. LSAT는 크게 여섯 부분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 논리적 추론 2개 부분, 독해 1개 부분, 문헌적 추론 1개 부분, 차후 시험에 참고하기 위한 채점되지 않는 1개 부분, 마지막으로 채점되지 않는 논술 샘플로 구성되어 있다.

LSAT를 주관하는 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위원회(LSAC)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문제를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시험 개발팀을 구성하고 있다. LSAC에서 시험 문제를 개발 하는 담당자는 철학, 언어학, 어문학을 전공한 8명의 박사학위 소지자, 철학, 언어학, 영어를 전공한 11명의 석사학위 소지자, 그리고 물리학부터 영어까지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11명의 학사학위 소지자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로 1명의 시험 개발 편집인, 1명의 데이터베이스 담당자, 3명의 행정담당자가 시험 개발팀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심리측정 및 그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개발팀이 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3명의 연구 담당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계량심리학, 교육심리학, 그리고 교육심리학을 전공한 자들이다. 6명의 연구보조 및 분석가는 1명의 컴퓨터 공학 박사학위 소지자, 1명의 교육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기타 석사학위 소지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로 2명의 과학 프로그래머가 있으며, 데이터 분석 전문가 2인, 심리측정 편집인 1명, 그리고 행정 담당 1명이 있다.

시험개발 과정은 크게 7단계로 다음과 같이 나뉘어져 있다: 문항작성, 외부 검토, 내부검토, 사전 시험 실시, 문항 형식구성 및 검토, 사전 조정, 시험 실시. 시험 개발 작성 및 검토 과정은 출제자가 타 시험 개발자의 조언과 협조를 받으며 한 세트의 문항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모든 신규 문항들은 외부의 적정성(감도: sensitivity) 평가를 받으며, 2 내지 3인의 시험 개발자에 의한 적합성/품질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받는다. LSAC는 매년 약 700문항을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모든 문항을 개발하며 작성한다. 이러한 문항 개발은 문제은행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항작성과 관련된 과정을 독

해력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항작성자는 분기별로 할당된 임무를 받는다. 둘째, 원천자료를 찾아내고 문항으로 사용할 자극제를 초안·작성한다. 셋째, 문항작성자와 파트너가 문항에 사용할 자극제를 검토하고 보다 정밀하게 다듬는다. 넷째, 문항작성자가 문항을 작성하고 파트너가 작성된 문항들을 검토 한다. 다섯째, 문항에 사용될 자극제와 문항 수정, 편집 및 최종안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문항작성자와 파트너 양자가 최종안에 의견을 일치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문항 검토 과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난이도를 위한 외부평가가 이루어지며 2~ 3인의 시험 전문가와 편집인에 의한 엄격한 검토가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제시된 문항대로 수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에 따라 문항이 수정 또는 거부된다. 평가자 전원이 최종 문항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면 문항은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검토 과정은 ITEMS System에서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다음 단계로 진행될 것이 용인된 문항들은 사전 시험을 위한 문항 조립(구성)을 위한 승인을 받는다. 이러한 문항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들은 건설성(논리성), 품질(수준), 감도, 공정성, 관련 사고능력에 대한 평가 등이다. 특히, 시험 전문가들은 문항에서 논리적 결함, 불명료성, 기타 결함들이 있는지 여부를 매우 공격적으로 찾아내고자 한다. 시험 전문가들은 문항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해 확실하게 대항할 수 있도록 시험 문항들을 검토·점검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간 문항들은 사전 시험을 통해 평가를 받게 된다. 실제 LSAT 시험에서 사전 시험은 별도 부문(점수 미 산입 대상)으로 실시된다. 각 문항에 대한 사전 시험에 따른 통계치가 실제 시험 실시일로부터 약 6주 후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다.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고 나면 문항 작성자와 문항 평가자들에게 사전시험 결과에 따른 문항 점검이 가능하다는 사

실이 통보된다. 이에 따라 문항 작성자들은 문제은행(ITEM) 자료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시험 문항은 통계적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문항, 차별성이 없는 문항,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문항, 특정 소집단에게 불공정할 수 있는 문항들은 삭제된다.

이러한 과정을 걸친 문제들은 문항 조립을 통해 실제시험으로 응시자와 대면하게 된다. 시험 실시 전 문항 조립은 먼저 시험 전문가가 조립될 형식을 위해 사용될 조립군의 세트를 선택한다. 다음, 자동화 프로그램이 ITEMS 내에서 조립과정을 실행하게 된다. 모든 필요 제약사항을 충족한 문항들은 조립된다. 시험 실시 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립된 형식은 시험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다. 검토 중 문항 교체는 가능하나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평가자들은 문항 관련 통계치 전체를 참조하고 평가 시에 통계적 정보를 활용한다. 주제가 중복되거나, 건실성(논리성)이 부족하거나, 감도(수준)가 부족하게 되면 문항들이 교체된다.

위의 과정들을 요약하면 문항작성, 감도를 위한 외부평가, 일괄식(Batch) 문항 평가, 사전 시험에 맞춰 조립된 문항과 평가, 사전 시험 실시, 시험 실시 전 형식에 맞춰 조립된 문항과 평가, 시험 실시 전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종결된 이후 한 번의 LSAT 시험이 실시되며, 이러한 전 과정은 약 30-4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 IV. 결 론

현재 LSAT는 LSAC의 끊임없는 개발과 노력을 통해 신뢰성이 매우 높은 평가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문제은행식 출제방법과 문제 축척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예견 가능한 시험문제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특히 응시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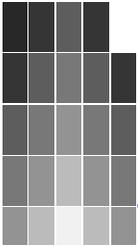
의 LSAT 결과와 이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1년 이상 수학한 결과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LSAC에서는 그 상관관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이 LSAT의 결과에 너무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염려하고 있을 정도이다.<sup>5)</sup> 일본의 법학적성시험은 미국의 LSAT의 과정을 보면서 처음부터 LSAT와 같은 신뢰성 높은 문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일본 독자적인 법학전문대학원을 위한 적성시험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되었다. 우리의 LEET 역시 일본의 고민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미국 LSAT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개별 학생들의 LEET 점수와 1학년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LEET의 개별 문제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습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도록 연구·출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 LSAT의 예를 보았듯이 LSAC와 같이 LSAT를 전문적으로 출제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구와 이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LEET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위탁 받아 시험을 출제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된 설립목적은 초·중·고 교육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평가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일반적인 교육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문제 개발과 출제로 그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조인이라는 전문가를 교육시키고 배출하는 특별한 교육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기초 평가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설립은 자연스러운 발로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다 많은 일반인들이 LEET시험을 응시하여 자신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적합한 능력과 인성을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시험 시스템이 개발되

5) 카시와기 노보루, 일본 법과대학원입학자 선발 적성시험에 대해서, 2009년 4월 법학적성시험의 점검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발표집 31면.

어야 할 것이다. 미국 LSAT는 매년 4번의 시험을 통해 연간 10만 명 이상의 응시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1번의 시험을 통해 1만 명 내외의 응시자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의학전문대학원과 약학전문대학원과 비교해 볼 때 법학전문대학원이 응시자들에게 요구하는 입학 요건은 매우 단순하다. 단지 4년제 학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일 것을 요구하며 선수과목을 수강하거나 특정 전공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다른 전문대학원들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문호의 폭이 훨씬 넓다. 이와 같은 사실을 더 많은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홍보하고, LEET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주된 요소(factor)가 된다면 보다 많은 응시자들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단단한 재정적 뒷받침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LSAC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보다 효과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일본의 법학적성시험

---

- I. 시험의 개요
- II. 일본 적성시험 분석-법무연구재단주최 적성시험을 소재로 하여
- III. 일본 법과대학원입학자 선발 적성시험에 대해서
- IV. 일본의 기출 적성시험의 문제의 예와 해설
- V. 일본의 법학적성시험이 주는 시사점

# 일본의 법학적성시험

## I. 시험의 개요

### 1. 시험 개요

#### (1) 주관

- 1) 대학입시센터 (문부과학성 산하 독립행정법인)
- 2) 법무연구재단 (일본변호사연합회 산하)
  - ※ 어느 기관이 주관한 시험을 입학시험에 반영할지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율적 판단 사항
- 3) 도입 : 2003년
- 4) 목적
  - 법학전문대학원 이수에 필요한 판단력, 사고력, 분석력, 표현력 등의 기본자질 측정
  - LSAT를 모델로 하여 변형
- 5) 실시 회수 : 매년 1회 실시

### 2. 주관기관별 시험 개요

#### (1) 대학입시센터의 법학적성시험

- 1) 구성
  - 1부 : 추론과 분석력 측정, 객관식 21문항, 50점 만점, 90분

- 2부 : 독해와 표현력 측정, 객관식 45문항, 50점 만점, 90분
- 2) 응시현황 ('03) : 31,301명 지원, 28,340명 시험

<표 1> 입시센터 주최 적성시험 응시자 수의 추이, 단위 : 인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38,350	24,036	19,859	18,450	15,937	13,138	10,282

- 3) 점수
  - 총 100점 만점
  - 각 문항에 대한 가중치 없음
- 4) 평균성적 (100점 만점) : 63.07('03), 52.74 ('04), 56.45 ('05), 54.28('09)
  - : 평균성적은 첫 해를 제외하고는 55점을 전후로 한 평균점을 보이고 있다.

## (2) 법무연구재단의 법학적성시험

- 1) 구성
  - 1부 : 논리적 판단력 측정, 객관식 23문항, 40분, 100점
  - 2부 : 분석적 판단력 측정, 객관식 22문항, 40분, 100점
  - 3부 : 장문 독해력 측정, 객관식 20문항, 40분, 100점
  - 4부 : 작문시험, 표현력 측정, 주관식 2문항, 40분
- 2) 점수
  - 총 300점 만점
  - 각 문항에 대한 가중치 없음
  - 작문시험 결과에 대한 채택 여부 및 채점은 각 전문대학원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3) 시험응시자격 :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4) 응시회수 : 무제한

5) 시험결과 : 해당 학년도에만 유효

6) 응시현황 ('03) : 20,043명 지원, 18,355명 응시

<표 2> 일본의 응시 현황 (시험 응시원서제출자 수가 아닌, 응시유자격자 수)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43	12,210	9,579	11,144	10,698	8,920	7,663

7) 평균성적 (300점 만점) : 176.9('03), 186.9 ('04), 160.0 ('05), 169.4 ('06),  
147.5('07), 155.4('08), 174.3('09)

## II. 일본 적성시험 분석-법무연구재단주최 적성시험을 소재로 하여<sup>1)</sup>

### 1. 시험의 구성

법과대학원(이하, '로스쿨')입학이전의 단계에서 묻는 '적성'이란 법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법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로서의 자질, 능력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해야만 한다.

로스쿨설립 전에 재단법인 日辯連法務研究財團(이하, '재단')에서는 미국의 LSAT의 실시기관인 LSAC와의 교류를 포함하여 일본판 LSAT의 조사연구를 행하고 그 결과 능력을 적성시험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논리력, 분석력, 표현력 등 핵심적인 능력이 필요

1) 이 부분은 후지모토 아키라(藤本亮), 2008년도 법과대학원통일적성시험과 적성시험의 질의 보증, (제)일본법무연구재단뉴스레터 제40호, 4면 이하의 내용을 번역, 요약 정리한 것이다.

하다. 물론 이 외에도 인내력, 지적호기심, 리더십, 사람의 말을 공감 있게 듣는 능력, 성실 등 지적이고 인격적인 적성도 생각할 수 있다. 수험자의 적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동시에 공평한 시험제도를 실시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고 하는 법조개혁의 이념으로부터도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이 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만이 아니라 교수나 실무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 ① 논리적 판단력을 측정하는 문제는, 주어진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논리 구조를 인식하고 논리적인 추론을 행하고 바른 결론을 도출해 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② 분석적 판단력을 측정하는 문제는,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해 내는 능력의 기초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③ 장문독해력을 측정하는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문장 독해 능력의 유무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④ 표현력을 측정하는 문제는, 소위 소논문과 출제형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로스쿨 통일적성시험의 이념에 따라 출제의 목표도 통상의 소논문과는 다른 것이라 하겠다.

법과대학원통일적성시험은 이들 4가지를 각각 40분에 회답하도록 설계되어져 있다. 논리적 판단력, 분석적 판단력, 장문독해력의 각각을 측정하는 문제(제1부~제3부)는 객관식 시험이며, 각 분야 100점에 합계 300점으로 환산되어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제1부 논리적 판단력은 24문(연도에 따라 시험문제 수는 조금 다르다. 2008년은 24문)으로 구성되어있다.

제2부 분석적 판단력은 소문 5~6개로 구성되는 큰 문제 4문에 의한 합계 23문으로 된다.

제3부 장문독해력은 소문 6개로 구성되는 큰 문제 4문으로 함께 24항목이 출제된다.

표현력을 측정하는 문제(제4부)는 논술식의 시험으로 실시된다. 채점 및 그 결과의 이용은 각 로스쿨에 맡겨져 있다. 통일적성시험위원회에서는 채점을 위하여 100점 만점 환산시의 배점을 함께 제시하고 채점의 모델도 예시해 주고 있다.

## 2. 통일적성시험의 결과

### (1) 종합득점의 분포와 신뢰성

2008년도의 통일적성시험을 보면 최저점은 38점, 최고점은 262점이었다. 평균점은 155.4점, 표준편차는 33.9점이고,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좌우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겠다.

### (2) 속성별 득점평균치

성별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남자 155.6점, 여자가 154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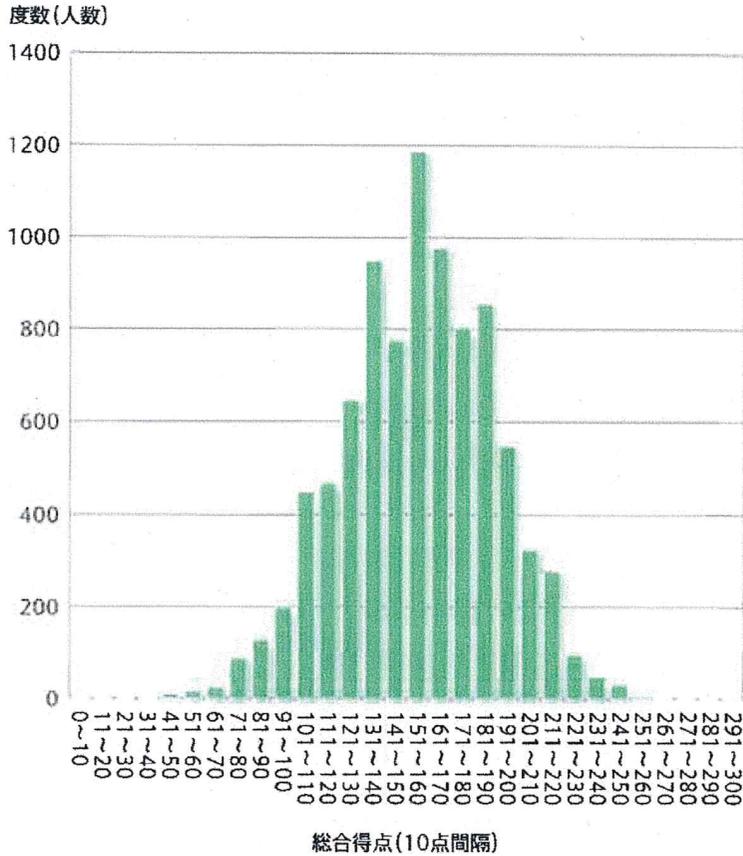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득점이 낮게 나타난다. 20대 전반이 161.6점으로 50세 이상의 114.1점까지 그 차이는 47.5점이고, 작년에 비해 5점정도 크다.

이는 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이 시험에 잘 적응하며, 연령을 고려한 선발도 그 영향이 있다고 보여 진다.

출신전공별로 보면, 법학사가 비법학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이 162.9점으로 비교적 득점 평균이 높은 편이다.

수험지역별로 보면 경도, 오사카, 호고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종합득점도수분포

객관식문제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 <표 3>이다. 각 부문 간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적성시험의 구조를 살펴본 것인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의 분야가 각각 나뉘도록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분석적 판단력이 전체 득점에 대한 영향력의 면에서 비교적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t;표 3&gt; 영역득점간의 상관관계와 共分散比

	논리적 판단력	분석적 판단력	장문 독해력	종합득점
논리적판단력	1.000	0.435	0.536	0.847
분석적판단력	0.435	1.000	0.311	0.730
장문독해력	0.536	0.311	1.000	0.782
종합득점	0.847	0.730	0.782	1.000
共分散比	0.378	0.297	0.3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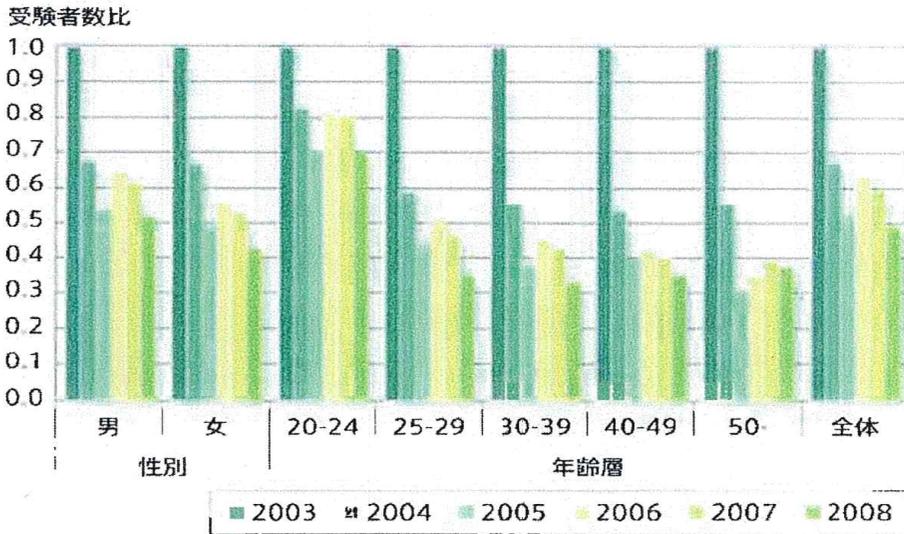
### (3) 연도별 수험생의 추이

[그림 2]는 제1회 적성시험의 수험자를 각각 1로 했을 경우의 연도별 비율이다. 로스쿨 지원자는 전체로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03년에 비교하면 2008년은 약 반으로 그 수가 줄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연령이 30대 이상의 감소비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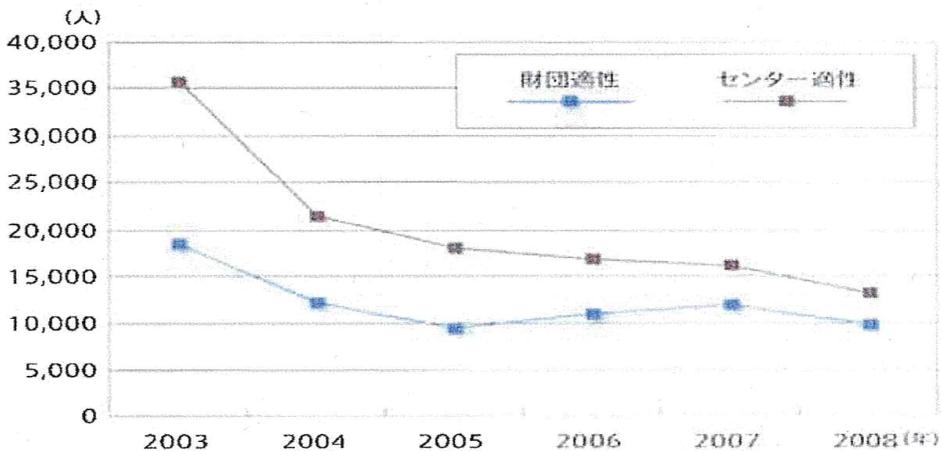
## 3. 두 적성시험의 상관표에 대해서

일본의 적성시험은 적성시험위원회주최의 ‘법과대학원통일적성시험’(이하, ‘재단적성시험’)과 독립행정법인 대학입시센터가 시행하는 ‘법과대학원적성시험’(이하, ‘센터적성시험’)이 있다. 각 대학들은 이 두 시험결과를 모두 받거나 한쪽 시험결과를 받아 이용하고 있다.

2008년 9월30일에 공표된 중앙교육심의회 대학분과회 법과대학원특별위원회의 ‘법과대학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책에 대하여(중간보고)’에 의하면, ‘적성시험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험의 사용자인 법과대학원의 관계자가 주체적으로 참가하고, 적성시험의 통일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림 2] 2003년을 기준으로 본 수험자 수의 추이



[그림 3] 적성시험지원자 수의 추이

그런데 재단적성시험은 4부분 중 3부분이 객관식으로 총 300점이고, 센터적성시험은 모두 2부분이고 총 100점으로 표시된다. 법과대학원은 득점척도조차 다른 이 두 시험을 같은 도상에 두고 평가하기 위하여 적성시험위원회는 매년 7월 하순에 두 성적의 '조건표[대응표]'를 공표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일반적으로 ‘테스트 점수의 同等화(equating)’이라고 부르고 있다. 적성시험위원회는 두 시험을 모두 응시하는 모니터 집단(2008년의 경우 1,412명)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 조건표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조건 내지는 대응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는 ‘동등화’라는 표현 보다는 ‘대응표’라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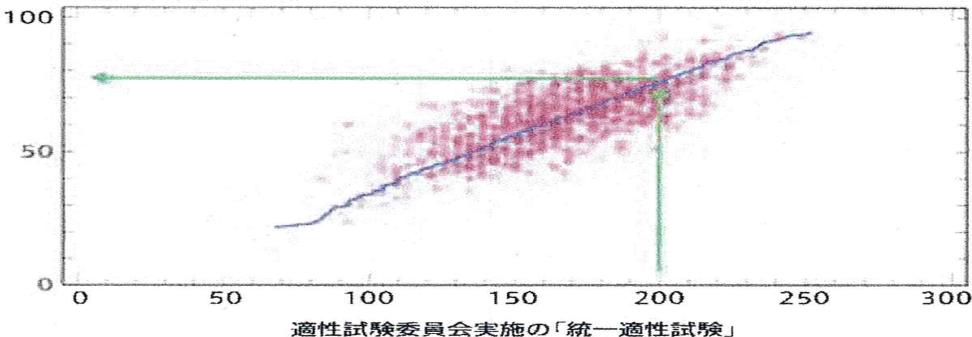
두 시험이 모두 ‘적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동일한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같은 수험생이라도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 시험 결과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시험의 상관계수는 0.716으로 아주 높은 편으로, 양자를 서로 대응시킬 수는 있다고 보여 진다. 두 시험의 상관계수는 과거의 실시연도를 통해서 안정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대응표가 만들어지고 그 일부를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2003년 대응표의 일부

재단점수	DNC 점수	재단점수	DNC 점수
170	64.6	220	84.2
169	64.0	219	83.8
168	63.4	218	83.6
167	63.2	217	83.6
166	63.1	216	83.0

大学入試センター実施の「適性試験」



[그림 4] 2008년도 대응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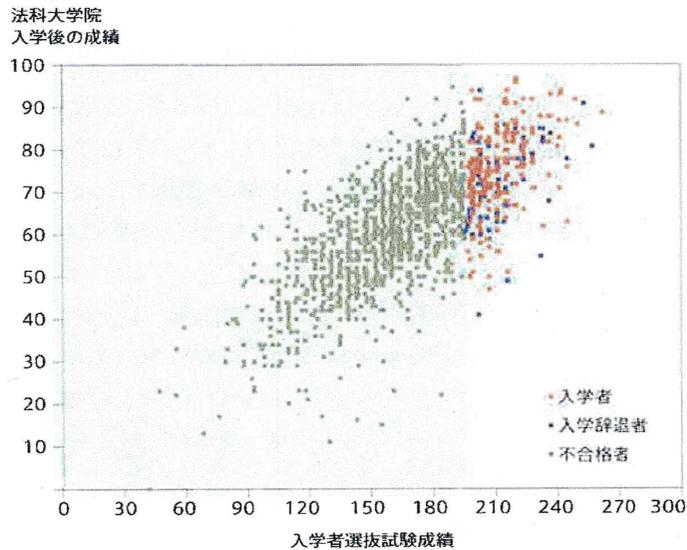
#### 4. 적성시험의 예언적 타당성의 검증에 대해서

각 로스쿨은 적성시험의 특징이 법조양성과정에서의 해당 학생의 활동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심이 주어질 것이다. 이를 테스트이론에서는 '예언적 타당성'이라 한다.

현재 적성시험위원회에서는 이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하에서는 몇 가지 논점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개별 로스쿨에서는 자교의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입학 후의 성적과 적성시험 성적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여 입학시험에 적성시험의 배점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예언적 타당성의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선발시험의 성적과 선발 후의 대학원 성적 및 신사법시험의 합격여부와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입학자선발은 적성시험만이 아니라 개별로스쿨의 독자의 선발방법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체적인 두 유형을 보면 [그림 6]과 같다. 즉 기수자, 미수자 코스를 처음부터 나누는 유형과 나누지 않고 마지막 단계에서 기수자 코스를 인정해주는 유형이 있다. 적성시험이 선발과정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입학자 선발제도 자체의 예언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중에, 적성시험자체의 예언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본의 대학교육에 있어서 입학자선발제도 자체의 예언적 타당성은 중요시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제부터 검증모델의 개선은 일본의 대학, 대학원 입학자 선발제도 자체에 미치는 커다란 과제라고 하겠다.

두 번째는 선발효과의 문제이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성시험을 포함한 입학시험 특징에 대해서는 지원자 전원의 성적이 포함되지만, 1년차 성적은 입학자만의 데이터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타당성을 검증할 때에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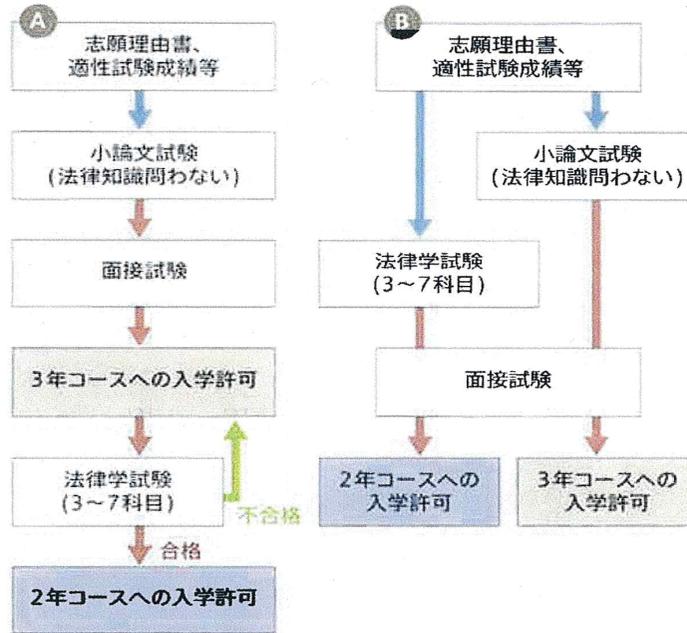


[그림 5] 선발효과의 이미지

## 5. 통일적성시험의 질적 보증을 위해서

재단적성시험의 질적 보증을 위해 적성시험위원회와는 별도로 독립된 분석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이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가능한 한 공표하고 있다. 그리고 시험 실시 전 1월과 실시 후 7월에 각 법과대학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을에는 실시보고서도 내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출제 위원들과의 합동회의를 통해 환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험의 질은 예언적 타당성만으로는 검증되는 것은 아니다. 로스쿨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기술 등 적성시험에서 측정되는 능력과의 대응관계 등, 예언적 타당성과는 별도의 측면인 내용적 타당성의 관점에서도 질적 개선의 검토가 행해져야 한다.



[그림 6] 일본의 로스쿨입학자 선발의 흐름(典型例)

### Ⅲ. 일본 법과대학원입학자 선발 적성시험에 대해서<sup>1)</sup>

#### 1. 적성시험이 실시되기까지의 경위<sup>2)</sup>

필자는 2000년 12월 동경대학 명예교수인 신도 코지(Professor Koji Shindo, Professor Emeritus, the University of Tokyo)선생님으로부터 장래 설치될 것

1) 柏木 昇(Kashiwagi Noboru), 법학적성시험의 출제와 시행의 바람직한 방향 - 일본의 경험으로부터의 참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2009년 심포지엄 자료집(법학적성시험의 점검과 개선방안), 31면 이하의 내용을 발췌하였다.

2) 이 부분은 일본에서 적성시험이 실시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한 것이다. 실감 있는 과정의 소개를 위하여 카시와기 교수님의 글을 그대로 번역하였다. 전계 심포지엄의 자료집에도 게재되어 있는 내용이다.

으로 예상되는 법과대학원의 입학시험제도의 연구회에 참가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일본에서도 새로운 법과대학원이 생기게 되면 미국의 로스쿨과 같이 법조로서의 적성을 보기 위한 시험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연구를 개시한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다음 해인 2001년 1월부터 3개월간 하버드 로스쿨에서 일본상거래법을 강의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기회에 미국의 적성시험(Law School Admission Test : LSAT)을 포함한 미국의 로스쿨 입시 제도를 조사하는 일을 약속했다.

미국에서는 하버드 로스쿨, 콜롬비아 로스쿨, 미시간 로스쿨, NYU 로스쿨을 방문하고, 입시사무국(Admission Office)의 여러 분들(directors)과 면담을 하여 입시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더욱이 LSAT 실시 단체인 Law School Admission Council을 방문하여 오늘 심포지엄에 참가하고 계신 James Vaselect 선생님께서 LSAT에 관한 상세한 말을 들었다. LSAT에 대해서는 Vaselect 선생님께서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필자가 당시 강렬하게 느낀 점은 미국의 LSAT와 같은 精度가 높은 적성시험(Aptitude Test)을 일본에서 단기간에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결론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LSAT는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그 반세기 동안에, 문제와 로스쿨 1년차 성적과의 상관관계 그 밖의 방대한 통계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LSAT의 문제를 로스쿨 1년차의 성적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문제로 점차 바꾸어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LSAT와 그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오히려 LSAC에서는 그 상관관계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로스쿨 관계자가 LSAT의 결과에 너무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닌가하고 염려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정은 긴 역사만이 아니라, 연간 10만인 이상에 의한

LSAT 수험자 수와 년 4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는 횟수의 많음에 의해서도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LSAC에서는 매년 새로운 문제를 LSAT에 사용한다. 이 새로운 문제는 어디까지나 실험을 위한 문제로서 채점은 하지만, 종합득점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험생에 의한 그 문제의 점수와 그 수험생의 로스쿨 1년차의 성적과의 상관관계가 조사되어, 상관관계가 높은 문제가 시험문제은행(inventory)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수년 후의 LSAT의 정식문제로서 이용되어 진다. 그 문제은행에는 수천의 문제가 축적되어져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LSAT의 오랜 역사와 LSAC의 끊임없는 개선노력의 결과, 신뢰성이 아주 높은 현재의 LSAT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에 비해서 일본에서는, 당시로서는 이제부터 더듬어가면서라도 적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였고, 참고로 할 만한 자료도 전무한 상태였다. 실험조사를 할 여유가 없는 일본에서는 처음부터 미국의 LSAT와 같은 신뢰성이 높은 문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절망한 저는 Vaselect 선생님에게 LSAC가 가지고 있는 문제은행의 일부를 살 수는 없을까 하고 문의해 보았다. 답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LSAC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스페인어로 번역을 하여 시험을 친 경험이 있는데, 결과는 미국에서의 결과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이었다.

LSAT의 문제의 성능은 언어에 상당부분 좌우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영어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 문서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일본에서 실시해도 높은 성능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답이었다. 아마도 기본적으로는 보통법 국가인가 혹은 대륙법계 국가인가 라고 하는 차이도 미국의 LSAT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精度를 낮게 하는 한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LSAT의 문제은행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일본에서 실시해도 그 신뢰성은 크게 저하 될 것이라고 예측되어졌다. 그 결과 필자로서는, 일

본에서도 비록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일본 독자적인 법과대학원의 적성시험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각오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법무연구재단의 출제위원회에서는 LSAT의 문제를 참고로 하면서 독자의 문제를 작성하고 있다. 법무연구재단의 출제는 논리적 판단력 섹션, 분석적 판단력 섹션, 장문독해력 섹션의 3종류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현력 섹션은 평가를 각 법과대학원에 맡기고 있으며 적성시험의 총득점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일본변호사연합회(日弁連 : 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의 하부조직으로서 법무연구재단(Japan Law Foundation)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법조의 지속적인 교육이나 법조와 관련한 조사연구를 하고 있다. 이 법무연구재단이 법과대학원의 입시에 관하여 연구한다고 하여, 그 연구회에 참가하여 미국에서 얻은 지식을 보고하였다. 그 보고서가 일본변호사연합회 법무연구재단 편, 법과대학원 입시의 올바른 상, JFL 叢書Vol2, 상사법무연구회(2001)이다. 법무연구재단으로서는 일본의 법과대학원을 위한 적성시험의 실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다. 필자도 그 연구회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2001년 6월 12일에 사법제도개혁심의회(Recommendations of the Justice Reform Council)가 발표되고, 법과대학원 설립이 명확하게 되었다. 동년, 가을에 필자는 문부과학성(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 Science and Technology)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필자는 문부과학성의 ‘법과대학원 입시검토위원회’(정식명칭은 아님)의 좌장이 되었다. 문부과학성도 독립행정법인 대학입시센터(National Center for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s : 이하, ‘센터’라고 함)를 적성시험실시주체로 하여 적성시험을 실시할 의향이였다. 센터는 2002년 8월부터 정식으로 조사연구를 시작하였다. 이후 일본에서는 센터에 의한 적성시험과 법무연구재단에 의한 적성시험이라는 두 체제의 적성시험이 행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센터는 그 정관의 목적사항에 법과대학원의 적성시험의 실시라고 하는 항목이 없고, 시험방법개선을 위한 조사와 연구라고 하

는 목적의 범위에서 적성시험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조사·연구]라고 하는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법과대학원의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곤란하여, 2010년을 마지막으로 법과대학원의 적성시험 실시 주체로 되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리고 문부과학성의 ‘법과대학원 입시검토위원회’는 ‘법과대학원협회준비회의 입시·적성시험위원회’로 이어져 필자가 그 회의 좌장이 되었지만, 2003년 3월경 이를 사임하고 이후에는 센터에 의한 적성시험 및 법과대학원협회에 의한 적성시험 관계의 활동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

법과대학원협회의 2009년 3월의 뉴스레터에 의하면 “담당자인 永田眞三郎 전무로부터, 대학입시센터가 적성시험 실시를 그만 둔 뒤의 실시주체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작년 12월의 이사회, 총회 이후 당협회와 일변련 법무연구재단과의 사이에, 3회의 모임이 있었고 2011년 이후에 실시하는 적성시험에 대해서는 법과대학원·법조3자·학식경험자·일변련 법무연구재단·사단법인 상사법무연구회를 모체로 하는 [적성시험실시위원회(가칭)]를 설립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결정함과 함께 실시사무국을 두고, 적성시험의 실시를 준비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예비테스트를 실시할 예정 등이 설명되었다”라는 것이다.

법무연구재단에 의한 적성시험의 연구와 실시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적성시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관여하고 있다. 법무연구재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특히 LSAC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법무연구재단에서는 LSAC의 직원을 초대하여 동경에서 수회에 걸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법무연구재단의 적성시험연구의 젊은 직원들과 함께 LSAC를 방문하여 LSAC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미국의 LSAT는 반세기 이상의 경험과 연구의 축적이 있어, LSAC의 조언은 아주 귀중한 것이었다. 그리고 LSAC도 법무연구재단에 대해서 상당히 친절하게 협력을 해주어서 깊이 감사하고 있다.

## 2. 일본 법과대학원입학적성시험의 문제

### (1) 두 체제하의 시험 실시

법무연구재단에 의한 적성시험과 센터에 의한 적성시험의 두 체제에 의한 시험이 상호 어떠한 합리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양자의 적성시험 통일화는 몇 차례 시도되었지만 실패하였다. 그러나 센터에 의한 조사·연구 목적의 적성시험 실시도 한계를 맞이하여, 전술한 법과대학원협회의 뉴스레터에 보고되어 있는 것처럼, 2010년에는 통일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법무연구재단의 적성시험과 센터의 적성시험의 양쪽을 응시하는 수험생의 상당수에 의뢰하여, 정보를 제공받아 쌍방의 시험결과의 대응조건표를 발표하고 있다. 즉, 법무연구재단의 총득점 170점은 센터 시험의 총득점 64.6에 상당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점수대응 조건표'이다. 각 법과대학원은 이표를 이용하면서 수험자의 어느 한 쪽의 적성시험을 비교해서 입시성적의 정보로 이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처음부터 적성시험실시주체가 두 주체로 나누어져 인적자원도 분산되어져 에너지를 낭비해 버렸다. 2010년 이후는 단일화가 되어 적성시험문제의 개선도 진행되리라 기대되어진다.

### (2) 신뢰성 향상의 문제

미국에서는 수험자에 의한 각 문제의 회답과 로스쿨 1년차의 성적과의 상관관계의 정보가 50년 이상에 걸쳐 분석되고 연구되어져 이것이 LSAT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원인으로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일본판적성시험의 역사가 짧은 것과 함께 일본판 법과대학원적성시험은 법무연구재단에 의한 것도 센터에 의한 것도 모두 신뢰성이 상당히 낮다.

그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문제별 성적과 법과대학원의 성적과의 상관관계

의 기초가 되는 성적의 정보가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라는 것 때문에, 법과대학원이 조사에 그다지 협력적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센터, 법과대학원협회 그리고 법무연구재단의 노력으로 16개의 법과대학원의 협력을 얻을 수 있게 되어, 법과대학원 성적과의 상관관계의 조사가 개시되어졌다. 그러나 협력교의 수가 적어 의미 있는 정보 수집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그 결과는 공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조사는 1번 밖에 행해지지 않았다. 다음은 언제 행해질지 불명확하다. 더욱이 개별문제와 법과대학원성적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다. 섹션별 상관관계는 취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형식이 법과대학원의 성적과 상관관계가 높은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 적성시험의 문제를 상관관계가 높은 문제패턴으로 집약해서 적성시험 전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적성시험의 총득점과 법과대학원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더라도 문제의 개선에는 참고가 되지 않는다. 상관관계의 조사대상은 법과대학원의 성적 외에, 사법시험 성적과의 상관관계도 고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법조로서의 능력의 일부를 보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교실에서 교육하는 커뮤니케이션능력, 법조로서의 가치관(value)이나 윤리의 교육효과 등을 측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실상은, 일본의 법과대학원에서는 사법시험합격률을 높이는 것에 정신이 없는 법과대학원이 늘어나고 있어, 사법시험합격률을 높이기 위하여 적성시험이 이용되어지게 되면 여러 문제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통계를 가지고 적성시험의 문제를 개량하는 것은 적성시험의 신뢰성을 높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이 방면에 대한 연구의 진행이 상당히 늦다고 하겠다.

일본의 법과대학원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적성시험제도도 그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법과대학원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자의 향후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IV. 일본의 기출 적성시험의 문제의 예와 해설<sup>3)</sup>

### 1. 논리적 판단력을 측정하는 문제

[2008년 출제문제]

[문1] 다음 1~5에서 다음 문장의 반론으로서 적절한 것을 하나 고르시오.

근대 일본에서도 재배되었던 유기재배나 무농약 재배의 농산물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보다 안전하다.

1. 유기농산물과 화학비료의 사용에 제한이 없는 농산물 등에 대해서 대장균에 어느 정도 오염되어져 있는 가를 조사한 바, 전자는 후자의 6배나 오염율이 높다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어 안전하지는 않다.
2. 20~30년 전은 잘 모르겠으나 근년은 많은 엄격한 독성시험을 통과한 것만이 농약으로써 인정되어지고 있어 농약의 안전성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
3. 유기농약은 고온다습한 일본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농법이고 생산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4. 작물은 병해충으로부터 생태를 방어하기 위하여 체내에서 소위 천연농약을 만들고 있어, 농약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인체에 대한 위험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5. 유기농작물은 곰팡이 독에 오염되어져 있을 위험성이 높고, 외견으로는 곰팡이 독에 오염되어져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문제의 의도** :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인 반론으로서 부적절한 것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가를 시험하는 문제이다.

3) 법무연구재단의 문제를 일부분 발췌하여 법무연구재단에서 발간한 자료집에 게재된 해설부분과 함께 일부분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3(난이도 1)4).**

3외는 유기농산물이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보다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반론이지만, 3은 유기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반론이다.

**[문2]** P주식회사가 실험 대회를 열었다. 그 대회에 전국으로부터 10팀이 응모하고, 실험보고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보고서를 P주식회사가 하기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하고 심사기준별로 각 팀의 순위를 매긴 후 종합순위를 내었다. 다만, 심사기준별 순위에 대해서는 두 개의 팀이 동일 순위로 될 수도 있다.

**[심사기준]**

표현성 과학현상이나 자연현상을 폭 넓은 대상으로 하여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는가?

오락성 즐길 수 있는 실험인가?

관련성 P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았던 사용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독자성 실험의 주제, 내용이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가?

新規성 새로운 지식이 나타나 있는가?

**[선고결과]**

종합1위 : A대학 공학부, 주제 ‘폭발 달걀을 만들자’

표현성, 오락성, 관련성에서 1위, 신규성, 독자성에서 2위였다.

종합2위 : B고교 과학부, 주제 ‘식물로 유리를 만들자’

오락성, 관련성, 신규성에서 1위, 표현성, 독자성에서 2위였다.

4) 난이도 1 : 정답률 70%이상, 난이도 2 : 50%이상~70%미만, 난이도 3 : 30%이상~50%미만, 난이도 4 : 30% 미만

종합3위 : C대학 이학부, 주제 '100℃에서도 끓지 않는 물'

오락성, 관련성, 독자성에서 1위, 표현성, 신규성에서 2위였다.

1~5 중에서 심사기준의 배점의 비중에 대해서 선고결과로부터 판단가능 한 것으로 옳은 것을 하나 고르시오.

1. 독자성, 신규성, 표현성에서는 독자성이 가장 배점이 높고, 다음에 신규성, 표현성의 순이다.
2. 오락성, 관련성, 신규성에서는 오락성이 가장 배점이 높고, 다음에 관련성, 신규성의 순이다.
3. 표현성, 독자성, 신규성에서는 표현성이 가장 배점이 높고, 다음에 독자성, 신규성의 순이다.
4. 표현성, 신규성, 독자성에서는 표현성이 가장 배점이 높고, 다음에 신규성, 독자성의 순이다.
5. 신규성, 독자성, 표현성에서는 신규성이 가장 배점이 높고, 다음에 독자성, 표현성의 순이다.

(문제의 의도) 어느 콘테스트의 복수의 심사기준에 근거한 심사결과를 소재로 하여, 복수의 전제사실로부터 심사기준의 배점의 비중 순위를 논리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 가를 시험하는 문제이다.

**[정답 및 해설] 4 (난이도1).**

1위와 2위의 선고결과를 비교하면 심사기준의 배점의 비중은 표현성>신규성>독자성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심사기준에 있어서는 제시문의 선고결과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이 보다도 예시문 1, 2, 5에 대해서는 선고결과로부터 판단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예시문 3, 4 중에서, 표현성>신규성>독자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시문 4뿐이다. 따라서 정답은 4이다.

## [2007년 기출문제]

[문제1] 1~5중, 다음의 조사에 있어서의 연구자의 결론과 정합하는 제1그룹과 제2그룹의 조사통계로서 가장 적합한 것을 1개 고르시오.  
조사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주어졌다.

[X국에서 전인구 중 600인이 사망한다고 예상되는 이상한 질병이 새롭게 발견되어졌다. 정부는 현재 이 질병의 대유행에 대한 처치를 준비하고, 2개의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 당신이 전문가로서 정부로부터 자문요청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느 쪽에 찬성한다고 답하겠는가?]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1,000인을 랜덤으로 2그룹으로 나누었다.

제1그룹에는 다음의 선택지가 주어졌다.

선택지1 : 대책A가 실시된 경우, 600인 중 200인이 구조된다.

선택지2 : 대책B가 실시된 경우 3분의 1의 확률로 전원이 구조되고, 3분의2의 확률로 전원이 사망한다.

제2그룹에서는 같은 질문에 다음의 선택지가 주어졌다.

선택지1 : 대책A가 실시된 경우, 600인 중 400인이 사망한다.

선택지2 : 대책B가 실시된 경우, 3분의 1의 확률로 전원이 구조되고, 3분의 2의 확률로 전원이 사망한다.

이 연구의 조사통계로부터 어느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결론 : 선택지의 표현의 방법이나 제시의 구조가 구조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익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인간에게는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선택을 택하는 경향이 있는 한편, 잃어버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손해의 형태로 제시된 경우에는 인간에게는 확실성이 높은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

1. 제1그룹으로부터의 결과에 의하면, 35%가 대책A에 찬성하고, 제2그룹으로부터의 결과에 의하면, 65%가 대책B를 선택하였다.
2. 제1그룹으로부터의 결과에 의하면, 25%가 대책B에 찬성하고, 제2그룹으로부터의 결과에 의하면, 25%가 대책B를 선택하였다.
3. 제1그룹으로부터의 결과에 의하면, 25%가 대책A에 찬성하고, 제2그룹으로부터의 결과에 의하면, 25%가 대책A를 선택하였다.
4. 제1그룹으로부터의 결과에 의하면, 65%가 대책A에 찬성하고, 제2그룹으로부터의 결과에 의하면, 35%가 대책A를 선택하였다.
5. 제1그룹으로부터의 결과에 의하면, 20%가 대책A에 찬성하고, 제2그룹으로부터의 결과에 의하면, 80%가 대책A를 선택하였다.

(문제의 의도) : 노벨 경제학 수상자의 주지의 성과를 역으로 서술한 것으로, 역으로 데이터를 추론시키는 문제로 착실한 통계적 발상이 요구된다.

### [정답] 5(난이도 3)

[문제2] 다음 1~5 중에서 A와 B의 관계가 다른 것과 다른 것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1. A : 화자씨는 요리를 아주 잘하고 아주 좋아하네요.  
B : 그것은 당연하죠. 화자씨는 요리연구가이기 때문이죠.
2. A : 미향씨는 노래를 아주 잘하시네요.  
B : 당연하죠. 미향씨는 프로가수거든요.
3. A : 태랑씨는 문장이 아주 훌륭하네요.  
B : 그것은 당연하죠. 태랑씨는 소설가이거든요.
4. A : 정야씨는 운동신경이 아주 뛰어나네요.  
B : 뭐라 하더라도 정야씨는 체조 선수잖아요.

5. A : 유자씨는 영어가 뛰어나네요.

B : 유자씨는 어머니가 영국인이잖아요.

(문제의 의도) : 주장의 논리구조를 빨리 파악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예시문 1~4는 모두 B가 말한 내용이, A가 말한 내용의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의 인과관계는 역으로 인식론적인 증거는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논리학적 이해의 유무를 보는 문제이기도 하다.

### [정답 및 해설] 5(난이도 1)

예시문 1~4는 모두 B가 말한 내용이, A가 말한 내용의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의 인과관계는 반대로 인식론적인 증거는 원인은 아니라고 하는 논리학적 이해에 반하고 있다. 유일하게 예시 5만이 옳은 인과관계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다른 것과 다른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 2. 분석적 판단력을 측정하는 문제

### [2008년 문제]

[문제2] 어느 초등학교에서 40인을 대상으로 소 테스트를 실시했다. 각각 8점 만점의 소 테스트였다. 그 시험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어느 쪽 교과어세도 2점 이하는 불합격으로 추가시험을 치게 된다. 국어와 수학의 적어도 어느 하나의 교과에서 추가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는 학생을 추가시험학생라고 하자. 단, 표 중의 기호 A부터 E는 그 득점에 해당하는 인수를 표하는 숫자이다.

	2점 이하	3점	4점	5점	6점 이상
2점 이하	(A)인	1인	0인	(B)인	0인
3점	2인	(C)인	7인	1인	1인
4점	1인	3인	(D)인	1인	0인
5점	0인	2인	1인	(E)인	0인
6점 이상	0인	2인	0인	0인	1인

조건1 : 추기시험학생은 8인이다.

조건2 : 일랑군, 이랑군, 미츠코는 국어와 수학 모두 불합격으로 되었다.

조건3 : 국어와 수학이 모두 불합격으로 된 학생의 수학의 득점은 모두 다르다.

조건4 : 국어가 불합격이 된 학생의 수학의 합계점수와, 수학을 불합격으로 한 학생의 국어의 합계점수는 같다.

조건5 :  $C \leq D \leq E$

**(1) B에 해당하는 수는?**

1. 0
2. 1
3. 2
4. 3
5. 4

**(2) 수학이 불합격이 된 학생의 국어의 합계점수는 얼마인가?**

1. 7점
2. 9점
3. 11점
4. 13점
5. 15점

(3) 이하에서, 수학이 불합격이 된 학생의 국어의 득점에 대해서 성립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1. 0점의 학생이 있다.
2. 1점의 학생이 있다.
3. 2점의 학생이 있다.
4. 3점 이상의 학생이 있다.
5. 득점이 같은 학생이 있다.

(4) 이하에서 성립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1.  $E=5$
2.  $C=0$
3.  $D=E$
4.  $D=4$
5.  $C=5$

(5) 이하에서, 추가시험학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하나 고르시오.

1. 국어의 합계점수와 수학의 합계점수는 반드시 같다.
2. 국어의 합계점수는 반드시 수학의 합계점수 보다 높다.
3. 수학의 합계점수는 반드시 국어의 합계점수 보다 높다.
4. 국어의 합계점수와 수학의 합계점수와의 차이는 반드시 6점 이하이다.
5. 국어의 합계점수와 수학의 합계점수와의 차이가 7점 이상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6) 이하에서, 추가시험학생이외의 학생에 대해서 옳은 것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1. 국어의 합계점수와 수학의 합계점수는 반드시 같다.
2. 국어의 합계점수는 반드시 수학의 합계점수 보다 높다.

3. 수학의 합계점수는 반드시 국어의 합계점수 보다 높다.
4. 국어의 합계점수와 수학의 합계점수의 차이는 반드시 6점 이하이다.
5. 국어의 합계점수와 수학의 합계점수의 차이가 7점 이상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문제의 의도)** : 이 문제는 2원 배치의 도수분포표에 관한 것으로, 부분적으로 주어진 수치와 몇 가지의 조건으로부터 반드시 성립하는 사실을 바르게 도출해 낼 수 있는지 아닌지를 묻는 문제이다.

### [정답 및 해설]

#### (1)2. (난이도2)

조건 2보다  $A \geq 3$ 이다. 그리고 조건 3보다  $A \leq 3$ 이다. 따라서  $A=3$ 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조건 1보다 추가시험 학생은 8인 이기 때문에,  $B=1$ 로 된다. 따라서 2가 정답이다.

#### (2)4. (난이도2)

조건 4로부터 국어가 불합격이 된 학생의 수학의 합계점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소문(1)의 결과로부터  $A=3$ 이고, 조건 3으로부터 국어와 수학의 양 쪽 모두 불합격이 된 학생의 수학의 득점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구하는 합계점수는,  $0점 \times 1인 + 1점 \times 1인 + 2점 \times 1인 + 3점 \times 2인 + 4점 \times 1인 = 13점$ 이기 때문에 답은 4이다.

#### (3)1. (난이도3)

소문(2)의 결과와  $B=1$ 로부터, 국어와 수학의 양쪽에서 모두 불합격으로 된 3인의 학생의 국어 득점의 합계점수는  $13-3-5=5점$ 이다. 그리고  $A=3$ 으로부터 5점을 3인으로, 각 2점 이하로 되는 것처럼, 분배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1+2+2라고 하는 불합 밖에는 없다. 따라서 예시문 2, 3, 5는 답이 아니다. 한편 표로부터 3점과 5점의 학생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시문 4도 정답이 아니다.

**(4)5. (난이도2)**

반 전체가 40인이고, 그리고  $A=3, B=1$ 이기 때문에 C, D, E 이외의 표 중의 수치의 합은 27이다. 따라서  $C+D+E=40-27=13$ 이다. 조건 5로부터  $3C=C+C+C \leq C+D+E=13$  따라서  $C \leq 13/3=4.33\dots$ 이다. 그리고 예시문 5외는 모두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예시문 5가 정답이다.

**(5)4. (난이도4)**

조건 4와 소문 (2)로부터 추가학생의 국어의 득점의 합계점수는 13점과 수학을 추가시험으로 하지 않은 추가시험학생 3인의 국어의 득점(각 자는 0점 이상 2점 이하)의 합계점수를 더한 것이다. 따라서 13점 이상 19점 이하이다. 한편, 똑같이 국어를 추가시험보지 않은 추가시험학생은 2인 이기 때문에 추가시험학생의 수학의 득점합계는 13점 이상 17점 이하이다. 따라서 국어가 수학보다 우위일 수 있는 것은 최대  $19-13=6$ 점이고, 수학이 국어를 상회할 수 있는 것은 최대  $17-13=4$ 점이다. 따라서 4가 맞다.

**(6)5. (난이도4)**

C, D, E의 수치는 수학의 합계점수와 국어의 합계점수와의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이외의 학생들만으로 생각하면 된다. 어느 쪽의 교과에 있어서도 7점 이상의 학생이 없으면 수학의 점수의 합계는 76점, 국어의 점수 합계는 75점이다. 수학의 총득점 76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수학의 득점이 6점 이상의 3인 뿐이다. 그 각자의 득점은 6점 이상 8점 이하이기 때문에 수학의 총득점을 최대  $2\text{점} \times 3\text{인} = 6\text{점}$  증가시킬 수 있어, 최대치수는  $76+6=82$

점으로 된다. 한편 국어의 총득점75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국어의 득점이 6점 이상의 2인이고, 최대  $2\text{점}\times 2\text{인}=4\text{점}$  증가되기 때문에, 최대 점수는  $75+4=79\text{점}$ 으로 된다. 따라서 수학과 국어를 상회하는 것은 최대  $82-75=7\text{점}$ 이고, 국어가 수학을 상회하는 것은 최대  $79-76=3\text{점}$ 이다. 따라서 답은 5이다.

### [2007년 문제]

**[문제1]** A, B, C, D의 4인의 중년남성이 각각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해서 자신들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각인은 각각 3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고, 같은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자도 있다. 그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을 전부 모아서 보니, 7종류의 서로 다른 약이었다. 그리고 전원이 공통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은 없지만, B, C, D의 3인이 공통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은 2종류였다.

**(1) 이하에서 이제까지의 정보만으로써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1. 각각 1사람만이 복용하고 있는 약은 4종류이다.
2. 2사람 이상이 공통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은 3종류이다.
3. 2사람만이 공통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은 1종류뿐이다.
4. 3인 이상이 공통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은 3종류 이상이다.
5. 3인 이상이 공통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은 2종류이다.

**(2) 이하에서 위의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1. B, C, D 중에서 한 사람만이 복용하고 있는 약은 1종류뿐이다.
2. B, C, D 중에서 한 사람만이 복용하고 있는 약은 2종류이다.
3. B, C, D 중의 누군가와 A가 공통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
4. A가 복용하고 있는 약은 B, C, D는 복용하고 있지 않다.
5. A만이 복용하고 있는 약은 2종류 이상이다.

이 4인 들이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더욱이 같은 효용의 다른 종류의 약은 없는 것으로 한다.

A : 나는 통풍이기 때문에 요산치수를 낮추는 약을 먹고 있어요.

D : 실은 나도 그래요.

A : 너무나도 슬픈 것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치수도 높은 편이에요. 그러나 의사가 말하기를, 중성지방을 낮추는 약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동시에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해서 저는 중성지방을 낮추는 약을 먹고 있어요.

B : 아, 저도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치수가 높아서 약을 먹고 있지만, 어느 쪽의 약을 먹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C : 저도 그래요. 어느 쪽의 치수를 낮추는 약을 먹고 있는 것이겠죠.

**(3) 이하에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1. A만이 복용하고 있는 약은 1종류이다.
2. B만이 복용하고 있는 약은 1종류이다.
3. B만이 복용하고 있는 약은 2종류 이상이다.
4. D만이 복용하고 있는 약은 1종류이다.
5. D만이 복용하고 있는 약은 2종류 이상이다.

**(4) 이하에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1. A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
2. B는 요산수치를 낮추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
3. B는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추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
4. C는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추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
5. D는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

더욱이 다음과 같은 대화가 계속되었다.

D : 생각을 해보니, 약을 과용하면 위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저는 위약도 먹고 있어요.

C : 저도 그래요. 어, A씨가 먹고 있는 이 약은 혈당치를 낮추는 약이네요?

A : 예, 그래요.

D : 이것과 이것은, 혈압과 간장을 위한 약이네요.

C : 그 간장약을 먹고 있는 사람은 저예요.

**(5) 이하에서, 단언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1. A는 혈당치를 낮추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
2. B는 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다.
3. B는 위약을 복용하고 있다.
4. C는 혈당치를 낮추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
5. D는 요산수치를 낮추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

**(6) 지금까지의 정보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래에서 옳은 것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1. 누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를 모두 알 수 있다.
2. A와 B와 C가 무슨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는 확정할 수 있지만, D가 무슨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3. A와 B가 무슨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는 확정할 수 있지만, C와 D가 무슨 약을 복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4. A가 무슨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는 확정할 수 있지만, B와 C와 D가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5. 무슨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확정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문제의 의도) : 일상적인 회화표현으로부터 사실을 추출하고, 언어의 인상만으로 추론을 하는 것을 피하고, 표 등을 이용해서 논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불확실한 요소를 고려해서 사실관계를 표로 정리하고, 그 표가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읽고 해석할 수 있다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 [정답 및 해설]

### (1)4. (난이도2)

문제의 조건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우선 B, C, D의 3인이 공통으로 먹고 있는 약(정확히 2종류이다)를 약6, 약7이라고 하자. 전원이 공통으로 먹고 있는 약은 없기 때문에 A는 약6과 약7 중 어느 쪽도 복용하고 있지 않다.

거기에서 A가 복용하는 3종류의 약을 1, 2, 3이라고 하자. 그러면 A는 약4와 약5를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B, C, D의 누군가는 각각을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그 양 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4종류의 약을 먹고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에는 맞지 않다. 따라서 약4와 약5를 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표1에서는 그 2인은 2열째와 3열째에 대응하고, 이 시점에서는 그것이 B, C, D의 누군지는 확정되지 않는다.

만약 4열째에 해당하는 사람이 A와 공통의 약을 먹고 있는 경우는 그 약을 약3이라고 하자. 이처럼 4열째에 대응하는 사람이 약4 또는 약5를 먹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약4로 한다. 이 전제에서 각 각의 사람이 복용하고 있는 약에는 ○, 복용하고 있지 않는 약에는 ×를 표시하면 [표1]이 완성한다.

[표 1]

	A	B	C	D
약1	○	×	×	×
약2	○	×	×	×
약3	○	×	×	○
약4	×	×	○	
약5	×	○	×	×
약6	×	○	○	○
약7	×	○	○	○

이 시점에서는 4열째의 사람이 먹고 있는 제3의 약은 약3인지, 약4인지는 모른다.

각각 한 사람만이 복용하고 있는 약은 약1, 2, 5와 4의 어느 쪽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약의 모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정확히 4종류가 있다는 것은 확정된다. 따라서 예시문1은 단정가능 하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다.

2이상이 공통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은 약6, 7과 약3, 4의 어느 쪽이다. 즉 그와 같은 약은 딱 3종류가 있기 때문에 예시 2는 단정할 수 있다. 따라서 예시 2도 답이 아니다.

2사람만이 공통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은 약3이나 약4의 어느 쪽이다. 따라서 예시 3은 단정가능하고 역시 답이 아니다.

3사람 이상이 공통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은 약6과 약7 밖에 없기 때문에, 예시5가 단정가능하고, 예시4는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예시4는 답이고 예시5는 답이 아니다.

## (2)5. (난이도3)

상기 표1을 보면 다음을 알 수 있다. B, C, D 중에서 한 사람 만이 먹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약5이다. 이 시점에서는 4열째의 사람이 약4를 먹

는지 아닌지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시1과 예시2는 단정할 수 없다. 이처럼 4열째의 사람이 약3을 먹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시3도 예시 4도 단정할 수 없다.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예시 5이다.

### (3)2. (난이도2)

최초의 A와 D의 말로부터 4열째의 사람이 D이고 A는 공통으로 요수치를 낮추는 약을 먹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약은 약3이다. 더욱이 다음 A의 말로부터 A는 중성지방을 복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약1이라고 해도 좋다. 그리고 B와 C는 A와 공통의 약을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B와 C의 말로부터 그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을 먹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약6이라고 해도 좋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를 보면 A만이 복용하고 있는 약은 약1과 약2의 2종류이다. 따라서 예시 1에서는 단정할 수 없고 답은 아니다. 한편 B만이 복용하고 있는 약은 약5의 1종류뿐이기 때문에, 예시 2가 답이 되고, 예시 3은 답이 아니다. 그리고 D만이 복용하고 있는 약은 없기 때문에 예시4와 예시5는 정답이 아니다.

### (4)5. (난이도2)

최초의 A의 말로부터 A는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추는 약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의 양쪽을 복용하는 것은 아니고,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추는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 약은 복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예시 1은 정해가 아니다.

[표2]에서 요산의 수치를 낮추는 약도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추는 약도 B와 C는 복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시 2, 3, 4는 정답은 아니다. 한편,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 약은 B와 C 그리고 D의 3사람이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시 5가 정답이다.

[표2]

	A	B	C	D
중성지방	○	×	×	×
약2	○	×	×	×
요산	○	×	×	○
약4	×	×	○	×
약5	×	○	×	×
콜레스테롤	×	○	○	○
약7	×	○	○	○

## (5)4. (난이도2)

우선 최초의 D와 C의 말로부터 D와 C가 공통으로 위약을 먹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약7이 위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C의 말로부터 A가 혈당치를 낮추는 약을 먹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약2는 혈당치를 낮추는 약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D의 말로부터 약4와 약5가 혈압과 간장의 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C의 말로부터 C가 간장약을 먹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C만이 복용하고 있는 약 4가 간장약이고, 나머지 약5가 혈압 약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표3]과 같이 된다.

A는 혈당치를 낮추는 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시 1은 정답이 아니다. B는 혈압과 위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시2와 예시3은 정답이 아니다. C는 혈당치를 낮추는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시4가 정답이다. D는 요산수치를 낮추는 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시 5는 정답이 아니다.

[표3]

	A	B	C	D
중성지방	○	×	×	×
혈당	○	×	×	×
요산	○	×	×	○
간장	×	×	○	×
혈압	×	○	×	×
콜레스테롤	×	○	○	○
위약	×	○	○	○

(6)1. (난이도3)

이 시점에서는 각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은 위 [표3]과 같이 완전하게 확정된다. 따라서 답은1이다.

3. 표현력을 측정하는 문제

[2008년 문제]

[문제1] A시의 시립중학교에서는 가정에서 조리된 도시락을 통해서 자식들이 보호자의 애정을 느끼고 보호자도 자식들의 양육에 책임을 느낀다고 하는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가정에서 만든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고, 우유만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용해 왔다. 그런데 근년 조식을 먹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들, 편식을 하는 학생들, 孤食(혼자 식사를 하는 것)의 습관이 있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급식을 학교에서 실시할 중요성이 인식되게 되었다. 그리고 보호자의 생활양식이 변화해서 보호자로부터는 급식실시의 요청이 많아지고 있고, 시관의 도시락이나 삼각 김밥 등을 지참하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A시에서는 시립중학교에서의 학교급식의 실시를 검토하게 되었지만, 학교급식을 시립중학교에서 실시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있음을 알았다.

- ① A시의 시립중학교에 재적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등교 전에 조식을 먹고 오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전혀 먹지 않는다.	8%
매일 반드시 먹고 온다.	28%
먹고 오는 날이 많다.	43%
먹고 오는 날 먹고 오지 않는 날이 반반씩이다.	9%
먹고 오지 않는 날이 많다.	12%

- ② A시의 시립중학교에 재적하는 학생들의 보호자에 대해서 학교급식의 실시  
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1] 및 [표2]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1] 학교급식 실시에 관한 학생 설문조사 결과

급식은 실시하는 것이 좋다.	16.5%
어느 쪽인지 선택하라고 하면 실시하는 것이 좋다.	15.8%
급식은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21.9%
어느 쪽인지 선택하라고 하면 실시하지 않은 것이 좋다.	40.8%
그 외	5.0%

[표2] 학교 급식실시에 관한 보호자 설문조사 결과

급식은 실시하는 것이 좋다.	56.5%
어느 쪽인지 선택하라고 하면 실시하는 것이 좋다.	14.1%
급식은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15.4%
어느 쪽인지 선택하라고 하면 실시하지 않은 것이 좋다.	12.8%
그 외	1.2%

- ③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방식으로서 A시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립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독학교 조리방식이다. 단독학교 조리방식  
은 시립초등학교의 실시실적이 있고, 위생, 보온 면에서 뛰어나다. 그리  
고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에게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하다.

A시의 연간 세출은 약 160억 엔이고, 그 중 교육비는 약 20억 엔 이지만,  
급식실의 건설비 등의 비용은 1교 당 약 2억 5천만 엔을 필요로 한다. A시에  
서는 현재 시립중학교가 3개 있기 때문에 건설비로서 약 7억 5천만 엔을 필요  
로 한다. 조리에 해당하는 인원도 1교당 최저 3~4명이 필요하고, 인건비도 발  
생하게 된다.

대체 안으로서는 민간업자에게 조리를 부탁하고 이를 배송 받는 방식이 있  
지만 급식요금이 배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고려되고는 있지 않다.

A시의 시정의 문제점, 조리에 대한 의견을 시에 말하는 모니터로서, A시의 시립중학교에서의 학교급식의 실시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어느 쪽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의견서를 작성하시오. 그 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입장에서의 비판을 포함해서 3가지 이상의 논점을 언급하시오.

## [채점기준]

### 1. 문제의 의도

급식의 실시라고 하는 많은 수험생에게 있어서 친근한 소재를 재료로 한 문제이다. 본문 중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이의 식생활, 양육 방법, 식육, 보호자의 생활양식의 변화, 행정의 재정 등,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많다. 본문에서는 제 조건을 감안한 위에 찬성인지 반대인지의 두 가지의 선택지를 어느 쪽에 결론지우도록 요구받고 있다.

찬성의 입장에서는 보호자의 요망에 응대할 수가 있고, 영양균형을 맞춘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다. 한편, 반대의 입장에서는 어린이들의 요망에 따를 수 있고, 가정도시락을 통해서 보호자의 애정을 느낄 수도 있다. 그리고 조식에 관한 학생들의 설문의 집계결과도 적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하는 바의 근거자료로 이용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표현력 문제의 평점이란 표현력이라고 하는 定性(정성)적 평가를 정량화 하는 수법이다. 따라서 표현력을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평가 기준으로 분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 2. 평가항목(100점 만점)

- (1) 결론의 제시(10점)
- (2) 논점의 언급(한 개의 논점에 5점. 최대 15점)
- (3) 설득성(20점)
- (4) 논리성(45점)
- (5) 자료의 적절한 활용(10점)

### 3. 평가기준

#### (1) 결론의 제시(10점)

찬성, 반대 어느 쪽의 입장을 선택하는 지를 명시한다.

#### (2) 논점의 언급(한 개의 논점에 5점, 최대 15점)

언급된 논점에 대해서 하나의 논점별로 채점하고 부분점수는 취하지 않는다. 3개 이상의 논점을 언급한 경우, 15점을 최대점수로 한다.

- 보호자의 요망
- 학생의 요망
- 가정도시락을 통한 부모자식간의 애정
- 보호자의 생활스타일의 변화
- 食育(식육)
- 건전한 식생활의 실천
- 학생들의 식생활의 혼돈(조식의 결식, 편식, 孤食(고식))
- 시행정의 재정 등

#### (3) 설득력(20점)

문장의 구성이 확실히 되어 있고 스토리구성이 잘 되어 있으며, 알기 쉬우면 고득점으로 한다. 그리고 논점을 4가지 이상 들고 있는 경우에도 고득점으로 한다.

#### (4) 논리성(45점)

##### ① 문제의 제기(5점)

A시의 시립중학교가 처한 상황으로부터 학교급식의 실시에 대한 찬반양론이 일게 되었다는 것을 적시하면 만점으로 한다.

##### ② 논거가 결론으로 연결되어 있다(25점)

결론 지지를 위한 논거설명과 결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만점으로

로 한다. 기술이 불충분하거나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거나 논거설명과 결론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면 감점한다.

③ 다른 설의 논거의 논박과 자기 설의 약점의 보강(15점)

예상되는 반대논거를 명시해서 반박하고, 더욱이 자설의 약점을 명시해서 그것을 옹호함으로써 스스로의 선택을 설득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면 만점으로 한다.

(5) 자료의 적절한 활용(10점)

설문조사 결과를 적절하게 읽고 주장의 설득력을 높여 가면 만점으로 한다.

[2007년 문제]

[문제1]

A초등학교 PTA 조직의 일부인 지구위원회에서는 아동의 등교 시의 교통 안전확보를 위하여 통학로의 교차점 8개소를 지정해서 아침 7시45분부터 8시30분까지의 45분간, 교대로 보호자에게 교통당번을 부탁하고 있다. 당번이 된 보호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교차점 모서리에 서서 교통 안전기를 흔들고, 아동의 횡단안전을 지키게 된다. 현재는 각 지정장소에 1명, 매일 아침 당번이 서기 때문에 각 가정은 연간 6회의 교통당번을 담당하게 된다.

지정장소는 모두 스쿨 존 내에 있기 때문에 지정시간 내에 차량통행은 원칙 금지되어져 있고, 거주자 등의 허가차량 밖에 통행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택시나 배달 차량 등 무허가 차량의 통행이 끊임없는 지역도 있고, 또 근접하는 고교의 통학시간과도 겹치는 것도 있어서 스피드를 높여서 달리는 자전거도 많기 때문에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통당번에게 주어지는 임무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 각 가정의 보호자가 교차점에 서서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아침인사를 함으로써 지역의 아동들을 지역의 어른들이 모두 지킨다고 하는 지역의식의 함양도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근래에는 아

동을 범죄로부터 지킨다고 하는 의미로부터도 통학 시에 어른의 눈이 있다는 것의 중요성이 아주 크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전부터 어린 미취학아동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으로부터 연6회의 교통당번은 과중한 부담이라는 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눈이 내리는 날 유아를 안고 당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나, 이리저리 달려 나가는 어린 2세의 유아를 막아가면서 해야 하는 45분간의 교통당번은 길다고 하는 소리, 형편상 양친 중 어느 한 쪽도 정해진 시간에 당번을 설 수 없는 가정도 있어, 부담회수를 줄이고 싶다는, 혹은 한층 더 나아가 교통당번을 폐지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도 들리게 되었다. 경찰서와 상담한 결과, 해당 시간에 전 지정장소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후 스쿨 존 내의 무허가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가겠다는 회답을 들었다. 지역자치회나 노인회와의 연대도 장래적으로는 고려해야 한다고 검토 중이지만 현시점에서는 네트워크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구위원회에서는 교통당번의 금후의 위상에 대해서 각 가정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폐지도 시야에 넣은 금후의 방침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 가정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설문조사 실시 후, 마침 사정이 좋지 않아 당번을 세우지 못했던 지정장소의 교차점에서 통학중의 아동과 자동차와의 접촉사고가 일어난 적도 있어, 현 사유지와 폐지라고 하는 선택지는 제외하고 검토한 결과, 지구위원회는 이하의 2가지의 개혁안을 근시 행해지는 PTA 총회에 제출하고, 심의 ·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출하는 2가지 안은 다음과 같다.

A안 : 지정장소를 위험도가 높은 관점으로부터 재조정하여 현재의 8개소로부터 5개소로 줄이고, 1가정 당 당번 회수를 연6회에서 연4회로 줄인다.

B안 : 특히 사정이 있는 가정의 부담을 사정에 따라서 연2회부터 0까지 경감하고, 1가정 당 당번회수를 8회로 증가시킨다.

당신은 지구위원회의 위원이고 A안, B안 어느 쪽의 제안자로서 PTA총회에서 제안안건의 취지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제안이유를 명기한 설명원고를 작성하시오.

[자료]

[설문조사] 대상 : A초등학교 전교아동 470인(가정 수 302호)

설문조사는 각 가정에 1매 배포, 회수 수는 252매

**[질문표]**

교통당번에 대해서 답하시오.

- (1) 현행대로가 좋다. (찬성, 반대)
- (2) 교통당번의 지정장소를 감소하고 연간 부담회수를 줄인다. (찬성, 반대)
- (3) 연말연시나 교통안전주간 등, 교통당번을 배치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여간 부담회수를 반으로 줄인다. (찬성, 반대)
- (4) 사정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사정에 따라 부담을 감면한다. (찬성, 반대)
- (5) 교통당번 제도를 폐지한다. (찬성, 반대)

[결과]

- (1) 찬성 55, 반대 197
- (2) 찬성 126, 반대 126
- (3) 찬성 92, 반대 160
- (4) 찬성 127, 반대 125
- (5) 찬성 54, 반대 198

**[채점의 기준]**

아동의 통학로의 안전이라고 하는 중요하지만 당연한 것도, 많은 사람의 무상의 배려나 많은 생각들 속에서 성립하고 있다. 아동의 안전 외에도 장점이

많은 교통당번이지만 바쁜 보호자가 시간을 구속받게 되면 불만이 나오게 된다. 부담을 일률적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은 이들에게 무리가 가게 되고, 가능한 이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나오게 된다. 행정이나 지역, 가정의 기능의 문제, 학교, 지역과 가정의 연관성 등 생각해 볼만한 문제는 다수 존재한다. 현상유지와 폐지를 두고 양극으로 많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양극은 배제하고, 대상 장소를 축소하여 1가정당 부담 회수를 일률로 감축하는 A안과 대상 장소는 현상대로 유지하지만,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서 부담의 배분을 경감하는 B안의 2가지의 선택지가 준비되어져 있다.

A안에서는 교통당번이 서는 장소를 감축하게 되기 때문에, 아동의 안전도는 얼마간 저감하겠지만, 각 가정의 부담은 경감되고 더욱이 부담도 형식적으로는 평등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평등이 유지된다. B안에서는 교통당번이 서는 장소는 현재와 같기 때문에 아동의 안전도는 현상유지 되지만, 가정의 사정에 따라서 각 가정간의 부담의 배분이 불평등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 부담배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 때에는 각 가정의 프라이버시의 보호에의 고려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참고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방안을 생각해 서 자기주장의 보강을 하기 바란다.

## 2. 평가항목(100점 만점)

- (1) 결론의 제시(10점)
- (2) 논점의 언급(한 개의 논점에 5점, 최대 15점)
- (3) 설득성(20점)
- (4) 논리성(45점)
- (5) 자료의 적절한 활용(10점)

### 3. 평가기준

#### (1) 결론의 제시(10점)

A안, B안 모두의 입장에서서 어느 쪽의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명확히 한다.

#### (2) 논점의 언급(한 개의 논점에 5점, 최대 15점)

언급된 논점에 대해서 1개당 가점하고 부분점수는 채점하지 않는다. 4개 이상 논점을 언급한 경우에는 4개까지 가점으로 한다.

#### [A안측]

- 교통당번의 불필요성
- 당번이 부담으로 되는 가정의 입장
- 부담의 형식적 평등성
- 부담기준의 간결성, 작성의 곤란성

#### [B안측]

- 교통당번의 안전을 위한 필요성
- 교통당번 이외의 효용
- 당번이 부담으로 되는 가정의 입장
- 장래적인 부담의 가능성
- 대체조치의 가능성
- 사생활의 보호를 위한 배려

#### (3) 설득성(20점)

문장의 구성이 분명하고 이야기의 전개성이 있고, 알기 쉬우면 고득점이 된다. 논점을 5개 이상 들고 논거를 보강하는 등의 효과를 들 수 있다.

#### (4) 논리성(45점)

##### ① 문제의 제기(10점)

A초등학교 지구위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대책의 필요성을 논하고, 2개의 선택지가 있음을 들고 있으면 만점으로 한다. 어느 쪽의 기술이 불충분하면 감점으로 한다.

② 논거가 결론으로 연결되어져 있다(15점)

결론 지지를 위한 논거설명과 결론이 整合(정합)성 있으면 만점으로 한다.

③ 다른 설의 논거의 논박과 자기 설의 약점의 보강(15점)

예상되는 반대논거를 명시해서 반박하고, 더욱이 자기의 주장의 약점을 명시해서 그것을 옹호함으로써 스스로의 선택을 설득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면 만점으로 한다.

(5) 자료의 적절한 활용(10점)

설문조사 결과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논술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으면 만점으로 한다.

#### 4. 장문독해력을 측정하는 문제

##### [2008년 문제]

죽음에는 크게 나누어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연사로 상징되는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자각적인 죽음 즉 자살로 대표되는 피할 수 있는 죽음이 그것이다. 더욱이 이들 중에서 피할 수 있는 죽음에는 스스로의 의사에 반해서 일어나는 타율적인 죽음이 포함될 것이다. 예를 들면, 살인이 전형적인 것인데 이 타율적 죽음은 상대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멈추게 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 죽음은 명백히 이 피할 수 있는 죽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그 자체가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한, 정치적인 죽음도 예를 들면 그 가장 극단적인 상징인 테러리즘에 나타나는 것처럼, 타자에 의해서 야기되는 타율적인 죽음이고, 그 까닭에 타자의 자제에 의해서 피할 수 있는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정치적 죽음에 고유한 비극성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도 좋다. 본래적으로 회피 가능한 죽음에 의해서 사람이 타율적으로 자기의 존재와 자기가

가지는 가능성을 단절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연사나 자각적인 죽음에 동반하는 비극성과는 그 성질을 전혀 달리하는 비극성에 해당한다. 인간에 의해서 정치적 죽음은 유한한 인간이 항거할 수 없는 죽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생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 있는 운명에 의한 이른바 외부로부터의 존재와 가능성과의 무참한 압살이기 때문이다.

그 의미에서 정치적 죽음의 비극의 근원은 생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숨기고 있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결단이 아닌 죽음을 타율적으로 누르는 부조리성 안에 숨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아우슈비츠에서의 인간의 죽음의 비극의 하나의 측면은 거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강제수용소라는 이름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인류에 공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인류의 미래에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는 잠재력을 숨긴 많은 인간들이,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서 타율적인 죽음을 강요당하고, 자기의 의지에 반하는 생과 가능성의 단절을 강제당하기 때문이다. 나치의 만행이 '인류에 대한 죄'로서 단죄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같은 예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인간에게 자기가 직접 책임을 질 수 없는 비업의 죽음을 초래한 그것은 일본 정부가, 나치 독일에 대해서 사용되어진 것보다도 '측정하기조차 힘든 강대한 병기'의 사용을 암시한 포츠담 선언에 녹아 있는 연합국 측의 결의를 잘못 읽지 않는 한, 틀림없이 회피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의미에서 그것은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이 정책결정자의 무책임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가혹한 운명을 강요한 부조리한 비극이었다.

그렇다면 정치의 세계에 있어서 이처럼 부조리성이나 비극성을 숨긴 죽음이 피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일견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자주

인간을 현혹시키는 것일까. 그 이유는 정치 그 자체의 특이한 구조를 생성해 내는 인간의 비합리성과 비사회성과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칼 슈미트에 의하면,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개념으로서의 ‘정치적인 것’의 핵심은 상대를 물리적으로 살해하려고 하는 지점까지 가는 철저한 적과 아군관계의 존재에서 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통상의 정치 과정에 있어서는, 정치란 적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극한 상황에까지 가지 않고, 우선 말로써 설득이나 가치의 배분에 의해서 공연한 적을 숨어있는 적으로, 숨어있는 적을 중립자로, 중립자를 숨어있는 자기편으로 숨어있는 자기편을 자기편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이러한 통상의 정치에 있어서 전제로 되어 있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이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어의 의미를 이해해서 이를 수용하고, 가치계산이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의 충족에 의해서 대립을 중단시키는 합리적 존재라고 하는 인간관이 바로 그것이다. 정치의 세계에서 언어가 인간을 움직이는 관념적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지위나 명예, 부가 인간을 움직이는 현실적 가치로서 이용되어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다른 한 가지는, 인간이 여러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존재로 간주하는 인간상의 규정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 없이 공존을 초래하는 ‘가능성의 기술’로서의 정치는 원래 성립할 근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간의 속성이 이처럼 합리성과 사회성만으로 찾으려고 한다면, 인간에게 타율적 죽음을 초래하는 정치적 죽음은 영원히 회피 가능한 것으로 하기에는 어려워진다. 인간에게 있어서 합리성이란 공존의 지침을 나타내고, 사회성이란 공존의 기반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양면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합리성과 사회성을 가진 반면,

로고스의 체계로서의 언어에 등을 돌리고 상식적인 가치를 거부하고 반가치성을 따르려고 하는 비합리성과, 타자와의 차이를 상호 화해 불가능한 스스로의 정체성의 근거에 묻으려고 하는 비사회성을 숨기고 있다. 정치적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나타나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이러한 비합리성과 비사회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전쟁이나 혁명이 초래하는 정치적 죽음은 언어에 의한 설득, 가치에 의한 회유를 거부하는 인간의 비합리성과, 타자와의 공존을 거절하는 인간의 비사회성의 극한에서 발생하는 적의 물리적 말살에의 필연적인 지향의 귀결인 것이다. '자연은, 이렇게 인간들을 분리시미고 상호 침해해서 멸종해가는 경향을 주고 있다'는 홉스의 지적은 이 점을 훌륭히 적시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슬람교도에게 있어서의 지하드의 관념이나, 혁명과정에서의 반혁명분자의 숙청도 정치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이러한 비합리성이나 비사회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아마도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그 심연에 정치적 죽음을 회피 가능한 것으로 하지 않고는 둘 수 없는 존재적인 요인을 숨기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적 죽음이 인간에게 스스로의 의지를 넘은 비극을 초래하는 타율적인 죽음인 한, 그것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의심이 가는 것이다. 이 점에서 비인간적인 정치적 죽음을 대량으로 생산해낸 20세기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

(중략)

그렇다면 그 탐구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논리를 무엇인가로 나타내면 좋을 것인가. 필자는 그것은 다음의 3가지의 아주 단순하면서도 상식적인 논리 속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어떠한 인간에게서도 타자가 가지는 가능성을 타자의 의지에 반해서 탈취할 권리는 없다고 하는 소박한 사실이다.

이점을 확인하지 않는 한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원하는 인간에게 타율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정치적인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이나 혁명이 일으키는 죽음도 인간의 손에 의한 인간의 살상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살인과 같은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정치적 죽음을 부정하는 제1의 원리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두 번째 논리는 ‘상상에 근거한 입장의 교환(아담 스미스)’이라는 입장에서 타자와 자기와의 차이성에 동등의 가치를 인정하는 관용의 정신에서 구할 수 있다. 다양성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쉽게 적대관계로 바뀌어버리는 민족, 인종, 종교, 이념, 계층 등에 의한 차이가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차이를 상호살인의 정당성근거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차이를 차이로서 서로 존중하고 승인하는 자유로운 관점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그 경우, 생의 이념과 형식을 달리하고, 게다가 상호배타적인 충동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된다’(스피노자)는 것, 일체의 문화의 기초는 생애의 욕구라는 것을 공통의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한 시점에 서서, 모든 인간에게 물리적 생존이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을 서로 승인하는 것은, 그대로 문화의 이질성이나 ‘착하게 살아가는’길의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는 방향과 서로 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죽음을 회피하기 위한 제3의 논리는 인간을 분열시키는 ‘적과 아군’의 관계를 끊지 않고 ‘죽음에의 공포’가 지배하는 전쟁상태로 바꾸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정치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는 점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가 차별화된 인간의 사이에서 공존상태를 출현시키는 테크네(기술)이라고 하면, 적을 죽임으로써 타자와의 공존가능성을 끊어버리는 전쟁상태는 정치 그 자체의 부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간이 비합리성과 비사회성을 숨기고 있는 존재인 한, 이러한 정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상호살인이 인간으로부터 일체의 가능성을 빼앗고 나아가서는 문화의 파괴로까지 연결되는 이

상, 그것을 회피하는 정치를 창조할 수 있을지 아닌지는 명백하게 ‘叡智的’(예지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인간일 수 있을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류에게 물어지는 것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칸트적인 신념에서 본래 피해야 하는 정치적인 죽음을 공존을 생산하는 기술로서의 정치를 회복하는 것에 의해 진정으로 회피 가능한 것으로 하려고 하는 정치에의 결연한 의지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세기의 벽두에서 우리들이 이러한 의지를 스스로의 것으로 하여, 정치적인 죽음을 정치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현명함을 몸에 지닐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20세기에 정치적 죽음을 하고 있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최대의 진혼곡임이 틀림이 없을 것이다.

\* 테크네(techne) = 기술(technology)

加藤 節 [정치학을 다시 묻다]에서.

(1) 다음에서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정치적 죽음의 예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하나 선택하시오.

1. 가두데모에서 잡혀 경찰관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2. 자폭테러를 실행하고 자신이 죽는 경우
3. 태풍에 의해 죽는 경우
4. 묻지 마 살인에 의해 죽는 경우
5. 스캔들에 의해 공직에서 추방된 경우

(2) 이하에서 저자가 생각하는 정치적 죽음의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하나 고르시오.

1. 他者(타자)의 자제에 의해서 피할 수 있는 죽음일 것
2. 풍부한 가능성을 타율적으로 빼앗겨 버린 것
3. 공존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을 영원히 빼앗아 버리는 것

4. 인간의 근본적인 성질에 근거를 가진 것일 것
  5. 특이한 인물의 현저한 악성에 의해서 초래된 것일 것
- (3) 저자는 정치적 죽음이 운명이라고 여겨지기 쉬운 것은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하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1. 다수의 사람이 연관되기 때문에
  2. 합리성과 사회성에 근거한 통상의 정치과정과는 다른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3. 한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4. 개인의 자기결정과는 전혀 무관계한 것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5.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 (4) 이하에서 저자가 전개하고 있는 논지에 따라서 정치적 죽음을 부정하는 첫 번째 논리의 유효한 방책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1. 모든 문화적 차이를 없앤다.
  2. 他者(타자)가 가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식을 키운다.
  3.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인 것을 믿는다.
  4. 국가를 폐지하고, 예를 들면 국제연합과 같은 기관을 수립한다.
  5. 정치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자에 대한 철저한 제재를 행한다.
- (5) 이하에서, 정치적 죽음을 회피하기 위한 제2, 제3의 논리의 설명으로서 적절한 것은 몇 개인가?
- a. 민족, 인종, 종교 등은 이제까지의 인간의 역사에서 생각해 보면, 상호의 증오를 생산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이들의 차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용화를 꾀한다.
  - b. 인간은 상호간의 배타적 행동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상호 살인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대립을 나타낼 것 같은 인간은 상호접촉을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 c. 선하게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책이, 사람들에게 동일한 수단으로서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 d. 언어에 의한 설득이나 가치의 배분 등, 통상의 정치에 있어서 발휘되고 있는 테크네를 인간의 차이를 전제로 한 것으로 재취급한다.
- e. 상호살인의 원인인 비합리성, 비사회성을 제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유아기부터의 교육 속에 넣는다.

1. 한 개 2. 두 개 3. 세 개 4. 네 개 5. 다섯 개

(6) 이하에서 저자가 전개하고 있는 논지와 합치하지 않는 것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 1. 정치적인 죽음을 회피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것인 이상 회피해야 한다.
- 2.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 필연적으로 타인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 3. 아군-적 관계에 지배되면 최종적으로는 자기 당착에 빠진다.
- 4.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의 비극은 회피 가능한 것이었다.
- 5. 정치적인 죽음은 비극이기 때문에 그 희생자는 다른 死者(사자)와는 구별하여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 [문제의 목표]

문제는 ‘정치적인 죽음’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정치개념 그 자체나 그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저자는 ‘정치’, ‘죽음’, ‘비극(성)’이라고 하는 일상용어로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에, 통상의 용법과는 다소 다른 내용을 넣어,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재구성하고 있다. 이 통상과는 다른 개념내용을 전체의 논리전개나 구체적인 예를 참고로 하면서 충분히 독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집착에 의한 판단이나 상식에 의해서 읽어 내려가는 것 없이 논지의 전개나 저자의 주장을 꼼꼼히 분석적으로 읽는 힘을 묻고 있다.

## [정답 및 해설]

### (1) 1.(난이도2)

제시문에서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정치적인 죽음에 대한 이해를 실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문제이다.

저자는 정치적인 죽음을 타자와의 대립에 기인하고, 따라서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죽음, 더욱이 타율적인 원인에 의한 죽음으로서 구성하고 있다.

1. 상기의 저자의 생각에 합치하고 있다.
2. 5. 타율적인 원인이라고는 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절
3.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므로, 부적절
4. 타자와의 대립에 기인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저자는 정치적인 죽음을 회피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원인이 타자와의 대립에 의해 그 대립의 원인으로까지 내려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2) 5.(난이도1)

정치적인 죽음의 특징이나 원인으로서는, 제시문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열거되어져 있다. 예를 들면, 타율적인 죽음, 그 현상 면으로서는 전쟁이나 혁명이 있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정치적 죽음 내지는 정치적인 죽음의 비극이 인간의 속성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

그 중에서 정치적인 죽음을 야기하는 원인이 인간주체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인간 공통의 속성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점은, 그것을 피하는 방책과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정치적인 죽음으로서의 전쟁이나 혁명을 오

직 현상 면에서 바라보면, 거기에 특이한 인물의 특이한 성정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저자의 논술의 포인트는 오히려 정치적인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을 인간에게 공통의 본성(속성) 속에서 살펴보고, 동시에 그것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점도 있다. 예를 들면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한 사람 히틀러의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답은 5이다.

(3) 2.(난이도2)

정치적인 죽음이 운명이라고 여겨지기 쉬운 것은 그것이 피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저자는 정치 자체의 특이한 구조의 원인으로서는 인간의 비합리성과 비사회성을 그 원인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2가 답이다.

(4) 2.(난이도2)

1. 제2의 논리로서 '차이를 차이로서 사회 간에 존중하고 승인할 수 있는 자유로운 관점이 불가결'이라고 말하고 있어, 부적절.
2. 인간의 비합리성이나 비사회성이라고 하는 저자의 주장과 모순하기 때문에, 부적절.

정치적인 죽음을 개인적인 원인이나 제도적인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구축(4)이나 개인에의 제재는 부적절하다(5).

(5)1.(난이도1)

- a. 저자의 취지와는 반대로, 부적절.
- b. 인간의 상호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취지나, 채용된 실패와는 반대이기 때문에, 부적절
- c. 저자는 '착하게 살아가는' 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 부적절

d. 적절

e. 저자의 인간관으로부터 보면, 비합리성, 비사회성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적절

(6) 5.(난이도1)

1은 정치적인 죽음을 회피하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어 합치하고 있다.

2, 3은 저자가 제시하는 인간관과 합치하고 있다.

4는 본문중의 예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맞다.

저자는 정치적인 죽음이 비극적인 것이라고 취급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다른 패턴의 사자와의 처우에 차이를 두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는 맞는 설명이다.

## V. 일본의 법학적성시험이 주는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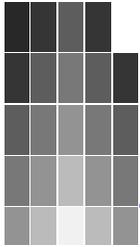
- 일본의 경우, 두 주체에 의한 시험에서 한 주체로 통일되게 되었다. 이는 수험생 및 출제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한 주체에 의한 시험의 출제가 이루어지다보니, 문제의 내용, 난이도, 출제의 경향 등에 관하여 수험생들로부터 많은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행 주체의 복수 내지는 관리감독체제의 개선이 요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일본 역시 법학적성시험을 응시하는 응시생 수가 매년 많이 줄어들고 있다. 첫 관문인 적성시험의 문제를 좀 더 대중화하면서도 전문적인 자질을 물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첫 입구를 넓히고 로스쿨 도입의 취지인, 다양한 전공의 다양한 인재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의 난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 일본의 경우, 적성시험 문제가 일본 독자적인 스타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

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험출제 주최와 전문연구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져 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

- 현재, 일본의 경우 많은 법과대학원들이 스스로 여러 사정에 의하여 정원을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많은는 45%에서 10%정도까지). 이와 같은 사정을 참고로 하여 적성시험을 비롯한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 첫 단계가 적성시험인 만큼, 향후 우리의 논의과정에서도 '대중에게 사랑받는 적성시험'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適正試験委員會編、法科大學院統一適正試験   テクニカル   レポート   2007、商事  
法務
- 適正試験委員會編、法科大學院統一適正試験   テクニカル   レポート   2006、商事  
法務
- 適正試験委員會編、法科大學院統一適正試験   テクニカル   レポート   2005、商事  
法務
- 適正試験委員會編、法科大學院統一適正試験   テクニカル   レポート   2004、商事  
法務
- 適正試験委員會編、法科大學院統一適正試験   ガイドブック、2009、商事法務  
<http://www.jlf.or.jp>  
[http://www.dnc.ac.jp/houka/houka\\_\\_index.htm](http://www.dnc.ac.jp/houka/houka__index.htm)



# 법학적성시험의 기출문제 분석과 개선방안

---

- I. 머리말
- II. 법학적성시험에서 측정해야 할 능력
- III. 2009학년도 시험의 문제분석
- IV. 개선방안

# 법학적성시험의 기출문제 분석과 개선방안

## I. 머리말

2009년 3월부터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했다. 이들 학교에 입학한 2천 명의 학생들은 학부전공, 연령, 직장 경험 등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하나의 공통된 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을 쳤다. 법학적성시험은 2008년 1월에 예비시험이 한 차례 실시되었고, 2008년 8월에 공식적으로 제 1회 시험을 실시했다. 처음 실시한 시험이라 시행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점이 드러났고, 시험문제의 타당성, 난이도와 변별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이 글은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해, 법학적성시험의 문제로서 적절한 것들과 그렇지 못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향후 출제에 도움을 주고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 II. 법학적성시험에서 측정해야 할 능력

법학적성시험이 측정하려는 능력은 이 시험의 명칭처럼 ‘법학적성’이다. 모든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입학전형에서 법학적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을 선호한다. 법학적성이 높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수학하는데 더 나은 기량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무엇이 법학적성인지에 관한 보편적 이해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시험을 통해 법학적성을 적절히 평가하는 방법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법학적성이란 법률전문가(변호사, 판사, 검사 등)로서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법학에 적성이 더 있느냐 덜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이 주로 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법률전문가들은 법률서적, 법조문 등 고도의 전문적이고 난해한 텍스트를 읽고 그 의미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사건 의뢰인이나 소송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며 이를 요약 정리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당사자의 처지와 어려움을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법률전문가의 업무는 말과 글을 통해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기에 법학적성시험은 이러한 언어능력을 정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법학은 매우 논리적인 학문이다. 법적 논쟁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이나 법원, 검찰을 설득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논리적 추론과 입증 능력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에게 필요한 논리는 수학적 논리나 형식 논리학에서 말하는 논리와는 다른 경우가 많다. 법은 사회의 공동 경험에 기초한 규범이기 때문에, 논리보다 관행이 우선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 법의 이념을 고려하여, 법적 논쟁은 얼마나 논리적이냐 보다, 얼마나 공정한가에 더 비중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형식논리나 수리게임의 능력은 윤리적, 규범적 가치판단을 중시하는 법적 논리와 다른 경우가 많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률전문가들이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의 특징과 법학의 학문적 특성 및 사회적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좋은 법학적성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즉, 어떤 소재를 선택하고 어떠한 방식의 문제를 구성하느냐 하는 것은 더 나은 법률전문가가 될 소양이 더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느냐와 관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Ⅲ. 2009학년도 시험의 문제분석1)

#### 1. 언어이해 영역

##### (1) 적절한 문제 유형

3. <보기> ㄱ~ㄴ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한자어가 사용된 것은?

<보 기>

- ㄱ. 태풍으로 선박 몇 척이 유실(流失)되었다.
- ㄴ. 김삿갓은 세상에 염증(厭症)을 느끼고 자취를 감추었다.
- ㄷ. 후보자들은 공약의 이행(履行) 여부를 검증받기로 했다.
- ㄹ. 최소(最少) 득표와 최다 득표의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
- ㅁ. 제품의 정상 조작(操作)이 어려울 때는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① ㄱ : 외적의 침입으로 많은 문화재가 유실되었다.
- ② ㄴ : 반복되는 무미건조한 생활에 염증이 생긴다.
- ③ ㄷ :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면서 언어 변화가 나타났다.
- ④ ㄹ : 부품 개수를 줄여 제품의 크기를 최소가 되도록 하였다.
- ⑤ ㅁ : 승부를 몰래 조작한 일당이 검거되었다.

[평가] 법률용어의 대부분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법학문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한자 해독능력이 필요하므로, 한자어의 정확한 사용례를 묻고 있는 이 문제는 법학적성과 상관성이 높다. 다만 응시자들의 수준을 고려할 때, 실제로 로스쿨 진학할 수 있는 상위권 응시자들에게는 변별력이 낮은 문제라고 판단된다. 정답:②

1) 여기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문제들은 2008년 8월 24일에 처음 실시된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문제의 '홀수형' 문제들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http://www.leet.or.kr>) 게시판에 올려져있는 것을 이용했다.

4. 예시문을 어법에 맞게 고치지 못한 것은?

예시문	수정 내용	
정식 재판 절차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찾고 진정한 권리자를 가리는 데 가장 좋은 형식이다.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 제공하기 위해 그 절차로써	... ①
새 정책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국민이 그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 정책과의 혼동이나 새 정책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 정책과의 혼동이나 → 기존 정책과 혼동하거나	... ②
민사 소송이란 민사 분쟁, 즉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강제적 절차이다.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 ③
통신 판매업자는 휴업 기간이나 영업 정지 기간 중에도 청약 철회 업무와 그에 따라 대금 환급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 그에 따른	... ④
응찰자는 사전에 제한 사항 확인 및 입찰 등록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 공지서, 계약서 등을 열람한 후 공사에 응찰하여야 한다.	제한 사항 확인 및 →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 ⑤

[평가] 법률전문가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견서’나 ‘소장’ 등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하고 효과적인 글쓰기의 기초로서 바른 문장 쓰기를 익힐 필요가 있으므로, 어법적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이 문항은 적절한 문제이다. 다만, 변별력이 높지 못한 소재를 선택했다고 판단된다. 정답:①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우리는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의 내용에 구속될 뿐 아니라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합의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비교적 최근어야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로마의 법률가들이나 중세 영국의 판사들은 단순히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당사자가 합의의 내용에 구속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뿐 아니라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곧 소송을 통해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그들에게는 매우 낯선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합의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제하는 것과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확연히 구분되는 일이었으며, 소송은 기본적으로 전자를 위한 수단이었지 후자를 위한 수단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로마의 법률가들은, 만일 당사자가 어떤 노예를 해방하기로 하고 돈을 받아 놓고도 그 노예를 해방하지 않고 있다면 받은 돈을 되돌려 주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굳이 그 노예를 해방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그들은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선형적인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사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구체적인 분쟁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물음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합의의 구속력에 대한 이 같은 인식에 변화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합의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통해 구제될 필요가 있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사 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16세기 중반까지 대체로 안정적이었던 영국의 물가가 16세기 후반 갑자기 상승 국면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경제 지표의 변화 시점은 영국의 판사들이 소송을 통한 합의의 이행 강제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꾼 시점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도 매도인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이행할 시점 사이에 목적물의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같은 가격에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가격이 상승했다면 비싼 가격에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므로 가격 차이는 고스란히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학자들은 경제 여건의 변화가 소송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해석한다.

그러나 경제 여건의 변화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 ‘형식의 옷을 입지 않은 합의만으로는 소권(訴權)이 생기지 않는다’는 로마법 이래의 원칙을 파기하려면 법리적 정당화가 수반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세의 세속법 학자들은 그러한 정당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다수의 영국 판사들이 소송을 통한 합의의 이행 강제에 반대했던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들의 이러한 형식법적 사고방식을 과감히 뛰어넘는 데 필요한 힘은 교회로부터 나왔다. 중세의 교회법은 자연법적 색채가 강했으며, 교회의 윤리 신학자들은 오직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그 자체를 양심의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고자 했다. 이러한 실질법적 사고방식은 이미 13세기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의 훈령 속에 ㉡ ‘합의는 어떠한 형식의 것이든 준수되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규정되었고, 결국 16세기 후반 영국 세속법의 변화에도 법리적인 정당화를 제공해 주었다. 이후 합의의 형식적 측면보다는 실질적 측면이 더 강조되었다. 즉 합의는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당사자를 구속하며 그 이행은 강제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6세기 후반 우여곡절 끝에 영국 법원의 공식적 입장이 전환되기는 했지만 판사들 간의 논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과거의 전통을 지지하는 판사들은 여전히 형식의 옷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합의의 구속력이 논란의 여지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200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16세기 후반 이후 약 200년간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 제도가 점차 당연하고도 정의로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19세기의 법률가들이 인간 중심적인 근대 철학에 기초하여 합의의 구속력의 근거를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19세기의 법률가들은 합의의 구속적 성격이 인간의 자율성에서 도출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합의한 바에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6. 위 글의 문맥에 따라 때 ㉠, ㉡으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합의의 내용에 따라 그것의 구속력 여부가 결정됨을 뜻한다.
- ② ㉠은 합의의 불이행만으로는 소권이 부여되기에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 ③ ㉡은 19세기에도 통용된 법 원칙이다.

- ④ ㉠은 합의의 형식에 따라 그것의 구속력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음을 의미한다.  
 ⑤ ㉡과 ㉢은 합의의 구속력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평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수학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학 관련 지문의 독해능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정한 법학 지식과 관련된 지문을 출제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도 어긋나고, 비법학 전공자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준다. 이 지문은 법에 관련된 것이면서도 법학전공자에게 특별히 유리하지 않은 소재를 선택했고, 변별력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정답:①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민주 정치의 중요 요소인 정당 정치는 ‘개별 정당’과 ‘정당 체계’ 차원으로 나뉜다. 이때 정당 체계는 여러 정당이 조직화된 양식으로 작동하는 정당 군(群)을 의미한다. 개별 정당 분석이 대의제 아래에서 정당이 수행하는 시민 여론 조직화·가치화 기능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한다면, 정당 체계 분석은 정당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정당 체계 분석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 수 산정이다. 정당 수가 많은가 적은가 하는 것은 그 정치 체계의 이데올로기적 분포 및 정치 상황의 안정도를 보여 주는 중요 지표이다. 이데올로기의 극단적 분포가 궁극적으로 정치 체계의 불안정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즉 정당 수는 이념적 분포가 원심적인지 아니면 구심적인지를 보여 준다. 최근까지 정당 수 산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제시되어 왔는데, 이는 정치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 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단순 방식’이 있다. 이 방식에서는 한 정치 체계의 규정에 따른 정당이면 모두 동일한 자격을 갖춘 정당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유효한 정당의 수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 상황의 시점(時點)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다. 특히 내각 책임제의 경우 선거 전이나 아니면 선거 후냐에 따라 유효한 정당의 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이항 분류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의회에 의석을 보유하고, 내각 구성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정당만을 정당 체계 내 정당으로 인정한다. 이항 분류 방식은 특히 정당 난립 상황이 심할수록 유용한 분석 수단이다. 내각 책임제에서는 얼마나 많은 정당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각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수가 몇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정당 체계와 총선 결과에 따른 정당 체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항 분류 방식을 사용하여 비교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 이 방식은 정부 형태 간 교차 분석을 위해 사용하기 어렵다. 동시에 내각 구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정치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당의 존재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방식의 단점이다.

앞의 두 방식을 비판하며 등장한 것이 ㉠ ‘지수화 방식’이다. 지수화 방식에서는 내각 참여 여부를 막론하고 각 정당의 득표수와 의석수의 상대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이 방식은 각 정당의 득표수 또는 의석수를 상대적 비율로 파악하여 ‘선거 유효 정당 지수’ 또는 ‘의회 유효 정당 지수’를 산정한다. 만약 2개의 정당이 선거에 참여했고 각각 60%와 40%를 득표했다면, 1을 각각의 제곱의 합 ( $0.36+0.16$ )으로 나눈다. 따라서 선거 유효 정당 지수는  $1.9(1/0.52)$ 가 된다. 의회 유효 정당 지수는 득표율 대신 의석 비율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지수화 방식은 대통령 선거와 총선의 정당 체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정당의 선거 정득표수 또는 의석수를 상대적인 값으로 전환하여 지수화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 정당 체계의 정당 수는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다양한 정당 수 산정 방식이 제시된 것은 복잡한 정치 현상의 실체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특정 정부 형태나 정치 상황에 국한되지 않는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 간 정당 체계 비교 연구나 정당 체계에 대한 일반 이론의 개발을 위해서는 지수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 방식은 정치 체계 간의 이데올로기적 분포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 주며, 나아가 어떤 정당 체계가 민주 정치의 안정적 운영에 적절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33. 위 글의 내용을 <보기>의 상황에 적용하여 해석한 것으로 옳은 것은?

〈보 기〉

내각 책임제를 채택한 어떤 국가에서 총선에 참여한 정당은 모두 6개였다. 선거 후 의회 의석을 확보한 3개의 정당만 남고 나머지 정당은 해산하였다. 이 중 A당은 40%의 득표율로 40%의 의석을, B당은 30%의 득표율로 40%의 의석을, C당은 20%의 득표율로 20%의 의석을 얻었고, 나머지 정당들은 모두 합쳐 10%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획득하지 못했다. 세 정당은 모두 내각 구성에 관심을 표하였다.

- ① 단순 방식에 따를 때, 선거 전후의 정당 수에는 변화가 없다.
- ② 선거 후 단순 방식에 따른 정당 수는 이항 분류 방식에 따른 정당 수보다 작다.
- ③ 이항 분류 방식에 따른 정당 수는 지수화 방식에 따른 의회 유효 정당 지수보다 크다.
- ④ 지수화 방식에 따를 때, 의회 유효 정당 지수는 선거 유효 정당 지수와 같다.
- ⑤ 지수화 방식에 따른 의회 유효 정당 지수는 선거 후 단순 방식에 따른 정당 수와 같다.

[평가]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사회과학(정치학)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여 현실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법학적성시험 문제의 소재로 적절하고, 변별력도 양호한 문제이다. 정답:③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치권력의 남용과 사회적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은 건전한 여론 형성 기능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파수견(watchdog)에 빗대어 표현하는데, 이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파수견 기능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아닌 언론 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의미한다. 즉 개인의 기본권적 특성보다는 언론 기관에 부여되는 제도적 권리의 특성을 지닌다.

파수견 기능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면 그것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미국의 ㉠ 전통적인 시각은 1791년에 제정된 수정 헌법 제1조의 의미를 언론 기관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를 보장하는 이 조항은 의회가 언론을 억압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각에 따르면, 독립 시기를 전후로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신문에 자유롭게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비판적인 언론 이데올로기가 존재했다고 한다. 이에 근거하여 수정 헌법 제1조가 차후에 언론 기관에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었다고 인식한다. 이 시각은 언론 기관의 핵심적 기능을 ‘견제 가치’에서 찾는다. 그래서 비록 언론의 상업주의적 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권력의 남용보다는 폐해가 덜하기 때문에 파수견 기능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언론 관련 규제가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하며 심지어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고까지 주장한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파수견 기능을 위해서 국가 기관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제안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헌법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미국의 언론법 학자 글리슨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발생한 명예 훼손 소송을 분석하면서 전통적인 시각과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그는 법원이 언론의 파수견 기능을 언론 기관의 헌법적인 권리로 인정하게 된 것은 언론의 취재 보도 과정의 특수성에 대한 법원의 인식과 직결된다고 밝힌다. 19세기 말 언론의 보도 행태는 대단히 선정주의적인 경향을 보였고 이에 대해 사회적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명예 훼손 소송의 건수도 급증하게 되는데, 진실 보도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 훼손법의 적용으로 인해 언론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당시 신문사의 수가 늘면서 신문 산업이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 신문사들은 명예 훼손 소송을 신문 산업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판단하였다. 이들은 명예

훼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파수견 기능을 면책 특권으로 입법화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언론의 공적 기능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확대하였으나 소송의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예를 들어 1896년 시 공무원을 비판한 기사로 인해 벌어진 명예 훼손 소송에서 루이지애나 주 대법원은 언론의 파수견 역할은 인정했으나 문제가 된 기사가 취재 보도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주 대법원은 신문의 파수견 역할이 진실을 밝히고 시민 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는 일관되고 합리적인 취재 및 편집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즉 법원은 언론의 파수견 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여전히 진실 보도를 강조함으로써 취재 과정상의 복잡성을 내세운 언론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 경향은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결국 글리슨에 따르면 파수견 기능을 헌법적으로 보호하는 근거는 명예 훼손법 발전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39. <보기>에서 글리슨의 연구에 나타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고른 것은?

—<보 기>—

- ㄱ. 언론사는 파수견 기능을 내세워 명예 훼손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 ㄴ. 언론사는 명예 훼손법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ㄷ. 언론사는 취재 보도 과정의 구조적 특수성을 법원이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 ㄹ. 법원은 언론이 공적 역할은 하지만 파수견 기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ㅁ. 법원은 보도의 진실성은 명예 훼손 소송에서 언론이 면책되기 위한 요건이라고 판단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평가]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과 프라이버시 보호 그리고 명예훼손 등의 상호 관계를 지문을 통해 정확히 파악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로 법학적성의 측정에 적절한 소재이고 변별력도 양호한 문제이다. 정답:③

## (2) 적절하지 않은 문제 유형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VOD(Video on Demand)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서버가 네트워크를 통해 비디오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동시에 수신 측에서 이와 연동하여 이를 재생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전송될 때는 허용 시간 내에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중파 방송처럼 데이터를 통신망으로 퍼뜨리는 형태를 취한다. 콘텐츠의 전송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정의되는 채널을 통해 일어나는데, 한 채널은 콘텐츠 데이터 블록의 출구 역할을 하며 단위 시간당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을 의미하는 '대역'으로 그 크기를 나타낸다. 한편 한 서버가 가지는 수용 가능한 대역의 크기, 즉 최대 전송 능력을 '대역폭'이라고 하고 초당 전송 비트 수로 나타낸다.

VOD의 여러 방법 가운데 사용자의 요청마다 각각의 채널을 생성하여 서비스하는 방법을 'RVOD(Real VOD)'라고 한다. 각 전송 채널이 사용자별로 독립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직접 '일시 정지', '빨리 감기' 등과 같은 실시간 전송 제어를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편리성이 높고, 제한된 대역폭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의 동시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동시 접속 사용자의 수에 비례하여 서버가 전송해야 하는 전체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므로, 대역폭의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는 동시 접속이 가능한 사용자의 수에 한계가 있다.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NVOD(Near VOD)는 일정 시간 동안에 들어온 서비스 요청을 묶어 한 채널에 다수의 수신자가 동시에 접속되는 형태를 통해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NVOD의 한 채널은 동시 접속 수신자 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대역을 필요로 하므로 동시 접속 사용자 수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용자가 서비스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대기 시간을 '허용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VOD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시간 분할 NVOD'는 동일 콘텐츠가 여러 채널에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사용자는 요청 시점 이후

대기 시간이 가장 짧은 채널에서 수신 대기하게 되고, 그 채널의 전송이 데이터 블록의 첫 부분부터 다시 시작될 때 수신이 시작된다. 이때 대기 시간은 서버의 채널 수나 콘텐츠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120분 길이의 영화를 12개의 채널을 통하여 10분 간격으로 전송하면 대기 시간은 10분 이내가 된다. 대기 시간을 줄이려면 많은 수의 채널이 필요한데, 1분 이내로 만들려면 120개의 채널이 필요하다.

‘데이터 분할 NVOD’는 콘텐츠를 여러 데이터 블록으로 나누고 각각을 여러 채널에서 따로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대기 시간을 조절한다. 첫 번째 블록을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이어지는 블록의 크기가 순차적으로 2배씩 증가하면 서버도 블록 수가 이용 가능한 채널 수만큼 되도록 전체 콘텐츠를 나눈다. 각 채널에서는 순서대로 할당된 블록의 전송을 동시에 시작하고, 각 블록의 크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송을 반복한다. 수신 측은 요청 시점 이후 첫 번째 블록부터 순서대로 콘텐츠를 받게 되는데, 블록의 수신이 끝나면 이어질 블록이 전송되는 채널로 자동 변경되어 그 블록의 시작 부분부터 수신된다. 단, 채널의 대역이 콘텐츠의 재생에 필요한 것보다 2배 이상 커야만 이미 받은 분량이 재생되는 동안 이어질 블록의 수신이 보장되고 연속 재생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첫 블록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므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앞선 예에서 120분 분량을 2배속인 6개의 채널을 통해 서비스하면 대기 시간은 1분 이내가 된다. 따라서 시간 분할 방법에 비해 동일한 대역폭을 점유하면서도 대기 시간을 9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으며, 대기 시간 대비 사용 채널 수가 줄어들어 한 서버에서 동시에 서비스 가능한 콘텐츠의 종류를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콘텐츠의 전송에 걸리는 시간이 콘텐츠의 전체 재생 시간의 절반 이하이므로 각 채널이 2배 이상의 전송 능력을 유지해야 하며, 콘텐츠의 절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수신 측에 반드시 필요하다.

NVOD는 공통적으로 대기 시간 조절을 위해 다중 채널을 이용하므로 서비스에 필요한 일정한 대역폭을 늘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콘텐츠당 동시 접속 사용자가 적을 경우에는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 극단적으로 한 명의 사용자가 있을 경우라도 위의 예에서는 6개의 채널에 필요한 대역폭을 점유해야 하므로 네트워크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

1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RVOD에서 콘텐츠 전송에 필요한 대역의 총합은 동시 접속 사용자 수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 ② 시간 분할 NVOD와 데이터 분할 NVOD에서는 모두 재생 중에 수신 채널 변경이 필요하다.
- ③ 시간 분할 NVOD에서는 크기가 다른 데이터 블록이 각 채널에서 반복 전송된다.
- ④ 데이터 분할 NVOD에서 데이터 블록의 크기는 사용 채널 수에 상관없이 결정될 수 있다.
- ⑤ 데이터 분할 NVOD에서 각 채널의 전송 반복 시간은 데이터 블록의 재생 순서에 따라 다음 채널로 넘어가면서 2배씩 증가한다.

12. NVOD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한 콘텐츠당 사용되는 채널의 수를 늘리면 사용자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② 한 채널당 수신자의 수가 다수일 수 있으므로 '일시 정지'와 같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기 어렵다.
- ③ 시간 분할 NVOD에서는 적어도 사용 채널의 수보다 많은 수의 동시 접속 사용자가 있어야 RVOD에 비해 서버에서 보내는 전체 데이터양의 감소 효과가 있다.
- ④ 동일한 대역폭을 가지는 서버가 한 개의 콘텐츠만 전송한다고 할 때 데이터 분할 NVOD는 시간 분할 NVOD의 절반에 해당하는 채널 수를 사용한다.
- ⑤ 데이터 분할 NVOD는 수신 측의 저장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장 공간에 제한이 있을 경우 콘텐츠의 크기가 너무 크면 전체 내용의 재생이 어렵다.

13. 어느 지역에 VOD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보기>와 같이 기초 자료를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시간대별로 VOD 서비스 방식을 결정할 때, 가장 적절한 선택은?

<보 기>				
조사 항목	시간	아침, 낮	저녁, 밤	심야
서비스 요청자 수는 얼마나 많은가?		많다	많다	적다
요청 콘텐츠의 수는 얼마나 많은가?		적다	보통	많다
허용 대기 시간은 얼마나 긴가?		길다	보통	짧다

	아침, 낮	저녁, 밤	심야
①	RVOD	시간 분할 NVOD	데이터 분할 NVOD
②	시간 분할 NVOD	RVOD	데이터 분할 NVOD
③	시간 분할 NVOD	데이터 분할 NVOD	RVOD
④	데이터 분할 NVOD	RVOD	시간 분할 NVOD
⑤	데이터 분할 NVOD	시간 분할 NVOD	RVOD

[평가] VOD와 관련된 공부를 한 응시자는 지문을 읽지 않고도 쉽게 정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비전공자들은 독해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답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이 지문의 소재는 특정 분야를 공부한 응시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법학적성시험의 소재로 부적절하고, 11번과 13번의 경우는 매우 변별력이 낮다고 판단된다. 정답:⑤④③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녀는 목덜미가 선득거리자 외투 깃을 올렸다. 회사 앞 골목을 빠져나오며 그녀는 생각했다.

‘내 인생이 남 보기에 그렇게 안되어 보일 만큼 실패한 걸까?’

그러자 괜히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아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자기가 동료들과 세상 사람들을 멋지게 속여 넘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녀가 세상 사람들 앞에 은닉하고 있는 것은 남루한 옷차림의 이 도령이 ㉠ 도포 속에 감춰 가지고 있던 마패 같은 것은 아니었다. 또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가난한 여주인공이었던 여자가 알고 보니 무슨 재벌 총수의 딸이더라는 식의 돈 많고 지위 높은 아버지를 감춰 두어서도 아니었다. 글썄, 그녀로선 남들이 눈치 채지 못하는 자기 맘속의 어떤 그윽하고 힘찬 상태, 그걸 뭐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중략)

한수가 십 년 전 처음 문자의 자취방으로 드나들기 시작했던 때는 한겨울이었다. 유난히도 눈이 잦았던 그해 겨울을 문자는 거의 지붕 위에서 살다시피 보냈다. 눈이 쌓인 채로 놔두면 그 물이 언제까지나 콘크리트 천장으로 스며들어 곳곳에서 낙수가 지곤 했다. 오르내릴 사다다리도 변변치 않았고 고압선이 길게 늘어져 있어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도, 문자는 부삽을 들고 날개가 달린 듯 지붕으로 오르내렸다. 식당을 한다는 주인집 내외가 비죽이 웃으며 대청마루에 선 채 구경 삼아 쳐다보고 있거나 말거나, 그녀는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마치 춤추듯 가볍게 눈을 펴서 지붕 아래로 집어던졌다. 어쩌다 지나가던 행인이 흙탕물이 튀었다고 화를 내면, 날듯 뛰어내려 그의 바짓가랑이를 털어 주며 만족할 때까지 몇 번이나 사과하고 나서 또다시 지붕으로 올라가곤 했다.

또한, 헛간이나 다름없는 문자의 부엌에는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안집 마당에 있는 수도에서 일일이 물을 길어다 먹었다. 안집 마당으로 가려면 부엌 뒷문으로 나가서 높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야 했다. 이전의 세든 사람들에게겐, 그 계단이 죽지 못해 오르내리는 ㉠ 굴욕의 사다리로 여겨졌었다. 그 가난한 여인들은 자신이 양손에 물바게쓰를 들고 킁킁거리며 계단을 오르는데, 주인집 여자가 비죽이 웃으며 자기의 뒷모습을 주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싫었다.

그러나 똑같은 방을 빌려 사는 처지이면서도 문자는 그녀들과 전혀 달랐다. 그녀가 뒷문 앞에 나타날 때 보면, 무슨 좋은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나온 것처럼 항상 두 뺨이 발그레했다. 때로 그녀는 양손에 바게쓰를 든 것도 잊고 층계참에 서서 한참 동안씩 하늘을 쳐다보곤 했다. 그리고 난 뒤엔 두 뺨에 발그레한 빛이 안에서 불을 켜 것처럼 더욱 짙어졌다. 그녀가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은 마치 몸속에 깃들어 있는 싱싱한 생명의 탄력이 음계를 밟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래서, 그 계단은, 그 위에 있는 아주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그녀 혼자만 누리기 위해, 외부로 나타난 부분을 일부러 조악(粗惡)하게 꾸며 논 것같이 보였다.

주인집과 그 집에 세 들어 사는 여느 식구들은 문자가 새벽같이 층계참에 나와 매운 연기를 마셔 가면서도 연탄 화덕에다 신나게 부채질을 활락활락 해 대며 때로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부엌의 아궁이에선 물이 솟았기 때문이다.

아궁이뿐만 아니라, 지붕이며 방고래를 고쳐 달랠 만한데도 문자가 혼자 힘

으로 잘 참아 나가자, 주인집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에게 물세 불세 까지도 터무니없이 물리었다. 그래도 문자는 한마디도 따지지 않고 달라는 대로 선선히 내주었다. 마치 큰 여유가 있어 그만한 일은 불문에 붙이는 것처럼. 때문에 한집에 세 들어 사는 여인들은 문자의 살림 형편이 겉보기보다 훨씬 알심 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어느 날 그녀들은 자기들끼리 짜고 불시에 문자를 찾아갔다.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본즉, 물이 스며든 천장은 페인트칠이 일어나 너덜거렸고, 녹슨 손잡이가 달린 캐비닛 이외에 이렇다 할 세간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들로서는 문자의 

두 뺨에 서린 밧그레한 홍조
--------------------

와 노래를 몸에 휘감고 있는 듯한 그 발랄한 생기가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더욱 몰라졌다. 그녀들은 문자가 수돗가에 나왔다가 떠나고 난 뒤에, 향기 좋은 꽃으로 가슴을 꼭 눌렀다가 떼어낸 것 같은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중 누가 엄지손가락으로 돌았다는 시늉을 해 보이면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듯 폭소를 터뜨렸다.

그녀들이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문자는 남다른 무엇을 소유했던 게 아니었다. 그녀로선 무엇을 하든 그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한 것뿐이었다. 콩나물을 다듬든, 연탄불을 피우든, 지붕 위의 눈을 치우든 그를 생각하노라면 어딘가 높은 곳에 등불을 걸어 둔 것처럼 마음 구석구석이 따스해지고, 밝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 따스함과 밝은 빛이 몸 밖으로 스며 나가 뺨을 물들이고, 살에 생기가 넘치게 하는 것을 그녀 자신은 오히려 깨닫지 못했다.

한수가 그녀에게 오는 것은 단지 일요일 밤뿐이었지만, 그는 항시 그녀의 ㉔ 시렁 위에 걸려 있는 등불이나 다름없었다. 시장에서 물건을 깎다가도 그녀는 ‘그가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하고 깎는 일을 그만두었고, 남과 다툰 뻔하다가도 그를 떠올리면 분노가 축축하게 가라앉았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 화요일 …… 토요일을 보내는 사이에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조금씩 연금(鍊金)시켜, 이윽고 일요일이 되었을 때 그녀의 손길이 닿기만 해도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빛 물이 들었다.

문자는 그가 미처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이미 그의 밧걸음 소리를 알아듣고 미리 나가서 그를 맞아들였다. 그녀가 그의 옷을 벗기면 그 옷이 금빛으로 물들었고, 양말을 벗기면 양말이 그러했다.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를 가져와 그의 밧을 씻기면 그 밧 역시 금빛이 났다.

그녀가 그를 위해 마련한 저녁상은, 가난한 자가 일주일 내내 거친 술과 젖은 걸레로 마룻바닥을 힘들여 닦아서 번 돈으로 ㉠ 성전(聖殿) 앞에 켄 양초를 사는 것같이 마련된 것이었다.

한수는 그녀가 살코기를 집어 줄 때마다 입을 딱 벌려 받아먹기만 할 뿐, 자기도 그녀의 입에 그 고기를 먹여 주려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다. 한수의 마음은 무디고 이기적이어서 온 방 안에 가득 찬 금빛 을 보지 못했고, 가만히 있어도 그 침묵이 노래임을 알지 못했다. 심지어는 그녀의 몸을 만지면서도 ㉡ 잘 익은 과육에서 나는 것과 같은 향기가 자기 손가락에 묻어나는 것도 몰랐다.

- 서영은, 「먼 그대」 -

17. 위 글의 ‘문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변의 평가에 좌우되면서 주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 ② 소극적이고 유약한 듯하지만 내면의 힘을 간직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순수한 삶을 타인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④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채 이웃들과의 소통을 갈망하고 있다.
- ⑤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

19. 위 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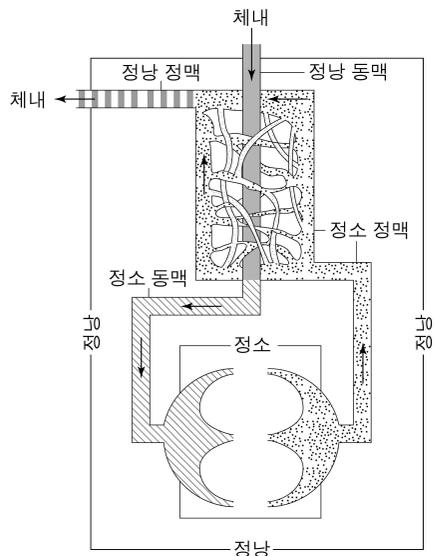
- ① 주변 인물의 시선을 통해 ‘문자’의 심리 변화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 ② 현재와 과거의 교차를 통해 과거의 특정한 시간이 애상적으로 회고되고 있다.
- ③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눈을 통해 ‘문자’의 사랑이 환상적으로 미화되고 있다.
- ④ ‘한수’의 성격에 대한 부정적 서술을 통해 ‘문자’의 사랑에 내재된 시련이 암시되고 있다.
- ⑤ 사실적으로 묘사된 ‘문자’의 열악한 생활공간을 통해 사회에 대한 주인공의 좌절감이 표출되고 있다.

[평가] 국내 현대소설의 일부를 지문으로 제공하고 문학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관한 문제들을 던지고 있다. 법학적성에 관한 언어이해 지문은 객관적인 독해와 추론을 담보하는 ‘비문학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문학작품의 감상에 관한 이러한 문제는 적절하지 않다. 이 문제들은 변별력의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 정답:②④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포유동물의 정소(精巢)는 초기 발생 단계에서 난소와 동일한 부위인 복부 내 등 쪽에서 형성된 후, 차츰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복부 밖에 있는 정낭(精囊)으로 들어오게 된다. 정소의 온도는 체온보다 낮는데, 이는 열에 약한 생식 세포를 체온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정자를 생산하는 데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한편 다른 체내 기관들처럼 정소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혈액을 공급받다 보면 혈액이 지닌 열까지도 정소로 운반되기 때문에 정소의 온도가 상승하여 체온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소는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의 온도를 체온보다 낮게 유지할 수 있는가?

1998년에 발표된 역류 열전달(逆流熱傳達) 이론은 정소 온도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 준다. 정소 정맥에는 정낭 동맥을 감싸고 있는 망사 구조 부분이 있는데, 역류 열전달 이론에서는 이 망사 구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열은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로 전도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열이 전도될 때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열의 양은 접촉하는 표면적에 비례한다. 정낭 동맥을 감싸고 있는 망사 구조는 혈관의 표면적을 넓혀서 효율적으로 열을 전달한다. 그러므로 정소에서 나온 정소 정맥의 혈액이 체내에서 들어오는 혈액으로부터 열을 흡수함으로써 정낭 동맥의 혈액 온도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여 차가워진 정소 동맥 혈액에 의해 정소 온도가 체온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이 이론은 여러 동물 실험을 통해 지지되었는데, 정소가 정낭 속에 있는 양(羊)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정낭 동맥에서 ㉠  $39^{\circ}\text{C}$ 였던 혈액 온도가 정소 동맥에서는 ㉡  $34^{\circ}\text{C}$ 로 낮아졌다가, 정소를 통과한 후 정소 정맥에서는 ㉢  $33^{\circ}\text{C}$ 가 되고 정낭 정맥에서는 ㉣  $38.6^{\circ}\text{C}$ 로 다시 높아짐을 보여 주었다.

역류 열전달 이론은 정소로 유입되는 혈액의 온도를 체온보다 낮춤으로써 정소의 온도를 체온보다 낮게 유지하는 방법은 제시하였으나 어떻게 정소 온도를 체온보다 낮추는지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은 2007년에 발표된 스칸단 연구진의 가설에서 찾을 수 있다. 스칸단 연구진은 정낭이 열을 발산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적으로 세포 분열 과정에서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정소에서 발생한 많은 열이 정낭 표면을 통해 방출됨으로써 정소 온도가 체온보다 낮아진다고 하였다. 번식력을 갖춘 동물의 정소는 지속적인 세포 분열을 통해 매일 수억 개의 정자를 생산하므로 많은 열이 발생할 것인데, 정소의 온도가 높아지면 생산되는 정자의 수가 감소하고 심한 경우 정소가 손상될 것이 예상된다. 실제로 복부 밖에 정소가 있는 동물이 기온이 매우 높은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배출 정자 수가 감소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배출 정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가설은 정소 내 온도가 상승하거나 더운 기온에 노출되면 정낭의 피부 표면적이 커지고 정낭 근육에 의해 정소가 몸에서 멀어지게 되며, 정소의 온도가 하강하거나 낮은 기온에 노출되면 정낭 피부 표면적이 작아지고 정낭 근육에 의해 정소가 몸에 가까워진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이와 같은 기제에 따라 정소에서 발생한 열이 정낭으로 전도되고 이 열이 체외로 방출되면 정소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정낭의 표면 온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스칸단 연구진은 주장한다. 또한 이 가설은 동물의 정소 위치와 번식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연구 결과를 통해 힘을 얻는다. 예를 들어 박쥐의 정소는 정상시에는 복부 내에 존재하다가 짝짓기를 하는 계절이 되면 정낭으로 내려온다. 동면 포유동물의 경우 번식을 하지 않는 동면 기간 동안 정자 생산이 감소하는데 이때에는 정소가 정낭에서 복부로 이동하고 동면이 끝나면 다시 정낭으로 내려온다.

역류 열전달 이론은 정소의 온도를 체온보다 낮게 유지시키는 열역학적 기제를 제시하였으며, 스칸단 연구진의 가설은 정소에서 발생하는 열을 정낭을 통해 발산함으로써 정소의 온도를 체온보다 낮추는 기제를 제시해 주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역류 열전달 이론과 스칸단 연구진의 가설은 어떻게 정소가 정자를 생산하는 데 최적의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준다.

3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정낭 근육은 정낭 내에서 정소의 움직임에 관여한다.
- ② 정소의 온도는 생산되는 정자의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③ 열의 전도는 정소 온도의 항상성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④ 역류 열전달 이론은 정소로 혈액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기제를 설명한다.
- ⑤ 스칸단 연구진의 가설에 따르면 정소의 온도 조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정낭이다.

37. 스칸단 연구진이 제안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동면 포유동물의 동면 중과 동면 후의 정낭 표면 온도를 비교한다.
- ㄴ. 번식력을 갖춘 양과 그렇지 못한 새끼 양의 정낭 표면 온도를 비교한다.
- ㄷ. 박쥐의 짹짹기 계절 동안과 짹짹기 계절 후의 정낭 표면 온도를 비교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평가] 생리학이나 생물학을 공부한 응시자들에게는 지문이 친숙하여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을 전공한 응시자들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한 소재를 선택했다. 또 과학적 추론을 요구하는 매우 난해한 문제로서 변별력도 상당히 낮은 문제이다. 정답:④⑤

## 2. 추리논증 영역

### (1) 적절한 문제 유형

14. 다음 [A]에 들어갈 ‘을’의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자신에게 별다른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부도덕하기 때문이다.

을 : 법은 도덕을 반영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거나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형벌권을 남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갑 : 국가가 부도덕한 행위를 금지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권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국가는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죽거나 다친 의사상자(義死傷者)에 대해서도 보상하고 있다.

을 :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법률로써 도덕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처벌과 보상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다.

갑 : 그렇지 않다. 부도덕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은 도덕의식을 고양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을 :  [A]

- ① 지배적인 도덕에 반하는 법률도 일단 제정되면 구속력을 갖는다.
- ② 국가는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처벌하여야 한다.
- ③ 법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고 또한 분리되어야 한다.
- ④ 지배적인 도덕에 반하는 법률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 ⑤ 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평가] 법적 논변을 소재로 하여 논쟁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관성 있게 자신의 주장을 펴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로 법학적성시험에 적절하고 변별력도 양호한 문제이다. 다만 선택지문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답:⑤

16. 다음 글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 A법에서는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나 기재 사항의 변경을 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 시행 전에 상용 또는 문화 목적으로 발급된 일반 여권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유효확인을 받은 것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권의 발급과 유효 확인은 다른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여권 발급과 유효 확인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에 의한 유효 확인 신청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A법의 여권 발급 신청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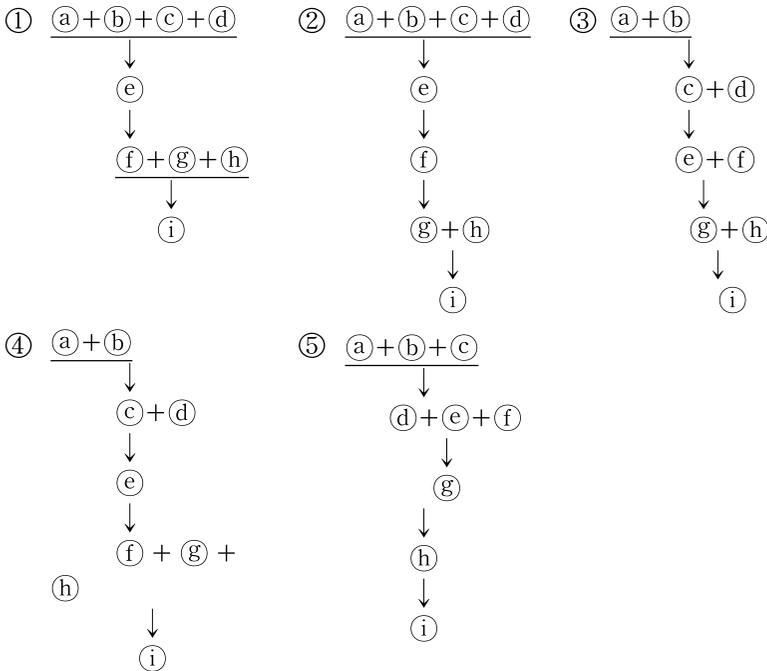
○ B법에서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을 보호하며, 저작권 침해로부터 구제받기 위하여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권리 침해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모습을 구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B법 다른 조문에서는 B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을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복제 행위 외에 배포 행위에 의해 침해하는 경우까지 B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 ① 법률의 자구를 가능한 의미 내에서 그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법의 의미 내용은 그 자구만이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취지, 연혁 등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 ③ 법조문은 자구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유사한 사실에 까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④ 법조문에 불확정 개념이나 막연하고 지나치게 다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추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 ⑤ 자구의 문자적 의미보다 좁게 법을 해석하여 법률의 자구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입법자의 의사를 발견해야 한다.

[평가] 두 개의 판례에서 일부 인용한 제시문으로 사용하고, 이들 판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석방법을 묻고 있다. 제시문의 논리적 구조와 전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다. 다만, 변별력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 정답:③

18. 다음 논증의 구조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단, 기호 ‘↓’는 글쓴이가 위 진술을 바로 아래 진술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호 ‘+’는 앞위의 진술들이 합쳐짐으로써 그 진술들이 지지하는 진술에 대한 근거를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는, 제한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식량은 기껏해야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인구의 증가율과 식량의 증산율의 차이를 피할 수 없다. ㉣사람이 사는 데 식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구의 증가율과 식량의 증산율을 같게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인구는 식량 부족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인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있는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완전한 사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성원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완전한 사회란 있을 수 없다.



[평가] 논증을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로 법학적성시험에 적합한 문제유형이지만, 난이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정답:④

19. 다음 글의 주장들에 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 A : 자연의 질서 내에서 동물과 같은 비이성적 존재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이성을 가진 인간을 죽이는 것은 부도덕한 행동이지만 동물을 죽이는 것은 그렇지 않다. 동물은 인간의 자비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 그러나 모든 이성적 존재는 도덕적 대우를 받을 능력과 자격을 가진다.
- B : 동물의 권리도 인정되어야 한다. 다리 숫자상의 차이, 물속에 사는가 아니면 육지에 사는가에 따라 생기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차이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의 고통을 방관해도 좋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권리의 기준은 이성이 있고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음에 있다.
- C : 이성을 가진 모든 존재는, 그리고 오직 그러한 존재만이 권리의 주체이다. 따라서 인간은 다른 이성적 존재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무를 갖는다. 그런데 동물에 대한 가혹한 취급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인간 내부에 있는 ‘고통에 대한 공감(共感)’이 이러한 가혹한 취급을 통해 둔화되고 그리하여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 도덕성에 유용한 자연적 소질이 약화되거나 점차로 없어지기 때문이다.

- ① A의 논지에 따르면,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의 능력이 동물과 인간 간의 차별을 정당화하지만, B의 논지에 따르면, 인간에게도 있는 동물의 능력이 동물의 권리 인정의 근거이다.
- ② B의 논지에 따르면, 이성은 있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있을 경우 이 존재가 동물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 ③ C의 논지에 따르면, 이성은 있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있을 경우 인간이 이 존재를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 ④ C의 논지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가혹한 취급은 ‘동물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동물과 관련된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 위반’이다.
- ⑤ A와 C의 논지에 따르면, 인간보다 탁월한 이성과 감성을 가진 어떤 존재가 있을 경우 이 존재가 이성을 가진 인간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평가] ‘동물해방’에 관한 세 가지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고, 각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법학적성 측정에 적절한 문제이다. 정답:②

32. ‘갑’과 ‘을’의 대화 중 자신의 기본 입장과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갑 : 가족 제도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법 제도의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

을 : 상속권은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왜 문제가 되지? 전통적인 가족관에 따라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가족 제도를 보호하려는 것인데 말이야. 상속권은 법률혼 배우자를 포함한 일정 범위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야.

(가) 갑 : 넌 지금 전통적인 가족 제도라는 측면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은 국가가 일괄적으로 가족 제도를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에 불과해.

(나) 을 : 법률혼과 사실혼 사이에 혼인 신고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차이점을 법에 이미 반영하고 있잖아. 이런 관점에서 법률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면 중혼(重婚)이 되지만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다) 갑 : 혼인 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사실혼은 차별 없이 보호되어야 공평한 것이야. 실제로 어떤 사람이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경우 사실혼이나 법률혼이나 배우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잖아.

(라) 을 : 그렇게 해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수도 있겠지만 상속권을 판단할 때 사실혼으로 인해 배우자라는 친족 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여 사실혼 배우자를 더 보호할 필요가 있어. 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를 피상속인의 특별한 연고자로 봐서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해.

(마) 갑 : 사실혼 배우자를 우회적으로 보호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야.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해서 재산을 직접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해.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평가] 서로 대립하는 의견들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관성 있는 논지를 전개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로 적절하나, 변별력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정답:④

## (2) 적절하지 않은 문제 유형

### 1. 다음 진술과 논리적으로 동등한 것은?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거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 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도 없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없다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 ②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
- ③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 ④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으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 ⑤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다.

[평가] 제시된 복합문장과 논리적으로 동치인 문장을 고르는 문제로 형식논리의 공식을 배운 응시자는 쉽게 풀 수 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추리논증 능력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정답:⑤





8. 다음 글로부터 제품 X와 Y에 대해서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품 X와 Y는 원료 a, b, c, d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원료를 1g 단위로 사용하여 전체가 10g이 되도록 섞어서 만들었다. 원료들이 섞이면 a와 b는 질량비 1:1로 반응하고 c와 d도 질량비 1:1로 반응하는데, 반응하는 물질 중에서 어느 한쪽 원료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이 반응이 일어난다. 이 외의 경우에는 어떤 원료들 사이에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제품의 부피는 반응 전 원료들의 총 부피에서 반응한 원료 2g당 1mL씩 감소한 값이 된다. 제품의 이익은 사용된 원료에 따라 1g당 a는 10원, b는 20원, c는 100원, d는 200원 발생한다.

- X의 부피는 사용된 원료의 총부피보다 5 mL 작고, 이익은 150원 발생했다.
- Y의 부피는 사용된 원료의 총부피보다 2 mL 작고, 이익은 690원 발생했다.

<보 기>

- ㄱ. X에 a가 사용되었다.
- ㄴ. X에 세 가지 원료만이 사용되었다.
- ㄷ. Y에 a는 3g만 사용되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평가] 수리추리의 공식에 의존하는 문제로서 법학적성을 측정하기에는 부적절하고, 변별력도 높지 않은 문제이다. 정답:①

11. 다음은 지표면에서 바람이 부는 원리에 관한 어떤 가설이다. 이 가설에 의해 잘 설명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표면 온도가 서로 다른 인접한 두 지역에 공기가 정체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온인 지표 위의 공기는 고온인 지표 위의 공기보다 더 차가워진다. 그 결과 전자의 공기 밀도는 후자의 경우보다 커진다. 밀도가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수평으로 맞닿게 되면, 밀도가 큰 공기가 작은 공기의 아래로 파고들게 된다.

—<보 기>—

- ㄱ. 낮에 지표 온도가 높은 평지로부터 지표 온도가 낮은 계곡 지역을 향해 부는 바람이 관측된다.
- ㄴ. 겨울철에 시베리아에 정체하여 냉각된 찬 공기가 해수면 온도가 높은 남쪽 해상을 향해 분다.
- ㄷ. 낮에 해안 지역에서 육지로 부는 해풍이 관측되는데 이때 해수면 온도가 육상의 지표면 온도보다 낮다.
- ㄹ. 봄철에 따뜻한 남쪽 해안에 정체하여 따뜻해진 공기가 저온의 고위도 육상을 향해 부는 바람이 관측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평가] ‘대기과학’에 관한 지식이 있는 응시생은 제시문을 읽지 않고도 정답을 수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이다. 선지식이 없는 응시생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문제이고, 변별력도 양호하지 않은 문제이다. 정답:④



26. 다음 제도 하에서 현재 나이 10세인 수험생이 축년(丑年)인 올해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한 번 이상 시험에서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최단 기간에 제 3차 시험까지 합격했을 경우에 대하여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거 시험 제도에 따르면 제 1차 시험은 자년(子年)과 오년(午年)에 『시경』 등 세 과목을, 묘년(卯年)에는 『주례』 등 네 과목을, 유년(酉年)에는 『좌씨전』 등 세 과목을 치른다.  
 제 2차 시험은 미년(未年)에 주희 등에 대한 여섯 과목을, 술년(戌年)에는 『오기』 등 두 과목을, 축년(丑年)에는 『순자』 등 네 과목을, 진년(辰年)에는 『관자』 등 네 과목을 치른다.  
 제 3차 시험은 해년(亥年)에 『삼사』 등 세 과목을, 인년(寅年)에는 『삼국지』 등 세 과목을, 사년(巳年)에는 『오대사』 등 두 과목을, 신년(申年)에는 『송사』 등 두 과목을 치른다.

- 수험생은 매년 한 과목만 공부할 수 있지만,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해에는 공부할 수 없고, 한 과목은 반드시 1년간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다.
  - 자년과 오년에 치르는 제 1차 시험을 제외하고 어떤 시험에서든 과목이 겹치는 경우는 없다. 어느 해의 시험을 보든 그 시험 한 번만 합격하면 그 차수의 시험은 합격한 것이다.
  - 시험은 제 1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치러야 한다. 제 2차 시험은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바로 다음 해에, 제 3차 시험은 제 2차 시험에 합격한 바로 다음 해에 응시해야 한다. 어느 차수에서든 시험에 떨어지면 제 1차 시험부터 다시 치러야 한다.
- |      |   |   |   |   |   |   |   |   |   |   |   |   |
|------|---|---|---|---|---|---|---|---|---|---|---|---|
| 연도   | 자 | 축 | 인 | 묘 | 진 | 사 | 오 | 미 | 신 | 유 | 술 | 해 |
| 차수   | 1 | 2 | 3 | 1 | 2 | 3 | 1 | 2 | 3 | 1 | 2 | 3 |
| 과목 수 | 3 | 4 | 3 | 4 | 4 | 2 | 3 | 6 | 2 | 3 | 2 | 3 |

- ① 『시경』을 공부했을 것이다.
- ② 『순자』를 공부했을 것이다.
- ③ 제 1차 시험에서는 한 번만 떨어졌을 것이다.
- ④ 제 3차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나이는 23세일 것이다.
- ⑤ 두 과목만 공부하면 합격하는 시험을 치렀을 것이다.

[평가] 법학적성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수리추리 문제이다. 난이도가 너무 높아 응시생들이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 변별력을 갖기 어렵다. 정답:⑤





40. 다음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지반의 융기와 침강은 고려하지 않는다.)

신생대 제4기 플라이스토세에는 수십 차례 빙기(氷期)와 간빙기(間氷期)가 반복하여 나타났다. 약 12.5만 년 전에 시작된 최후 간빙기의 기후는 오늘날과 대체로 비슷했다. 최후 빙기가 시작된 것은 약 7.5만 년 전이었고, 약 6만 년 전까지는 대륙 빙하가 크게 확장되었다. 빙하는 약 4만 년 전부터 기온의 상승으로 어느 정도 후퇴했다가 약 2.5만 년 전에 다시 크게 확장되어 북아메리카에서는 북위 39°, 유럽에서는 북위 52°까지 남하했다.

1만 년 전 최후 빙기가 끝나고 현재까지의 기간은 현세라고 불린다. 현세에 들어와서도 기온 변화에 따라 고산 지대의 곡빙하(谷氷河)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약 6,000년 전에는 세계의 기후가 지금보다 따뜻했다. 유럽에서는 연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2~3℃ 높았고, 그 영향은 해수면에 반영되었다.

—<보 기>—

- ㄱ. 약 6만 년 전 당시의 해안선은 현재의 해안선보다 바다 쪽을 향해 더 나아갔을 것이다.
- ㄴ. 약 2.5만 년 전에 저위도 지역 하천의 평균 길이는 현재보다 더 길었을 것이다.
- ㄷ. 약 6,000년 전 당시의 곡빙하는 현재의 곡빙하보다 낮은 고도에서도 형성되었을 것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 ④ ㄱ, ㄴ                                  ⑤ ㄴ, ㄷ

[평가] 빙기와 간빙기의 특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나타나는 지형과 기후의 변화를 추론하게 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특정 분야(자연지리학)를 공부한 응시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문제이고, 변별력도 낮은 문제이다. 정답:④

### 3. 논술 영역

#### (1) 1번 문제

소위 “놀라운 가설”에 따라 의식 현상을 다루고 있는 제시문과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제시문을 요약하는 문제이다. 두 제시문의 논지와 그 차이를 파악하고 400~500자로 요약하는 이 논술 문제는 무난한 문제이긴 하지만, 법학적성시험의 논술 영역 문항수와 시험시간을 줄일 경우에는 2번이나 3번 문항의 형식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

#### (2) 2번 문제

동·서양의 인문학적 텍스트를 분석·추론하고 비판·평가하는 문제이다. 한국과 서양의 고전들을 하나의 제시문에 출제함으로써 동·서양의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응시생의 견해와 논거 제시능력을 측정하는데 적절한 논술 문제이다. 하지만 많은 내용을 600~800자 분량으로 요약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을 준다.

#### (3) 3번 문제

해외 시사주간지에 실린 글과 외국 정치학자의 학술적 글을 제시문에 안에 함께 나열하고, 이 두 글의 논지를 발전시켜 ‘인도적 개입’ 문제에 관한 응시생의 견해에 적용해 보게 하는 문제이다. 화제에 대한 선지식이 답안 작성에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제시문을 비교적 평이하게 설계하다보니, 인도적 개입에 대한 견해들과 논거들이 제시문에 모두 나타나 있어 응시생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스스로 구성해가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다소 미흡하다.

## IV. 개 선 방 안

법학적성시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론에서도 지적했듯이, 무엇보다 ‘법학적성’이 무엇이나에 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LSAT를 모델로 하여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의 세 부분으로 시험을 구성하더라도, 이들 각 영역의 문제 하나하나를 출제할 때는 법학적성과의 관련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학입시를 위한 언어이해 문제 혹은 한국어 검증시험을 위한 언어이해 문제는 법률전문가의 소양과 적성을 측정하는 언어이해 문제와는 다르다.

LEET가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들이 응시하는 시험이라고 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지문이 골고루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공계 출신 응시생이 학부에서 물리학이나 건축학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는 것은 그 응시자의 학부 성적(GPA)을 통해 검증되어야지 법학적성시험의 고득점으로 평가받을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응시생이 이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은 법학을 공부하여 법률전문가가 되기 위해서이지 물리학이나 건축학을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부에서 어떠한 전공을 한 사람이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이들은 법에 관한 문헌을 해독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법학지식이 아니라—을 갖추고 있음을 검증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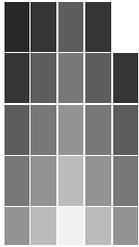
이점은 너무나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간과되고 있다. 법학적성시험에서 법에 관한 지식을 테스트하지 말라는 것이 법학수학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선발하는 시험을 시행하라는 것은 아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배우려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에 이러한 법에 관한 소양과 수학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3년 수학과정은 이러한 소양과 능력까지 길러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따라서 법학적성을 측정하는 시험에는 법과 관련된 텍스트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법학과 사회과학에 관한 텍스트, 전문법률용어가 없는(혹은 전문법률

용어에 대한 해설이 첨부된) 판결문의 일부, 일반적인 계약서나 법률서식 등도 사용되어야 한다.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큰 순수문학이나 인문학 텍스트의 사용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 자연과학이나 공학관련 텍스트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 법률전문가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공학적 판단이나 자연과학적 판단은 그 분야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출제위원들이 선정되어야 한다.

LSAT가 LEET의 절대적 모델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법적 추론과정(legal reasoning)이 매우 중요한 영미법전통의 법학교육과 성문법 텍스트의 해석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에서 논리적 추론능력이 갖는 함의는 다르다. 또한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응시하는 LSAT와 응시자의 약 30%가 법학을 전공한 이들인 LEET의 상황은 현격히 다르다. 법학적성을 측정하는 시험에서 법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학생과 3~4년간 혹은 그 이상 법학을 전공한 학생을 동일한 문제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우선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학적성을 측정하는 문제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LEET를 개선하고, 법학전공자는 LEET 점수가 아닌 법학부의 성적(GPA)으로 법학적성을 판단하는 이원화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이원화는 물론 법령개정을 수반하는 장기적 과제가 될 것이다.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의 법학적성시험의 활용

---

- I. 서론
- II. 법학적성시험
- III. 2009학년 입학전형
- IV. 외국의 사례
- V. 결론-전망 및 제언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의 법학적성시험의 활용

## I. 서 론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전형을 할 때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의 결과 및 외국어 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안된다(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 여기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 법학적성시험이다. 법학적성시험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시험시행의 지정기관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동법 제24조). 다시 동 협의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시험을 출제하고 있다.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은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법학적성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법학적성시험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법학적성의 개념이 정립되고 그것을 구체적인 문항으로 묻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제2회 시험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학적성시험제도는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 지난 2009학년도 신입생 전형 시 각 대학원은 외관상 별 무리 없이 입학전형작업을 완료하였다. 2008년 치러진 법학적성시험이 법학전문대

학원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적지 않은 세월이 흘러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제도적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2009학년도 입학 전형 시 입학적성시험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돌아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 참고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본다. 그리고 2010학년도 입학전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각 대학원의 동향과 함께 몇 가지 개선할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Ⅱ. 법학적성시험

### 1. 시험의 구성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90분, 5지선다, 40문항), 추리논증(120분, 5지선다, 40문항) 및 논술영역(150분)으로 구성된다.

언어이해영역의 시험은 국어,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분야의 다양한 학문적 또는 학제적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언어이해 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리논증영역의 시험은 사실이나 견해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일상적 소재와 논리학, 수학,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능력과 논증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술영역의 시험은 예비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분석적, 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글쓰기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논술영역의 제시문은 인문학,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선정한다.<sup>1)</sup>

## 2. 2009학년 시험

이하의 내용은 2008.8.28 치러진 제1회 법학적성시험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료에 기초한 것이다.<sup>2)</sup>

### (1) 언어이해

국어,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등 5개 분야에서 총 40개의 문항이 출제되었다. 이 중 국어 분야를 제외한 4개 분야는 지문을 기본으로 문항이 출제되었다. 지문을 가진 각 문항 세트는 지문 특성에 따라 종합적인 독해능력을 평가하거나 또는 특정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국어분야에서는 어휘관계와 용법을 중심으로 한 어휘문항과 표기 및 호응 일치를 다룬 어법문항을 개발하였다.

인문분야의 사학지문에서는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상소문을, 철학지문에서는 알베르트의 ‘가류주의’를 소개한 글을 제시하였다.

사회분야의 언론학 지문에서는 ‘언론의 파수견 기능과 표현의 자유’를, 정치학 지문에서는 ‘정당 수의 산정과 정당체계 분석’을, 경영학 지문에서는 ‘한국계 이민 사회와 중간 상인’을, 그리고 법 관련 지문에서는 ‘합의의 구속력’을 다루었다.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09학년도 제1회 법학적성시험 업무처리지침(안), 2008.7, pp.77~78

2) 메가로스쿨, ‘2008년 8월 28일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출제의 기본방향(보도자료)’ 참조

과학기술 분야의 생물학 지문에서는 생물의 항상성 유지시스템의 기제 중 하나인 ‘역류 열전달 이론 및 스칸담 팀의 가설’을 지질학 지문에서는 판구조 이론에 기초한 ‘한반도 내의 대륙 충돌대 존재가능성론’을, 기술공학에서는 ‘VOD의 여러 방법’을 다루었다.

문학예술분야에서는 문학작품으로 서영은의 ‘먼 그대’와 괴테의 ‘파우스트’를 선정하였고, 미학지문에서는 헤겔의 미학과 루만의 체계이론 미학을 다루었다.

<표 1> 언어이해 문항 분류표

	어휘	분석	추론	비판	창의	합계
국어	4					4
인문		3	2	1		6
사회		5	5	1	1	12
과학기술		3	5		1	9
문학예술		1	4	2	2	9
합계	4	12	16	4	4	40

## (2) 추리논증

추리력을 묻는 문항들을 일상어를 도구로 삼아 추리하는 언어추리를 근간으로 하되, 표와 그래프 등 수치적으로 주어진 자료들을 해석하고 추리하는 수리 추리, 그리고 인문, 사회, 과학기술 분야의 개념, 가설, 이론, 실험 등의 소재를 가공하여 특정한 상황에서의 복합적인 추리를 요구하는 논리게임문항들이 포함되었다.

논증력을 묻는 문항들은 주어진 논변들을 분석하여 주장과 논거들을 찾아내고 그 논리적 관계들을 분석하는 문항, 지문에 명시되지 않은 가정과 전제들을 추리하여 논변을 재구성하는 문항, 주어진 논변이나 논쟁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론하는 문항, 가설과 사례의 논리적 관계를 판단하는 문항, 쟁점에 대한 다른 주장들에서 공통 가정을 찾거나 차이점, 상충점 등을 파악하는 문항 등 논증을 다루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인지활동이 골고루 측정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표 2> 추리논증 문항 분류표

	추리			논증			계
	언어추리	수리추리	논리게임	분석 재구성	비판 반론	판단 평가	
논리학 수학		3	2				5
인문학	1	1	2	3		1	8
사회과학	2	2	1		1	5	11
과학기술	1	3	1	2		2	9
일상적 논변					2	1	3
법적 논변				2		2	4
	4	9	6	7	3	11	40

### (3) 논술

논술영역은 전체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복합적 인지활동 유형의 성격을 지닌다.

1번 문항은 '요약 종합'형이지만 '논증 분석 및 추론'의 요소도 일부 포함한다. 예비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종합적 요약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응시생은 의식현상의 설명에 관한 두 지문의 논지와 그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해진 분량의 글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2번 문항은 '논증 분석 및 추론'형이지만 '논증비판 및 평가'의 요소도 일부 포함한다. 제시문에 대한 정밀한 독해능력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논증 분석 및 추론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응시생은 제시문 (나),(다)의 내용 중에서 각각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추출한 후 이 논거를 제시문 (가)의 견해에 대한 비판 혹은 옹호에 적용 전이하는 사고능력을 정해진 분량의 글로 보여 주어야 한다.

3번 문항은 '적용 발전'형이지만 '요약 종합'과 '논증비판 및 평가'의 요소도 일부 포함한다. 다른 사람의 입장과 논점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견해가 들어간 논변을 구성하는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응시생이 자신의 견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화제에 대한 선지식이 답안 작성을 위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문항을 설계했다.

### 3. 성적표 양식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의 시험결과에 대해서는 각 영역 모두 평균 50점, 표준편차 10인 표준점수로 환산한 점수(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100점까지 분포)와 백분위 점수를 제공한다. 논술영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하는 채점기준에 의거하여 각 대학교에서 채점한다. 아래는 법학적성시험 성적통지표의 예시이다.

<표 3> 법학적성시험 통지표 예시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1234567	홍길동	861234-1087654
구분	언어이해	추리논증
표준점수	75.3	60.5
백분위	93.4	75.7

### Ⅲ. 2009학년 입학전형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009학년 신입생 입학 전형 시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상의 규정 및 그에 따른 설치인가의 과정에서 각 대학교가 계획한 바에 따라 법학적성시험의 성적을 반영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도입되는 여건 하에서 2008년 8월 치러진 제1회 법학적성시험은 부족한 점이 적지 않았다.<sup>3)</sup>

각 대학교는 법학적성시험의 결과를 중요한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자가 조사한 바로는 세 개의 영역 중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이 가장 중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 중 백분위점수가 더 크게 반영되었다. 논술영역은 상대적으로 덜 활용되었다. 논술영역의 반영 정도는 대학에 따라 큰 편차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상 논술영역도 법학적성시험의 한 부분이므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3) 비록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을 위한 본 연구(2008.4)' 및 '법학적성시험 개발 시행을 위한 후속연구(2008.8)'를 한 바 있다.

## 1. 대학별 기준

### (1) 개요

각 대학교가 실제 공고한 입학전형기준상 배점표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 대학교는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학적성시험의 결과,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전자를 의무적 반영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들은 아래 표에서 (1) 및 (4)에 반영되어 있다. 후자는 임의적 반영요소라고 할 것인데 이는 (2) 및 (3)에 반영되어 있다.

아래 표에서 의무적 반영요소인 LEET(1) 바로 다음에 심층면접(2)을 둔 것은 LEET 중 논술시험자료를 심층면접(4)에 반영하는 대학교가 적지 않게 있으며 이는 양 요소가 상호연관성 더 나아가 대체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어서 바로 서류평가(3)을 둔 것은 심층면접은 다양한 방법의 면접을 편의상 하나의 용어로 표기한 것인데 그러한 다양한 면접의 과정에서 서류평가결과가 점수화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서류평가는 자기소개서를 기본적인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정량화된 의무적 평가요소로는 나타나기 어려운 종합적인 자질을 정성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다음 기타(4)는 의무적 평가요소인 학부성적과 영어 점수의 합계이다. 이들은 다른 평가요소와의 내용적 관련성이나 대체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들이다. 또한 이들은 아래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실질반영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측문되는 항목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4) 대학에 따라서는 일반면접, 구술면접, 서면면접, 대면면접, P/F면접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그 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심층면접의 용어를 활용한다.

<대학교별 입학전형 요소의 구성>5)

<표 4> 대학교별 입학전형 요소의 구성 (단위 : %)

대학교	언어· 추리	논술	LEET계 (1)	심층면접 (2)	(1)+(2)	서류평가 (3)	(1)+(2)+(3)	기타 (4)6)
강원	25	16.6	41.6	0	41.6	25	66.6	33.4
건국7)	15	20	35	10	45	10	55	45
경북	33	25	58	25	83	0	83	17
경희8)	25	15	40	25	65	10	75	25
고려9)	15	0	15	40	55	10	65	35
동아10)	30	0	30	10	40	0	40	60
부산	25	20	45	20	65	10	75	25
서강	20	20	40	13.3	53.3	13.3	66.6	33.4
서울11)	16	0	16	40	56	24	80	20
서울시립	30	10	40	20	60	20	80	20
성균관	25	10	35	20	55	15	70	30
아주12)	40	0	40	20	60	0	60	40
연세13)	20	10	30	15	45	15	60	40
영남14)	30	0	30	20	50	10	60	40
원광15)	0	25	25	25	50	20	70	30
이화16)	30	15	45	20	65	20	85	15
인하	25	5	30	20	50	10	60	40
전남	20	20	40	20	60	0	60	40
전북	30	15	45	20	65	0	65	35
제주	40	4	44	8	52	8	60	40
중앙	30	30	60	20	80	0	80	20
충남17)	50	0	50	30	80	0	80	20
충북18)	32	8	40	20	60	0	60	40
한국외국어	20	20	40	20	60	0	60	40
한양19)	30	10	40	0	40	20	60	40
평균	26.2	11.9	38.2	19.3	57.4	9.6	67.0	33.0

5) 필자가 아래의 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 대학교별 입학전형요강 중 가장 대표성 있는 부분을 추출하였다. 다만, 각 대학교별 다양한 입학전형요소를 표로 정리하여 비교하는 과정에서 일부 생략되고 축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6) 학부성적과 영어 점수의 합계로 볼 수 있다.

7) 최종 합격자는 2단계 점수만으로 선발, 서면질의방식이 채택되었음

8) 언·추 백분위만 반영

## (2) LEET

언어이해·추리논증(이하 '언어·추리') 및 논술 성적의 반영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언어·추리

언어·추리의 25개교의 평균 반영비율은 26.2%이다. 16개 대학교가 총점의 20~30%를 배정하였다. 30%를 초과하는 대학교는 충남대학교(50%), 아주대학교(40%), 제주대학교(40%), 경북대학교(33%), 충북대학교(32%)이다. 20%를 하회하는 대학교는 서울대학교(16%), 건국대학교(15%), 고려대학교(15%), 원광대학교(0%)이다. 원광대학교는 언어·추리의 합계 백분위 점수가 전국 50% 이상이 되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데 그치고 그 이상 언어·추리 점수를 입학사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 (나) 논술

논술의 25개교 평균반영비율은 11.9%이다. 13개 대학교가 총점의 10~20%를 배정하였다. 20%를 초과하여 배정한 대학교는 중앙대학교(30%), 경북대학

- 
- 9) 면접은 2일에 걸쳐 서면 20%, 대면 20%로 운영
  - 10) 논술은 심층면접 시 참고. 심층면접은 20% 반영 경우도 있음
  - 11) 논술은 심층면접 시 활용. 우선선발의 경우 언·추 26.6%
  - 12) 언·추 백분위만 반영
  - 13) 논술은 1단계에 반영
  - 14) 논술은 심층면접에 활용, 집단토론이 가미됨.
  - 15) 언·추는 백분위 50% 이상이면 응시자격 부여
  - 16) 논술은 나군만 반영
  - 17) 논술은 심층면접에 활용
  - 18) 논술은 1단계에 반영, 언·추 백분위만 반영, 집단토론이 가미됨.
  - 19) 나군 일부 심층면접 15% 반영

교(25%), 원광대학교(25%)이다. 10%를 하회하는 대학교는 9개교이다. 그 중 6개교가 논술의 점수를 독립적인 점수로 활용하지 않았다. 이 중 고려대학교와 아주대학교는 논술점수를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대학교, 동아대학교, 영남대학교 및 충남대학교는 논술점수를 심층면접에 참고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활용하였다.

논술을 반영한 학교의 대부분이 그것을 제2단계에 활용하였다. 2개 대학만이 그것을 제1단계에 활용하였다.<sup>20)</sup>

### 3) 심층면접

심층면접의 25개교 평균반영비율은 19.3%이다. 16개 대학교가 10~20%를 반영하였다. 특히 20%를 반영한 대학교가 11개에 이른다.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는 심층면접의 배점이 40%에 이르는 반면 강원대학교와 한양대학교는 0%이다.<sup>21)</sup>

#### (가) 서류평가

서류평가의 25개교 평균반영비율은 9.6%이다. 12개교가 10~20%를 반영하였다. 강원대학교(25%) 및 서울대학교(24%)가 가장 많은 수준으로 반영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아예 반영하지 않은 대학교가 9개 대학교(경북, 동아, 아주, 전남, 전북, 중앙, 충남, 충북 및 한국외국어)에 이른다는 것이다.

서류평가는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한 서류에 의한 평가점수이다. 서류평가는 논술 및 심층면접과 달리 학력이나 배경 등을 고려하여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이 크게 작용한다.

20) 연세대학교, 충북대학교

21) 한양대학교는 일부 전형상으로만 심층면접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

### (나) 기타-학부성적과 영어성적

두 성적 합계의 25개 대학교 평균반영비율은 33%이다. 대다수의 대학교가 20~40%의 범주에 들고 있다. 이화대학교(15%)와 경북대학교(17%)가 제일 낮은 수준이다. 동아대학교는 1단계와 2단계를 분리하여 평가하되 영어성적을 각 단계에서 모두 반영하여 영어성적을 학부성적 반영비율과 종합하여 합산할 때 60%에 이른다.

## 2. 분석

### (1) 개관

#### (가) 공표된 기준

언어·추리는 객관식의 평가인 반면, 심층면접과 논술은 주관식의 평가이다. 각 대학교의 입학전형기준을 살펴보면 논술은 심층면접과 상호보완적이거나 대체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논술의 반영비율이 가장 낮은 대학교와 높은 대학교간의 차이가 30%p에 이르고 심층면접의 그러한 차이가 40%p에 이르는데 두 요소의 합계치의 그러한 차이는 40%p인 점을 이를 말해준다.

서류평가는 학력 및 배경에 관한 평가이다.

학부성적과 영어성적은 실질 반영도가 매우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표〈대학교별 입학전형 요소의 구성〉에서 (1)+(2)+(3)을 분모로 하고 A(언어·추리), B[(논술)+(심층면접)] 및 C(서류평가) 각각을 분자로 한 것의 대학교별 수치는 아래 표〈각 대학교별 중점 반영 분야〉와 같다. 이 표는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성적들(학부성적과 영어성적을 제외)간의 비중이 각 대학교별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가늠해 보는데 유용하다.

<표 5> 각 대학교별 중점 반영 분야

대학교	A	B	C	계
강원	37.5	24.9	37.5	100
건국	27.3	54.5	18.2	100
경북	39.8	60.2	0.0	100
경희	33.3	53.3	13.3	100
고려	23.1	61.5	15.4	100
동아	75.0	25.0	0.0	100
부산	33.3	53.3	13.3	100
서강	30.0	50.0	20.0	100
서울	20.0	50.0	30.0	100
서울시립	37.5	37.5	25.0	100
성균관	35.7	42.9	21.4	100
아주	66.7	33.3	0.0	100
연세	33.3	41.7	25.0	100
영남	50.0	33.3	16.7	100
원광	0.0	71.4	28.6	100
이화	35.3	41.2	23.5	100
인하	41.7	41.7	16.7	100
전남	33.3	66.7	0.0	100
전북	46.2	53.8	0.0	100
제주	66.7	20.0	13.3	100
중앙	37.5	62.5	0.0	100
충남	62.5	37.5	0.0	100
충북	53.3	46.7	0.0	100
한국외대	33.3	66.7	0.0	100
한양	50.0	16.7	33.3	100
<b>평균</b>	<b>40.1</b>	<b>45.9</b>	<b>14.0</b>	<b>100</b>

위 표에서 다음과 같은 대체적인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A(언어·추리)를 상대적으로 중시한 대학교
  - 동아, 아주, 제주, 충남, 충북, 영남, 한양
- B[(논술)+(심층면접)]을 상대적으로 중시한 대학교
  - 원광, 전남, 한국외국어, 중앙, 고려, 경북
- C(서류평가)를 상대적으로 중시한 대학교
  - 강원, 한양, 서울, 원광, 서울시립, 연세

#### (나) 실질 반영도

위와 같은 분류는 각 대학교별로 공표한 입학전형기준상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반영하는가를 조감하는 데에는 유용할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공표된 입학전형기준만을 활용한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각 요소별 실질반영비율에 관한 정보가 없이는 실제 어떤 요소가 더 중점적으로 고려되었는지를 알기 곤란하다.

둘째, 원래 논술 및 심층면접의 평가에는 집중화경향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것을 상대적으로 중시한 대학교라 하더라도 다른 요소 즉 언어·추리 또는 서류 평가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서류평가에는 구조적인 편차가 나타나기 쉽다. 집중화의 경향도 나타날 수도 있겠다. 따라서 구조적인 편차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면 집중화의 경향이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황도 많을 것이다. 구조적인 편차가 있었는지는 본고의 목적을 벗어난다.

공표한 입학전형기준상 대학교간 상대적으로 중시한 요소에 차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한계를 감안한다면 대체적으로 언어·추리가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로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표 <각 대학교별 중점 반영 분야>에서 A(언어·추리)의 평균반영비율 40.1%로서 B[(논

술)+(심층면접)]의 45.9%에 미치지 못하지만 전자는 기본점수가 없는 반면 후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집중화경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각 대학교의 입학 전형 시 각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비율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실제 각 대학교는 요소별 실질반영비율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본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대학교는 실질반영비율을 조사하는 다른 방법을 고안할 수 없었다. 실질반영비율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정의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각 대학원별로 각 요소를 반영하는 방법도 가지각색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 불구하고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접촉한 몇 개 대학<sup>22)</sup>의 경우 언어·추리가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되었으며 논술은 상대적으로 심층면접 또는 서류평가에 비해 덜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부성적과 외국어성적은 가장 중요도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언어·추리가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일관된 점수체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외국어성적과 달리 법학적성과의 관련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2) 구체적 반영방법

### (가) 언어·추리

언어·추리 각 영역의 두 가지 점수 즉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대학은 없다. 기본점수를 부여하였는지와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 간 반영비율은 어떻게 한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량적 정보를 입수할 수 없다.

22) 본 연구를 위해 실명을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연구자의 개별적인 면담으로 파악한 일부 대학의 경우 대체로 기본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표준점수보다는 백분위 점수를 보다 중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표준점수는 특정 영역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표준편차가 클 경우 다른 영역의 점수에 비해 과도한 점수차를 주게 되는데 그것은 두 영역의 점수의 합계치로 수험생을 비교해야 하는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 (나) 논술

각 대학교는 논술 채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관성의 확보를 위해 한 문항을 한 명의 교수가 모두 채점하도록 하는 방법,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 여러 명이 채점한 점수를 평균하는 방법(동일한 문제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다른 전공교수가 채점하여 평균하는 방법 포함), 타대학교와 교차 채점하는 방법 및 채점자의 집중력이 유지되도록 하루씩만 채점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

한편 논술의 채점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채점기준이 제시되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숙지하고 채점에 반영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상세한 내용까지 지침을 주고 있지만 그것을 모두 숙지하여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채점자의 주관적인 관점과 체력적인 여건 등이 반영되어 평가되는데, 채점자도 그러한 한계에 따른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점수는 집중화된다.

## IV. 외국의 사례

### 1. 미국

미국에서 ABA인가를 받은 로스쿨은 입학 전형 시 모두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성적을 반영한다. 개별 대학별로 LSAT의 성적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고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료가 없다. 다만, 로스쿨이 고려하는 다양한 전형요소 중 LSAT성적과 학부성적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LSAT는 Reading Comprehension, Analytical Reasoning, Logical Reasoning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분의 시험시간은 35분이다. 이외에 1개의 dummy section(35분 소요)과 writing sample(35분 소요)이 추가된다. dummy section은 장래 시험문제의 개발을 위한 것이다. 수험생은 4개의 section 중 어느 것이 dummy인지 알 수 없다. writing sample은 채점되지 않으며 각 대학교에 보내질 뿐이다. 실제 그것을 채점하여 반영하는 대학은 없다.

수험생에게는 원점수를 120 ~ 180의 범위 안으로 전환한 점수가 통보된다. 이와 동시에 백분위 점수도 통보된다. 백분위 점수는 시험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의 해로부터 3년간의 시험성적분포 안에서의 개별 수험생의 해당 시험 성적이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sup>23)</sup>

### 2. 일 본

일본에서 법과대학원은 모두 입학 전형 시 법학적성시험성적을 반영한다. 법학적성시험은 대학입시센터와 법무연구재단에서 각각 실시한다. 두 시험의

23) www.lsac.org 참조

형식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법과대학원이 둘 중 하나의 성적을 응시생이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성적 모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교에 어려움은 없다. 대학입시센터의 시험은 객관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법무연구재단의 시험은 객관식 시험에 작문시험(40분)이 추가된다. 작문시험의 채점의 각 대학에 맡겨지며 반영여부도 각 대학의 자율사항이다. 거의 모든 대학이 작문시험의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다. 법무연구재단의 시험을 예로 시험의 구성을 보면, 제1부 논리적 판단력(24문), 제2부 분석적 판단력(23문), 제3부 장문독해력(24문) 및 제4부 표현력측정(작문시험)으로 되어 있다. 각 시험 모두 40분씩이다. 각 부의 점수는 각각 100점 만점이다. 각 부의 점수의 계산은 정답문항의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총 득점의 만점은 300점이다. 물론 대학입시센터의 점수와 비교하기 위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가 동시에 제공된다. 2008년 성적으로 보면 전체 수험생<sup>24)</sup> 8,920명의 평균점수는 155.4/300이고 표준편차는 33.9였다.<sup>25)</sup>

대학은 일반적으로 입학 사정 시 2차의 과정을 거쳐 합격생을 선발한다. 1차에서는 통상 법학적성시험성적 및 학부성적을 고려하게 된다. 대학에 따라 그것의 비중을 공개하기도 한다. 2차에서는 1차에서의 성적과 각 대학 독자적인 필기시험의 성적이 합산되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아래 2008년 신사법시험 합격자 100명 이상을 배출한 5개 학교의 입학 전형 시 1차와 2차의 전형요소를 소개한다.<sup>26)</sup>

24) 입학유자격수험자수 기준

25) [www.jlf.or.jp/tekisei/index.shtml](http://www.jlf.or.jp/tekisei/index.shtml) 참조

26) <http://www.itojuku.co.jp> 참조

## < 일본 주요 대학의 전형요소 ><sup>1)</sup>

<표 6> 일본 주요 대학의 전형 요소

대학교	1차	2차	비고
도쿄(東京)	적성시험, 외국어, 학부성적	1차 성적, 서류평가, 필기시험	
cb오(中央)	적성시험, 소논문시험 및 서류평가	1차성적 및 면접시험(15분)	
게이오(慶應)	적성시험(50%), 외국어능력(20%), 학부성적(30%)	소논문시험(50%), 지원자보고서(30%) 및 학부성적(20%)	2차에서는 1차 시험 성적을 고려하지 않음
와세다(早稻田)	적성시험, 학부성적, 서류평가 <sup>27)</sup>	면접시험	2차에서 1차 성적을 고려하는지 불분명
교토(京都)	적성시험, 학부성적, 서류평가	1차성적, 소논문시험	

참고로 2008년 신사법시험 합격인원 38명으로 17위에 그친 간사이(關西)대학은 1차에서는 적성시험(100점), 특별평가항목(100점)<sup>28)</sup>으로 되어 있으며 2차에서는 필기시험(장문독해 및 소논문시험)을 치른다. 최종합격자는 1차와 2차 점수의 합계치로 선발한다.

## V. 결론-전망 및 제언

이제 2010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이 개시되고 있다. 일부 대학교는 이미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5월 중 각 대학교별 입학전형안의 골격이 일괄

27) 자기소개서, 능력증명자료 및 추천장

28) 학부성적(20), 실무경험(50), 지망이유(40), 어학능력(40), 각종 자격 등(30)으로 구성된다. 모두 180점이지만 100점을 초과하는 자는 모두 동일한 점수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정한다.

적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각 대학교로서는 기존의 법학적성시험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09학년 입학사정의 결과를 분석하고 나름대로 입학전형안의 개선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정부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장기적인 법학적성시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09학년의 입학전형의 경험과 우리의 현행 법제 및 교육환경을 감안하면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전망은 최근 각 대학교가 언론에 소개한 개략적인 입시정책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첫째, 언어·추리 성적에의 의존도가 현저하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논술은 심층면접이나 서류평가와 비교하여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논술의 반영정도는 앞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논술은 채점에 소요되는 노력에 비해 평가기준으로서의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교는 심층면접 및 서류평가의 기법을 발전시켜 독자적인 평가의 비중을 늘려 나갈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부성적 및 외국어성적은 비록 법률상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반영정도는 매우 낮은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어의 경우 점차 비교적 낮은 점수를 응시조건으로 제시하는데 그치고 그것을 정량적인 평가요소로 합산하여 사정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법학적성시험의 미래를 조망한다면 근본적으로 법학적성의 개념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을 법학적성시험에 반영하는 것이 큰 숙제라고 할 것이다. 입학 전형 시 각 대학원에게 믿음을 줄 정도로 법학적성시험이 발전하는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개별 합격생의 각 전형요소별 점수와 학업성취도 및 변호사시험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검증된 결과를 문제에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

될 것이다. 문제의 개발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는 위 작업의 과정에서 각 대학교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법학적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상의 규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응시생의 법학적인 방법론의 터득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교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몇 개 대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논술영역부분을 폐지하고 공동의 심층면접방법을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이때 각 대학교는 공동의 심층면접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대학교별 입학전형기준을 보다 상세히 계량화하고 그것의 구체적인 운영내역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비록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절차의 공정성은 각 대학교의 입시공정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으므로 입학전형의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은 확보한 셈이다.

한편, 특정 학력이나 계층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은 법상 특별전형 이외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전형과정을 보면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자가 보다 좋은 서류평가점수를 받아 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요소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해당 요소를 계량화하여 미리 공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 기준에 따라 공표할지에 대해서는 각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입학 전형 상 입시생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디까지 공개하여야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상호 경쟁을 하여야 하는 각 대학의 자율에 속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및 자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09학년도 제1회 법학적성시험 업무처리지침(안), 2008.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을 위한 본연구, 20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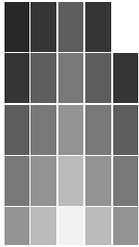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법학적성시험 개발 시행을 위한 후속연구, 2008.8

메가로스쿨, 2008. 8. 28.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출제의 기본방향(보도자료)

[www.lzac.org](http://www.lzac.org)

[www.jlf.or.jp/tekisei/index.shtml](http://www.jlf.or.jp/tekisei/index.shtml)

<http://www.itojuku.co.jp>



# LEET 시행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방향

---

- I. 출제 방법의 개선
- II. 시행 관련 문제의 개선
- III. 예산 확보 및 절감 방안
- IV. 변협과의 공조 방안 모색
- V. 결론

## LEET 시행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방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LEET 출제 및 시행을 담당하여 2009학년도 LEET를 큰 문제 없이 치렀으나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평가원이 고비용·저효율의 수능식 합숙 출제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과, 둘째로 출제위원 풀에 법학교수의 참여가 저조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자질을 제대로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되지 못한 것 같다는 지적, 셋째로 너무 다양한 전공분야의 지문을 포함시키려다 보니까 출제위원의 수가 많아져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 반면, 투입 대비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지적 등이다. 일각에서는 LEET 출제 및 시행을 평가원에 맡기는 것보다는 협의회에 산하기관을 두어 직접 LEET를 주관하게 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요구사항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국내에서 LEET 시험을 주관할 수 있는 기관이 현재로서는 평가원 밖에 없기 때문에 협의회 의지대로 평가원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점차 평가원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의회가 직접 주관하거나 제3의 기관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의 경우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현행 출제 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장기적인 해결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I. 출제 방법의 개선

## 1. 합숙 출제 방식과 Item Pool 방식의 비교

합숙 출제 방식이 고비용·저효율의 방식이라면 이와 대비되는 방식으로는 미국에서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 출제에 적용하고 있는 Item Pool 방식을 들 수 있다. 약 60년 전부터 LSAT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LSAC(Law School Admission Council)라는 기관에서 주관하여 LSAT시험을 출제·시행하고 있다. LSAC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212개 로스쿨이 출연하여 만든 비영리 기관으로서 LSAT의 출제 및 시행을 비롯하여 로스쿨이 합리적인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LSAC는 한국의 평가원과 같은 제3의 출제 전문 기관에게 LSAT 출제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상근 출제위원을 두고 문제를 개발하여 Item Pool 방식으로 축적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인의 문제 개발자(철학, 언어학, 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구성), 1인의 문제편집인, 1인의 DB 관리자, 3인의 행정직 등 총 16명을 상시로 고용, 연간 700개 정도의 문항을 개발하여 Item Pool에 축적해 나가고 있다.<sup>1)</sup> 현행의 합숙 출제 방식과 Item Pool 방식을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면 <표1>과 같다.

1) James Vaseleck, "The Law School Admission Council and the LSAT", 법학적성시험의 점검과 개선 방안 세미나 자료, 2009. 4. 17.

&lt;표1&gt; 출제방식의 비교

	합숙출제 방식	Item Pool 방식
수시 시행 가능성	1년에 복수 시행 불가	1년에 2회 이상 시행 가능
균질성	해마다 문제의 난이도 등 균질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음	체계적인 사전점검 과정을 통해 균질성 확보 가능
출제자의 의존성	출제자의 저서, 논문 등에서 주로 출제되는 경향	출제자의 학문적 성향에 대한 의존성 극복 가능
보안성	비교적 높은 보안성	유출 가능성 존재
비용	2010학년도 예산: 17억원	15억원 + α

합숙 출제 방식 하에서는 비용 상의 문제, 출제위원 동원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면, Item Pool 방식 하에서는 1년에 2회 이상 복수로 시행해도 더 많은 출제위원이 필요하거나 별도의 출제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단지 시행에 따른 비용만 추가하면 되므로 복수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1년에 4회 실시하고 있다. 합숙출제의 경우, 수능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처럼 해마다 시험의 난이도가 다르거나 출제경향이 달라질 수 있다. Item Pool 방식의 경우에는 표준화된 문제 개발 및 체계화된 점검 시스템을 통해 균질성을 확보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LSAT의 경우에는 전문출제위원이 개발한 문항을 외부전문가 및 내부전문가가 검토하여 선별하고, 선별된 문제를 실제 시험에 포함시키되 채점은 하지 않는 Dummy section으로 구성하여 응시자들로 하여금 실제 시험과 똑같이 치르게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너무 쉽거나 어려운 문제, 변별력이 없는 문제, 복수의 정답이 존재할 수 있는 문제, 특정 그룹에 유리한 문제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결함이 없는 문제들만 Item Pool에 축적해 나가는 방식으로 문제의 균질성을 확보하고 있다.<sup>2)</sup> 합숙출제방식에서

는 출제위원이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출제한 문제 중 1문제 정도만 채택되기 때문에 자신의 저서, 논문, 관심분야, 세부전공분야 등 자신의 학문적 성향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누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는지를 알면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 대강 예측할 수 있고, 학원가에서 예상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러나 Item Pool 방식에서는 제한된 수의 상근 전문출제위원에 의해 본인의 전공 외의 분야에서도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출제자의 학문적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안성의 경우 합숙출제방식에서는 보안이 유지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단기간 내에 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문제의 유출 가능성이 낮지만, Item Pool 방식의 경우에는 전문출제위원이나 DB관리자로부터 문제를 빼내려는 학원가의 유혹 등 문제 유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Item Pool 방식으로 운영하면 매년 치러지는 시험의 난이도를 균등하게 할 수 있고, 시험 문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연간 2회 이상 실시할 수도 있고, 출제위원의 학문적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등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산하에 LEET 주관기관을 설치하고 문제를 전문으로 개발할 인력을 상시로 고용하여야 한다. LSAC의 경우처럼 16인의 출제위원을 상시로 고용하려면 인건비와 부대비용(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사무실 임대료 등)을 합하여 어림잡아 15억 정도는 될 것이다. 거기에 전국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각종 비용(인쇄비, 운반비, 관리비, 시험감독 수당 등)을 더하면 현재 평가원에서 사용하는 예산보다 더 적게 들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Item Pool 방식을 바로 도입하기에는 예산 확보 및 운영기술 습득 등의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Item Pool 방식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 제대로 정착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합숙 출제 방식을 유지하면서 그 틀 내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James Vaseleck, 앞의 자료.

## 2. 기존 방식 하에서의 개선 여지

### (1) 추리논증 영역: LSAT 문제의 번역·활용

현행 합숙 출제 방식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추리논증 영역에서 LSAT 문제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 아주 세밀한 언어의 차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언어이해 영역에 외국어로 된 문제를 번역하여 활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나, 추리논증 영역의 경우에는 언어에 그리 민감하지 않으므로 LSAT를 번역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LEET의 추리논증 문제와 LSAT의 Logical Reasoning, Analytical Reasoning의 문제가 그 유형이 유사하기도 하고, LSAT의 문제는 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된 것이기도 하며, 추리논증 능력을 측정하는데 언어적·문화적 차이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여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견해 본다. 이렇게 하면 현재 24명인 추리논증 출제위원 수와 출제 기간을 줄여 출제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평가원이 제시한 예산표에 따르자면 단순하게 24명의 수당과 객실료만 따져도 1.7억이다. 추리논증 출제와 관련된 위원장, 검토위원, 보조인력, 본부지원인력, 연구비, 워크숍, 도서, 사무기, 차량, 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고려하면 그 액수는 더 커질 것이다. LSAT의 추리논증 문제를 번역할 경우 2인 정도의 번역위원과 1인의 검토위원 수당으로 수천만 원의 예산만 있으면 충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수회의 모의 테스트를 거쳐 응시생들의 반응을 분석하고, 난이도와 변별력 평가, 번역의 적절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합숙 출제 기간에 같이 합숙을 하면서 당해 시험에 필요한 문제만을 번역하여 시험을 치르는 방법도 있고,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번역하여 Item Pool을 만들어 놓고 시험 때마다 선별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후자의 경우 역시 문제 유출의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전자의 방법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된다. 미국

로스쿨 입시를 위해 치르는 시험을 우리나라 로스쿨 입시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여론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LSAT 문제를 번역한 후 약간의 각색을 거쳐 한국화한다면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 언어이해 영역: 출제범위 제한 및 출제위원의 감축

평가원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언어이해 영역의 성격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문학, 예술 분야의 다양한 학문적 소재를 활용하여 로스쿨 교육에 필요한 언어이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언어이해 영역 문항의 수준은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응시생이면 주어진 자료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다.<sup>3)</sup> 즉, 어떤 전공 분야의 지문이 나오더라도 그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 출제 과정을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LEET는 학부 전공에 관계없이 법학적성을 측정하여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취지 때문에 다양한 분야 내지는 모든 분야의 전공에서 지문이 출제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경제학 관련 지문이 나오면 경제학 등 사회과학을 전공한 학생에게 유리할 것이고, 자연과학 관련 지문이 나오면 사회과학을 전공한 학생에게 불리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려면 다양한 분야의 지문이 출제되어 모든 응시생이 일부 지문에서는 유리하고 일부 지문에서는 불리하여 결국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전공분야에서 출제위원을 모시다 보니 출제위원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2009학년도 LEET 출제위원 중 자연과학 분야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생물학, 물리학, 화학, 지질학,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출제 연구, 2009, 15면 참조

공학, 의학 등 다양한 전공의 출제위원이 참가하였을 것이나, 실제 시험에는 기술공학, 지질학, 생물학 등 3개의 자연과학 지문이 포함되었다. 2010학년도 LEET에는 지질학이 또 포함될 확률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질학 전공 출제위원이 또 참여할 것이다. 자연과학 지문에 딸린 질문이 자연과학적 지식을 가져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문의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어휘, 분석, 추론, 비판, 창의적 인지활동을 측정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즉, 지질학 지문이든 경제학 지문이든 그 밑에 딸린 문제들은 문맥의 앞뒤를 논리적으로 예측하거나 결론을 추론하거나 비논리적인 구조에 대한 비판 등 전공 지식과는 관계없는 문제가 출제된다. 그렇다면 지질학 관련 지문을 선정하거나 그 지문에 딸린 문제를 출제하는 데 꼭 지질학 전공 출제위원이 관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인문학 전공 출제위원이 어렵지 않은 수준의 지질학 관련 지문을 선정하고 그 지문에 맞추어 여러 가지로 언어이해 능력(어휘, 분석, 추론, 비판, 창의적 인지활동 등)을 측정하는 문제를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전공별로 심화된 내용의 지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깊이가 신문에서 접할 수 있는 상식 수준 정도이거나 조금 더 심화된 정도의 내용이면 족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분야의 전공 교수를 다 출제위원으로 모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인문과학을 전공한 출제위원이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지문을 활용하여 얼마든지 문제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언어이해 영역 지문에 활용되는 서적의 범위도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된다. 철학 지문은 플라톤의 서적, 문학 지문은 괴테의 소설, 인문학의 경우 중국 고전 등에서 지문이 출제되니 응시생들이 이런 서적들을 섭렵해야만 하는 것으로 부담을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문이나 유명 저널 등 비교적 제한된 범위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전공분야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sup>4)</sup>

4) <http://ko.wikipedia.org/wiki/LSAT> 참조

- 사실 및 논설  
뉴욕타임즈지, 워싱턴 포스트지, 로스엔젤레스 타임즈지, 주간 뉴욕커 등
- 법, 정치, 경제  
뉴리퍼블릭, 아틀랜틱 먼슬리, 이코노미스트 등
- 역사  
미국역사저널 등
- 자연과학  
사이언티픽 어메리칸, 파퐁러 사이언스 등

미국에서는 이렇게 각 분야별로 대표적인 신문이나 저널 등에서 발췌한 문장을 지문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여러 전공과 관련된 서적 수백 권을 구입하여 합숙 장소에 비치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내고 있다. 2010학년도 LEET 출제를 위한 예산 항목 중 서적구입비가 15백만 원(5만원\*300권)이 책정되어 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수백 권씩 구입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같은 책이 해마다 중복 구입되기도 할 것이며, 한번 지문에 활용된 책은 아무리 좋은 자료이더라도 단지 한번 쓰였다는 이유로 제외되기도 할 것이다. 우리도 좀 더 소수의 출제위원이 좀 더 제한된 범위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문을 발췌하여 출제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 (3) 논술 영역: LEET에서 제외 검토

논술의 경우 2009학년도에 3문항을 출제하였으나,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2010학년도에는 2문항만 출제하기로 하였다. 논술의 경우 평가원에서는 채점 가이드라인만을 제공하고 채점은 각 로스쿨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출제자와 채점자가 달라 채점자의 의도대로 채점되어지지 않고 채점위원 별로 주관적인 채점을 하게 되어 같은 답안에 대해서 채점자마다 크

게 다른 점수를 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2009학년도의 경우를 보면 각 학교에서 논술 점수를 많이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5)</sup>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과감하게 LEET에서 논술을 없애고 각 학교의 필요에 따라 논술을 실시하도록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LSAT의 경우에도 논술은 아주 간단하게 35분짜리 한 문제가 출제되고 채점되지 않은 상태로 각 지원학교로 보내면 학교에서 채점하지 않은 상태로 참고만 한다. LSAC의 조사에 따르면 LSAT의 논술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6.8%이고, 항상 반영한다고 응답한 학교는 9.9%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학교는 '자주'(25.3%), '가끔'(32.7%), 그리고 25.3%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sup>6)</sup> 지원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essay나 personal statement로 작문 실력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기 때문에 논술시험은 당락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40분짜리 작문 시험이 포함되어 있으나 거의 모든 대학이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sup>7)</sup> LEET에서 논술을 제외하고 각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험 또는 심층면접 과정에서 작문 능력을 측정하게 하면 현재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면서도 출제위원 수 감소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3. 독자적 출제의 모색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LEET 출제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서서히 Item Pool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처럼 평가원에 위탁하는 체제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평가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는 수능형 출제방식을 고수하려 할 것이고, LEET 출제가 하나의 수익사업이므로 예산 절감에 호의적일 리가 없다.

5) 앞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의 법학적성시험의 활용' 참조

6) [http://en.wikipedia.org/wiki/Law\\_School\\_Admission\\_Test](http://en.wikipedia.org/wiki/Law_School_Admission_Test) 참조

7) <http://www.jlf.or.jp/tekisei/index.shtml> 참조

따라서 협의회에서는 평가원과 지속적인 협상을 벌이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출제 체제를 갖추어 나가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준비가 필요하다. 독자적인 출제를 위해서는 협의회 산하에 LEET 출제 전담 기구를 두어야 할 것이며, 미국의 LSAC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에도 협의회에서는 LEET와 관련하여 출제를 제외한 시행계획 공고, 원서접수, 시행대학 섭외 및 관리, 감독관 교육, 문답지 보안, 수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출제와 직접 관련된 분야만 보강한다면 LSAC와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당분간 평가원과 협조하여 출제를 하면서 서서히 전문 출제위원을 구성하여 Item Pool 방식의 출제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LEET와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MEET, DEET, PSAT 등과 공조체제를 갖추어 비슷한 영역의 문항을 공유하거나, 시험 시행상의 관리 부분을 공유해 나간다면 경비 절감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평가원에 전적으로 의뢰하는 현재의 합숙 출제 방식으로부터, 협의회가 주도하는 좀 더 효율적인 합숙 출제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협의회만의 독자적인 Item Pool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협의회를 중심으로 LEET 발전위원회(가칭)를 발족시켜 평가원과 좀 더 긴밀하게 작업하여 현행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장기적인 연구를 병행하여 궁극적으로는 협의회에서 독자적으로 Item Pool 방식의 출제능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가지 방식에 소요되는 정확한 비용 산출은 어느 정도 연구가 더 진행된 후이나 가능하겠지만, 두 가지 방식의 비용이 비슷하다면 Item Pool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복수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 문제의 균질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출제자의 학문적 성향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같은 영역 내에서는 MEET나 DEET에서도 같은 문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MEET나 DEET에서도 활용 가능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면 세 분야 간의 공조로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LSAC는 이미 영어권 국가(캐나다, 호주, 인도 등)로 진출했고 지금은 아시아권에 진출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LEET 출제기관이 발족하여 완전히 자리를 잡은 후에는 동남아 등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 4. 소 결

현행의 합숙 출제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Item Pool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Item Pool 방식으로 전환하기까지는 좀 더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므로, 현재로서는 기존의 틀 내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추리논증 영역은 LSAT 문제를 번역하여 활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언어이해 영역에서는 적은 수의 출제위원이 다양한 전공분야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지문을 유명 저널이나 사설 등으로 제한하고, 다양한 전공을 다루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지문을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논술의 경우, 각 학교에서 활용도도 낮고 채점의 신뢰도도 낮으므로 LEET에서 제외하고 각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험의 측정능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LEET 응시생의 부담을 줄여 더 많은 학생들이 로스쿨 진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씩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협의회 독자적으로 Item Pool 방식의 출제 능력을 갖추도록 장기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II. 시행 관련 문제의 개선

LEET는 1년에 한번 시행하고 성적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시험지구는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된다.

## 1. 응시자격

LEET는 “학사 학위를 가진 자 또는 동등학력을 가진 자, 졸업예정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로스쿨 진학 자격과 동일하게 LEET 응시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이거나 이미 졸업한 학생들만 LEET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응시자격을 제한한 이유는 당장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점수를 왜곡하거나 당해년도 지원생들의 석차에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시험만 치르고 로스쿨에 지원하지 않는 학생의 수가 해마다 비슷하여 매년 그 영향이 거의 일정하다면 결국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과 같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못 된다. 졸업예정자가 아닌 학생들도 LEET 연습을 위해 시험을 치를 수도 있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재학 중 2회 이상 시험을 치를 기회를 주는 것이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 수능에서와 마찬가지로 1년에 한번만 시행되고 시험성적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제한한다면, 오랜 기간 준비를 잘 해오다가도 시험 당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험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시험 성적이 안 좋을 경우 1년이라는 세월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미국 LSAT의 경우에도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 2. LEET 시행 횟수 및 성적 유효기간

LEET는 연간 1회 실시하고 성적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되어있다. 합숙 출제 방식으로 출제를 하다 보니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은 비용이나 시간의 문제 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해마다 문제의 난이도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은 해의 성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의 편의만 생각한 결과이다. 학

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험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 성적이 크게 좌우될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험일시에 더 급한 사정이 겹치거나 의외의 사고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학생들 입장에서의 유일한 대안은 1년을 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Item Pool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효기간이라도 2년 이상으로 늘리고 응시자격도 완화하여 재학 중 2회 이상의 시험 기회를 주어 한 번의 실수로 재수를 하지 않아도 되게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연간 4회 실시하고 성적의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응시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단지 2년 내에 3번 이상 치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므로 정책적으로 금지하고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학교 측에서 요청하면 다시 치를 수 있게 해준다. 유효기간에 있어서는 최근 5년 내에 치른 12회까지의 시험성적을 로스쿨에 통보해 주며, 개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이전의 성적도 통보해 주고 있다.<sup>8)</sup> 미국에서는 73.7%의 학생이 LSAT에 한 번 응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9)</sup> 시험 당일 의외의 변수로 시험을 망치지 않는 한, 복수로 응시하여도 성적이 크게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적에 민감하므로 미국에 비해 복수로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학생들이 2회 이상 응시할 경우 전체적으로 응시생 수가 늘어나 LEET 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도 Item Pool 방식의 출제 능력을 갖추어 연간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도 2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회 이상 응시한 경우의 성적을 최고점으로 하느냐 평균점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평균점수뿐 아니라 모든 점수를 지원 로스쿨에 통보하여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8) <http://www.lsac.org/LSAT/LSAT-score.asp>,  
<http://www.lsac.org/aboutlsac/faqs-and-support-lsat.asp#retest> 참조

9) <http://www.lsac.org/pdfs/2008-2009/InformationBook08web.pdf>  
2006-2007학년도 LSAT 응시생의 21.8%가 두 번 응시하였고, 세 번 이상 응시한 사람은 4.5%이다.

### 3. 시험 실시 지구

현재 LEET는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되고 있다. 시행 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응시생의 편의를 위하여 많은 지구에서 실시하는 것이 옳겠으나, 국가의 지원 없이 응시료 수입만으로 시험을 시행해야 하는 협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은 지구에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구별로 2009, 2010학년도 응시생 수에 따른 수입 대비 시험 시행을 위한 경비를 감안하여 적절히 그 수를 감소시키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 4. 시험 감독

2009학년도의 경우 각 시험지구 별로 시험 감독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지 않아 불만사항이 접수되었다. 예를 들면, 종료 벨과 동시에 펜을 놓게 한 시험장도 있었고, 어떤 시험장에서는 종료 벨 후에도 답안지에 옮겨 적는 것을 허용한 시험장도 있었다. 물론 시험장 별로 똑같은 기준이 전달되었겠지만 감독관 별로 융통성을 발휘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서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Ⅲ. 예산 확보 및 절감 방안

LEET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전국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이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LEET 응시료로 충당이 된다. 작년의 경

우 평가원에서 제시한 예산은 1,605,845천원이었고, 총 수입은 2,520,800천원이었다(응시생 10,960명\*23만원). 그러나 올해는 평가원의 예산이 1,690,000천원으로 작년 대비 5.24% 증가한 반면, 응시생 수가 23.1% 줄어 총 수입이 1,938,440천원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차액인 248,440천원으로 전국 9개 지역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비용을 충당해야 하므로 적자 상황이 예상된다. 2009학년도와 2010학년도의 LEET 지원현황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 2> 응시원서 접수 총인원

구 분	2010학년도	2009학년도	전년도 대비 증감	
			인 원	증감율
인 원	8,428 명	10,960 명	△2,532 명	△23.1%

응시생 수가 전년대비 23%나 감소한 이유를 법률저널(2009.7.10)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회의(45%):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부정적 여론, 높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보장되지 않으리라는 점 등
- 지난 해 입시 전형 결과(25%): 높은 스펙을 갖추어야 합격이 가능하고 저연령층이 유리했던 점 등
- 비싼 LEET 응시료, 높은 로스쿨 등록금(12%)
- 기타(18%): 최근의 경기불황 등

위와 같은 이유들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므로 당분간 LEET 응시생이 증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절감하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 1. 예산 확보 방안

내년에도 응시생의 수가 늘어날 요인이 별로 없으므로 현 상태가 유지되거나 더 줄어든다고 예측되는 상황에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교과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교과부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나 협의회 활동이 정착되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교과부에서 반드시 지원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부족한 예산을 전국 로스쿨에서 학생 정원에 비례하여 분담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로스쿨 운영으로 독자 경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측에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외부 투입 방식을 지양하고 응시료만으로 해결하려면 응시생 수를 늘이거나, 응시료를 높이거나, 출제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응시생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응시 자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현재 졸업예정자 또는 학사학위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4학년 학생이거나 졸업생만이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응시자격을 완화하여 대학 재학생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 응시생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시험결과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면 3학년 학생들은 시험결과를 다음 해에 로스쿨에 제출할 수 있다. 1, 2학년 학생들은 LEET 시험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거나 실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LEET 시험을 로스쿨 입시 이외의 전형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이나 특수대학원, 일반대학원 입시전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은 이미 PSAT(공직적격성평가지험)가 있고, 각 대학원은 전공 성적이나 외국어 성적 등으로 선발하고 있으므로 LEET 성적을 추가로 활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LEET 응시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LEET 응시료는 현재 23만원으로 사법시험(3만원), MEET(27만원), 일본 법학적성시험(15,000엔, 약19만원), LSAT(132달러, 약17만원)과 비교하면 결코 낮은 수준

이 아니다. 응시료를 MEET 수준까지 인상할 수도 있겠으나, 국민 정서 상 법조인은 돈을 안 들이고도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어 과거보다 학비 부담이 커지고 귀족학교라는 비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LEET 응시료를 더 올리는 것은 별로 좋은 대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수익 확보를 위해서는 외부 투입(교과부 지원, 각 로스쿨 추가 부담), 응시자격 완화로 응시생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 응시료 인상, LEET 성적 반영 영역의 확대(공무원, 타대학원)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응시자격을 완화하여 응시생 수를 늘리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별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응시생 수를 늘리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현 수준의 수익 하에서 최대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2. 예산 절감 방안

가장 가시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방법은 현재의 평가원 예산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절감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는 것이다. 현재 평가원 예산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총 17억원의 예산<sup>10)</sup> 중 출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출제경비(출제관련위원 수당, 합숙비 등)가 10억원으로 총경비의 59%이다. 이 중 44명의 출제위원 수당이 2.6억원, 객실 132실을 사용하는 합숙비가 2.7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44명의 출제위원 외에 출제위원장(1), 부위원장(1), 자문위원(1), 영역평가위원장(5), 운영위원(8), 평가위원(4), 출제보조위원(2), 검토위원(27), 윤문위원(2), 관리요원(21, 관리대표, 부대표, 보조요원, 의사, 간호사, 점역요원, 운전요원 포함), 본부지원(7, 총괄책임자, 부총괄책임자, 지원대표, 지원요원 포함)을 포함하여 79명이 참여하는 등 총 137명이 참여한다. 직접 출제에 관여하지 않는 인원 79명에 대한 수당이 3억원인데 이 중 분명히 감축 가능한 인원이 있을 것이다. 추리논증을 LSAT 번

10) 예산 총계 1,690,000천원

역으로 대체하거나, 논술영역을 LEET에서 제외하거나, 언어이해 영역 출제위원의 전공분야를 축소시키는 등 출제방식을 변경할 경우에는 출제위원의 감축 및 이에 따른 기타 인원, 합숙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합숙비의 경우 132실에 대해 2.7억을 지불하는데, 참여 인원 감축 및 출제기간을 줄이면 합숙비에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협의회 사무국의 분석에 따르면 참여인원 137명을 100명으로 줄일 경우 총예산의 10%에 해당하는 1.7억을 절감할 수 있으며, 출제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줄일 경우 13%에 해당하는 2.3억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4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눈에 띄는 항목이 인건비 항목이다. 평가원의 사업단장, 연구팀원, 행정팀원에 대한 인건비가 약 1.6억이 책정되어 있으나 이들의 역할 및 기여도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업무추진비는 주로 회의와 관련한 식비로 지출되는 항목으로 판단되는데, 이 금액이 1.3억에 달한다. 이 중 수탁사업 활동비라는 항목으로 평가원의 사업단장, 연구팀, 행정팀에 배정된 액수가 53백만 원으로 이 항목의 필요성 및 규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연구경비로 81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출제를 위한 연구라면 이미 작년도에 시행하였으므로 다시 연구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며, 출제 후의 연구라면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결과 분석 연구'와 같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예산일텐데, 이 보고서를 반드시 발간해야 하는지 그 실익이 의심스럽다. 연구경비를 대폭 삭감하든지 삭제해도 좋을 것이다. 별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올해도 출제를 위한 서적을 300권 구입하기 위해 15백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해마다 수백 권의 서적을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전년도에 구입한 서적은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의문이다. 출제방식을 개선하고 세부항목 별로 그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면 반드시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평가원의 예산 수립부터 집행·정산까지 협의회에서 좀 더 깊이 관여할 필요가 있다.

## IV. 변협과의 공조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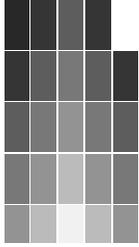
법학전문대학원은 새로운 시대상에 맞는 올바른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도입된 제도이다. 물론 도입을 전후하여 법조계에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고 아직까지도 로스쿨 제도의 성공을 의심하며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이미 도입된 이상 정부, 법조계, 학계가 힘을 모아 이 제도를 성공시켜 더 나은 변호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변협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면, 우선 LEET 시험에 관여하여 출제방향을 제시하고,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변호사 시험 출제에 참여하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에 대해 체계적인 on the job training을 제공하여 훌륭한 변호사로 양성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정부나 대학에만 맡겨 놓고 나중에 변호사 양성을 제대로 못 시켰다는 등 불만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나 학교에서도 바라고 있는 바이다. 훌륭한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로스쿨과 변협이 협조하여 같이 하는 것이다.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로스쿨이 담당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만하다. 이렇게 변호사 양성에서부터 선발, 보수교육에 이르기까지 학교와 변협이 공조해 나간다면 법조의 발전이 더욱 빨리 이루어 질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법학적성시험을 문부과학성 산하 독립행정법인인 대학입시센터와 일본변호사협회 산하 법무연구재단 등 2곳에서 시험을 시행하는 등 변협이 적성시험 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LEET 시험에 한정하여 변협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우선, 법학적성이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인지 실무가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이 입장이 LEET 시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출제방향을 제시하고 직접 출제에도 관여하는 것이다. 직접 출제위원이 되어 장기간 함속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검토위원으로 2~3일 정도 참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변협이 LEET 시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LEET 시험문제가 법학적성을 더 잘 측정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과 함께 로스쿨 제도의 성공에 변협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게 되므로 로스쿨에 응시하는 학생이나 학교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변호사 시험 합격률,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별도의 연수과정 부여 등)에 대해서도 변협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 입장에서도 로스쿨 관련 문제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루게 될 것이다.

## V. 결 론

이상에서 현행 LEET 출제방식, 시행 및 예산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차례 평가원 측에 의견을 개진한 상태이나 시험 출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평가원의 입장은 유연하지가 않다. 지금 당장 평가원과 결별하고 협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출제 및 시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장 이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원으로부터 독립된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LEET 출제 및 시행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Item Pool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단기적으로는 합숙 출제 방식 하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리논증 영역에서 LSAT 문제를 활용하고, 언어이해 영역의 출제방식을 간소화하고, 논술영역을 제외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응시자 수를 늘리기 위해 LEET 응시 자격을 완화하고 성적 유효기간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하며, 장기적으로 연간 2회 이상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LEET 응시자격을 완화하여 응시생 수를 늘려 수익을 늘리는 방안, 출제방식의 개선 및 간소화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평가원의 예산 수립·집행 과정에 좀 더 긴밀하게 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10학년도 LEET 시험을 치르고 난 후 바로 연구단을 발족하여 출제 주체의 선정, 출제방향, 출제방법의 개선 및 예산의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평가원 보고서 분석 및 출제방식 개선에 대한 제언  
입학전형에서의 활용부분(특히 논술관련)

---

## 평가원 보고서 분석 및 출제방식 개선에 대한 제언

평가원 보고서는 현행의 체제 안에서 가능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보여 준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법학적성시험의 연구·사업 기간을 조정하여야 하며, 법학적성시험의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교류협력 그리고 출제인력의 확충을 위한 노력도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의 출제방식은 마땅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시간에 결정된 것으로서 그 성과를 지금 논하기는 부적절하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큰 시행착오 없이 첫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치룬 성과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이는 평가원이 비록 다른 영역에서이기는 하지만 오랜 동안 쌓아온 시험출제의 경험을 십분 활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아직 과학적인 분석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법학적성시험과 입학 사정 시 다른 평가 요소 간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2009학년도 각 법학전문대학원 1학기 성적과 법학적성시험과도 어느 정도의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얘기되고 있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의 출제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속 보완된다면 다른 영역에서의 평가원의 출제가 나름대로의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오고 있는 것처럼 법학적성을 보다 적실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의 출제방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법학적성의 개념 정립에 대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법학을 잘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 그 능력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다양한 것들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지만 아마도 ①일반적인 수학능력, ②법의 개념에 대한 이해 및 ③법적 사고능력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사정과정에서 위의 ②의 요소는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①과 ③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행의 법학적성시험은 ①의 평가에 치중되어 있다. 이는 ③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법적 사고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실무법조인과 법학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법적 사고는 법계마다 그 양상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동일하므로 미국과 같이 법학적성시험의 역사가 오랜 나라의 문제유형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문제를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법적 사고능력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법학적성시험출제가 가능하게 하려면 출제방식을 전문 인력에 의한 문제은행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행의 출제방식은 전문정보다는 기본적인 학문소양을 측정하는 시험의 출제방식으로 더 적절하다. 자기 전공에 정통한 학자라면 누가 참여하더라도 기본적인 시험출제방식과 절차에 대해 가이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출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인문을 공부하게 될 학부대학생을 선발하는 시험이라면 그러한 방식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사고능력을 측정하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에서는 보다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시험출제위원의 양성이 절실하다. 이에는 법조실무가의 참여가 요청된다. 만약 법조실무가의 직접적인 참여가 현실적으로 제약요인으로 성사되기 어렵다면 법조실무가 출신의 교수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제출제위원이 개별 문항의 출제를 위해 오랜 시간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은행방식의 출제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의 출제 방식 상 과거의 경험이 훗날의 출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연결고리가 매우 빈약하다. 그리고 위탁출제의 방식으로 되어 있고 법학적성시험의 출제가 수탁기관인 평가원의 업무의 한 부분에 불과하여 지속적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받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셋째, 전문 인력에 의해 개발된 문제은행방식으로서의 전환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출제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하부 기관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협회와 공동관리 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은 정부, 각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협회의 공동출연에 의해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과정에서 과도한 재정부담을 하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지게 되었다. 그러한 사정에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법학적성시험의 제도개선을 위해 출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장학금 비율을 실질적으로 자율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직접 예산지원의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그간의 사법시험이 갖는 사회적인 비경제성을 불식하고 기존의 사법연수원제도를 대체하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전문인 양성기관이므로 교육행정 담당부처 뿐 아니라 법무행정담당부처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호사협회의 참여도 필요하다. 현재 개업 중인 변호사들은 비록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되었지만 장기적으로 같은 변호사의 길을 걸어가야 할 후배들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치러지는 시험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당위성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정착하여 변호사시험을 통해 배출된 인력이 다수 활동하게 되는 시점에 가서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넷째, 매년 치러진 시험에 대한 평가를 위한 각 법학전문대학원간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법학적성시험과 학교성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야 한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설강과목과 평가체계가 다르지만 수집된 자료 간 최소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대학원으로부터 수집하는 자료에는 각 학생들의 평균평점, 십분위 등위를 전체 수강과목, 상대평가수강과목 및 절대평가수강과목으로 구분하여 제출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섯째, 현행 법학적성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법학적성시험은 말 그대로 적성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재학생들이라 하여 보지 못하게 할 것은 아니다. 현재 학부 3학년 이하의 학생들도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부 3학년의 시험은 실제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활용할 수 없다.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이 당해연도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작년엔 법학적성이 있던 학생이 올해는 그 적성이 사라질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시험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의 시험은 매년 1회만 실시되고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을 재수하거나 반재수하는 현상을 유도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입학전형에서의 활용부분(특히 논술관련)

2009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요소 중 법학적성시험의 논술영역만큼 각 대학원간 그 반영의 정도와 방식이 다양한 것은 없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2009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논술을 산술적인 점수화하여 반영한 곳은 19개에 이른다. 나머지 6개 대학원은 논술을 전혀 반영하지 않든가 면접에 활용하는 것에 그쳤다. 반면 중앙대와 경북대의 경우 전체 평가요소 100% 중 25% 내지 30% 수준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대학원별로 그 반영 정도가 다른 것은 논술의 경우 각 대학원들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점수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변별력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

둘째, 각 법학전문대학원 내 평가인력의 절대적 부족, 평가인력의 낮은 문제 숙지도, 평가의 일관성 확보곤란 등으로 평가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 특히 너무 세분화된 채점지침은 채점상 혼선을 더욱 부추기는 부작용도 있었다.

셋째, 논술문제가 내용상 법학적성을 측정한다기 보다는 일반적인 인문교양 학습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 이는 특히 심층면접을 통해 보다 더 정확하게 수험생의 법학적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해 확대되었다.

각 대학원이 발표한 2010학년도 입학전형요강에 의하면 산술적인 점수화하여 논술성적을 반영하는 곳은 15개 대학원으로 축소되었다. 각 대학원별로 논술성적의 반영 양상이 다르고 그것을 대체하는 심층면접도 다양화됨에 따라 수험생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첫째, 대학원별로 논술성적을 고려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뉘게 되었지만 수험생별로 대학원 두 곳까지 응시할 수 있는 현행제도 하에서 수험생은 여전히 논술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각 대학원별로 논술을 대체하는 평가수단인 심층면접을 자체 개발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수단이 빈약하여 수험생 입장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준비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논술답안은 비록 각 대학원이 채점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문제출제에 따른 장점이 있다. 특히 각 대학원의 형편에 따라서는 내실 있는 심층면접의 준비가 어려운 곳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곳의 경우 특히 전문적인 인력이 충분한 연구를 거쳐 작성한 문제가 상당한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논술이 그 반영의 정도와 방법상 비록 각 대학원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당장 그것을 폐지하기 보다는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논술평가가 도입된 지 아직 1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성급한 점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논술은 다음과 같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문제의 내용측면에서 법적인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지문이 출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문제의 문항은 두 개 정도로 축소하여 수험생의 능력을 측정하는데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지침이 추상적이면서도 매우 상세하여 수험생이 작성한 답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용이한 지침을 주지 못하는 점이 있으므로 개별 문항 당 보다 구체적인 세부질문을 제시하고 평가지침은 그 세부문항마다 간략히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보고서 2009-04

---

**법학적성시험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2009년 9월 일 인쇄

2009년 9월 일 발행

**발행처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 소 : 서울 관악구 봉천동 856-1 대우디오슈페리움  
C동 3층**

**전 화 : 02) 888-2031**

**인쇄처 : 선명인쇄(주)  
전화 02-2268-4743**

---